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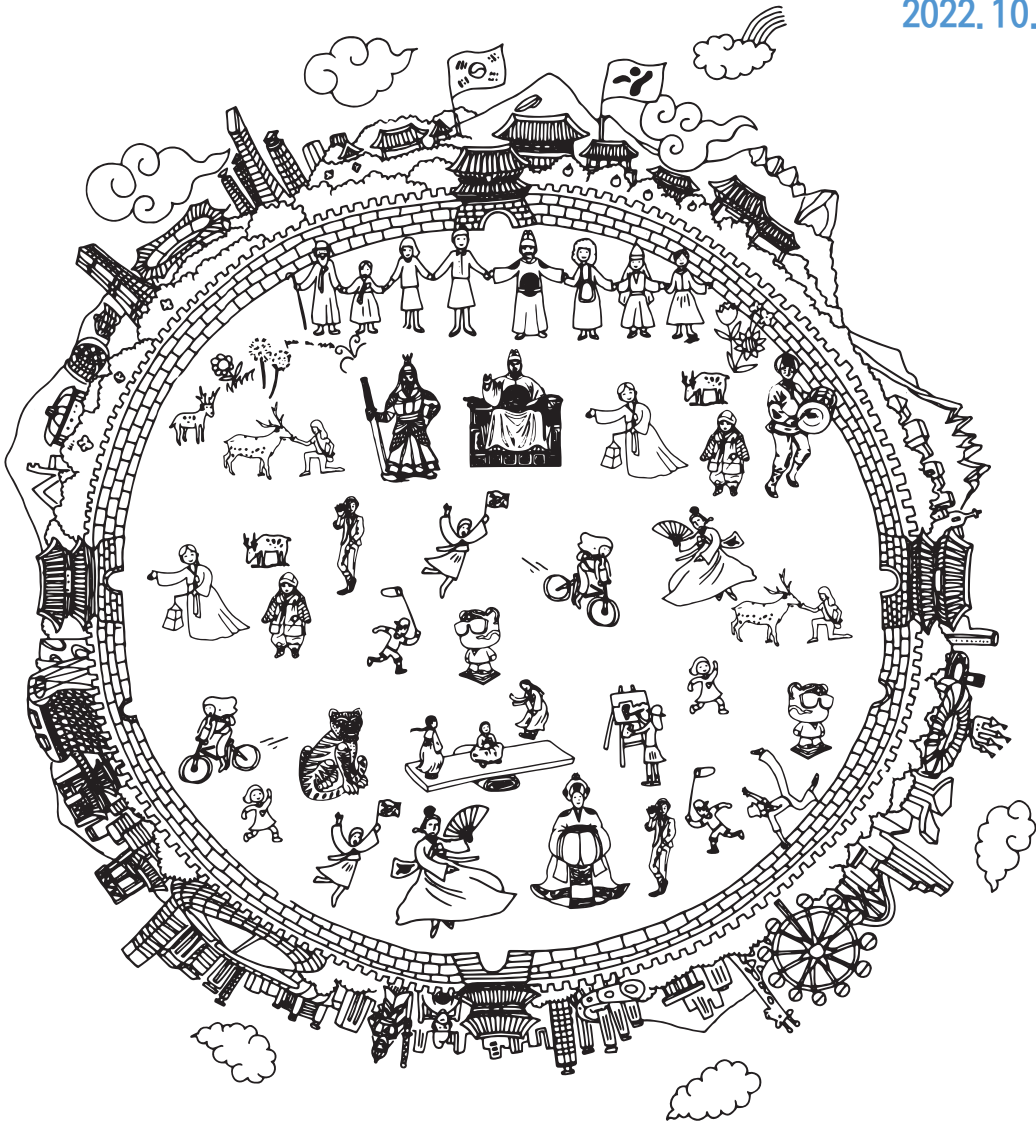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23호
2022. 10. 27.(목)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2-287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22-2888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5

◆ 고 시

제2022-4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6
제2022-423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7
제2022-425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8
제2022-42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11
제2022-428호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54
제2022-429호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5

◆ 공 고

제2022-2826 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66
제2022-2827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75
제2022-283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77
제2022-2831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78
제2022-2835호	도시관리계획[해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79
제2022-284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80
제2022-2847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82
제2022-284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85
제2022-2851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86
제2022-2852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90
제2022-285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01
제2022-285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05
제2022-286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08
제2022-286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10
제2022-286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11
제2022-287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13

제2022-2878호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고	114
제2022-288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15
제2022-288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41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3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42
------------	--	-----

◆ 구 고 시

제2022-17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	143
제2022-1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고시(은평구)	146
제2022-158호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148
제2022-177호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송파구)	159

◆ 구 공 고

제2022-122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종로구)	161
제2022-16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은평구)	165
제2022-187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구로구)	167
제2022-17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금천구)	171
제2022-1821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구 대림동 993-15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영등포구)	174
제2022-1713호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동작구)	176
제2022-203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초구)	179
제2022-2053호	도시관리계획(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서초구)	180
제2022-1812호	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송파구)	182
제2022-205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202

◆ 사업소고시

제2022-3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07
제2022-3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08
제2022-3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08
제2022-3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09
제2022-3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09
제2022-3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0
제2022-3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0
제2022-36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1
제2022-3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1
제2022-3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2
제2022-3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2
제2022-3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3
제2022-3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3
제2022-3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4
제2022-3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4
제2022-3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5
제2022-3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5
제2022-3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고시)	216

◆ 기 타

제2022-44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강남소방서)	217
제2022-22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18
제2022-25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19
제2022-26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0
제2022-27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1
제2022-27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2
제2022-27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3
제2022-27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4
제2022-29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5
제2022-29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6
제2022-30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27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77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한강공원 테니스장 기본이용료를 정비하고, 야간(조조시간 조명이용 시 포함) · 토요일 · 공휴일 가산 및 체육경기용의 전용사용 이용료를 규정함(안 별표 1 제2호).

나.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이용료 및 물품대여료를 규정함(안 별표 1 제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한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1) FAX: 02-3780-0745

(2) E-mail: sjeea@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1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서울특별시 공원여가과(☎02-3780-0839)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88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목적, 대상 정의 (안 제2조, 제1조)
- 나. 디자인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서울시 책무 부과 (안 제3조)
- 다. 디자인산업 관련 지원사업 규정(안 제6조)
- 라. 디자인산업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0조)
- 마. 재정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 (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디자인산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산업담당관(전화: 02)2133-9327, FAX: 768-89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8층 디자인산업담당관
- 2) 이메일: happymh@seoul.go.kr
-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하천의 명칭 : 청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대문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천호대로 145(용두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청계천 좌안(정릉천 합류점)
 - 면 적 : 임시점용 350.5㎡, 영구점용 9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정릉천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
 - 개 요 : 유지용수 공급시설 설치 (관로, 밸브실, 유량계실, 이토변실)
5. 점용기간 : 2022. 11. 01. ~ 2023. 5. 14
6. 최초허가 연월일 : 2022. 10. 18.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3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	
	11	()	[1 2]	2 15 , /	
	6가 69-173			* . 3	
				3 30	
()	704-6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5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일대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 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

-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제도 개선 도모,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에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로서 주변 지역과 연결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품고있는 아름다운 도시마을 조성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가. 구역 위치 및 면적

			(㎡)
1	278-2	1 ()	106,252.0

나. 획지 위치 및 면적

			(㎡)
1	1-1	278-2	90,161.0
	1-4	242-9	9,786.0
	1-5	234-7	6,305.0

1 : 132,287.00㎡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사항
가.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	()
1	1-1		90,161.0	33 (110m)
	1-4		9,786.0	25 (90m)
	1-5		6,305.0	

나. 특례적용사항

1	1-1	「 」 61 2 , 86 3 2 ():	.
	1-4		
	1-5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16호, 2020.05.28.) 및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노량진1구역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6호, 2022.07.14.)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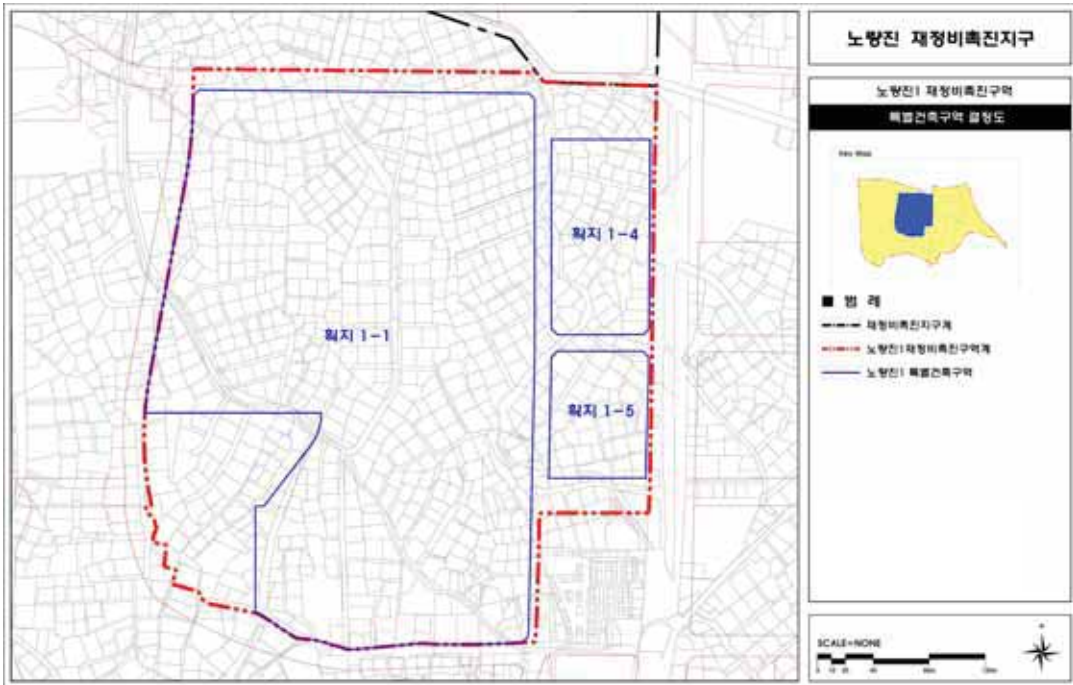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관계법령에 따름

6.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련한 서류는 서울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4), 동작구 도시정비1과 (☎02-820-9267)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22년 하반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 신청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지역

가. 대상지: ’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신청지역 전체(총 39개소)

나. 위치 및 면적

			(㎡)		
1		4가 71	24,962	’ 22.10.27.	
2		1가 129	17,743	’ 22.10.27.	
3		265	37,287	’ 22.10.27.	
4		460	15,383	’ 22.10.27.	
5		4 12-10	75,608	’ 22.10.27.	
6		4-255	18,560	’ 22.10.27.	
7		152-1	88,040	’ 22.10.27.	
8		63-1	90,102	’ 22.10.27.	
9		334-69	74,114	’ 22.10.27.	
10		261-22	48,178	’ 22.10.27.	
11		214-52	80,722	’ 22.10.27.	

			(㎡)		
12		411	79,218	' 22.10.27.	
13		52 - 1	73,549	' 22.10.27.	
14		500	85,165	' 22.10.27.	
15		534	51,621	' 22.10.27.	
16		95	98,449	' 22.10.27.	
17		170	51,523	' 22.10.27.	
18		89	40,848	' 22.10.27.	
19		369	90,243	' 22.10.27.	
20		428	86,515	' 22.10.27.	
21		78	70,515	' 22.10.27.	
22		55 - 327	96,903	' 22.10.27.	
23		6 957	96,165	' 22.10.27.	
24		270 - 38	38,627	' 22.10.27.	
25		1 864	74,447	' 22.10.27.	
26		3 950	58,867	' 22.10.27.	
27		247 - 48	92,057	' 22.10.27.	
28		3 786	24,064	' 22.10.27.	
29		221 - 24	31,783	' 22.10.27.	
30		202 - 29	84,311	' 22.10.27.	

			(㎡)		
31		1535	92,871	' 22.10.27.	
32		12-69	10,770	' 22.10.27.	
33		726-3	43,860	' 22.10.27.	
34		703-15	91,382	' 22.10.27.	
35		619-641	90,992	' 22.10.27.	
36		663-686	60,530	' 22.10.27.	
37		782	99,712	' 22.10.27.	
38		980-8	48,560	' 22.10.27.	
39		113-2	55,521	' 22.10.27.	

2. 권리산정기준일: 2022.10.27.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 금회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신청 결과 미선정 및 대안제시 지역들도 선정지와 동일하게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함

※ 미선정된 지역의 경우 향후 모아타운 공모 및 주민제안 방식 등을 통해 대상지로 선정되면 기고시한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락주택공급과(☎ 02-2133-823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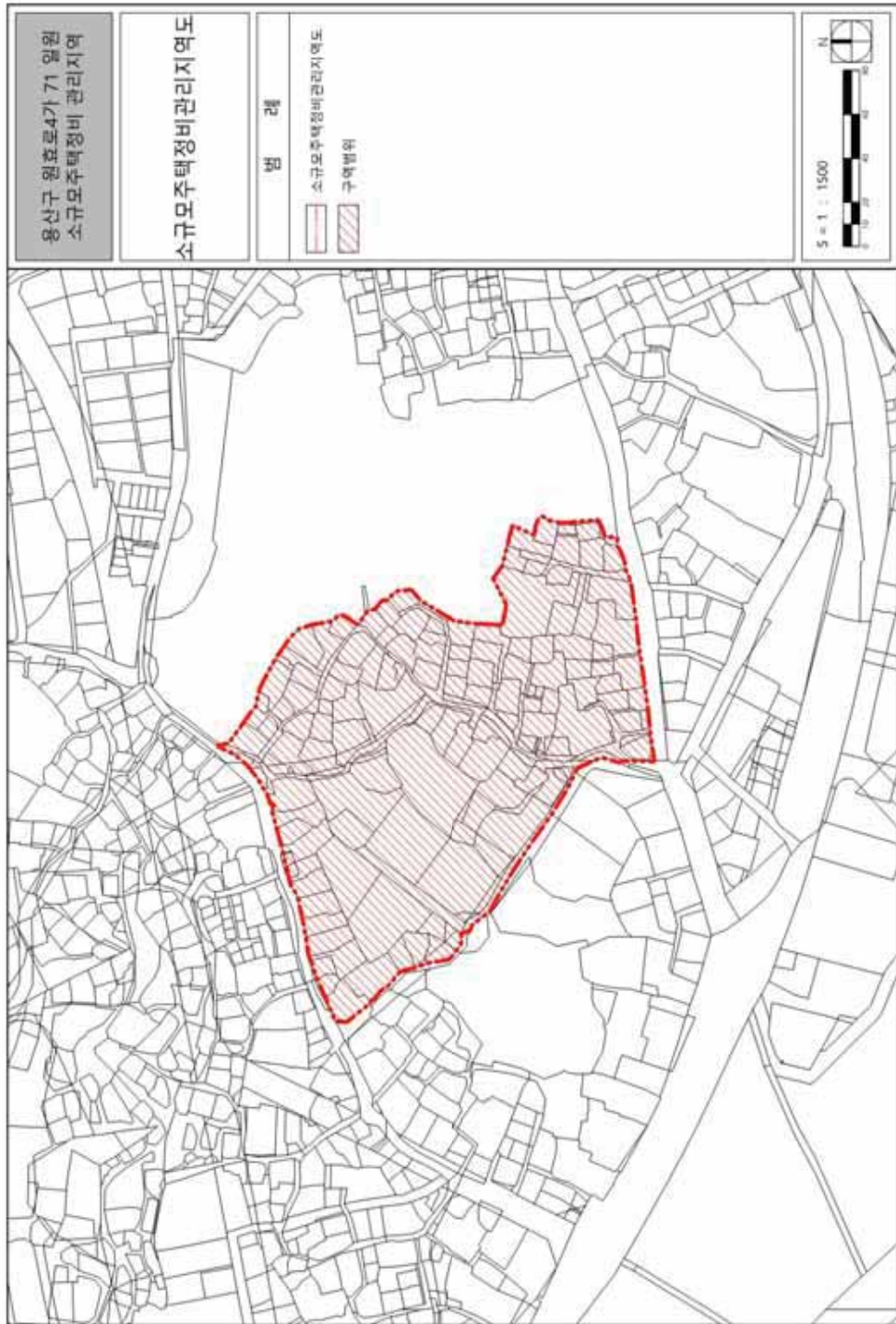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며 소유권 매매, 건축허가 행위 등을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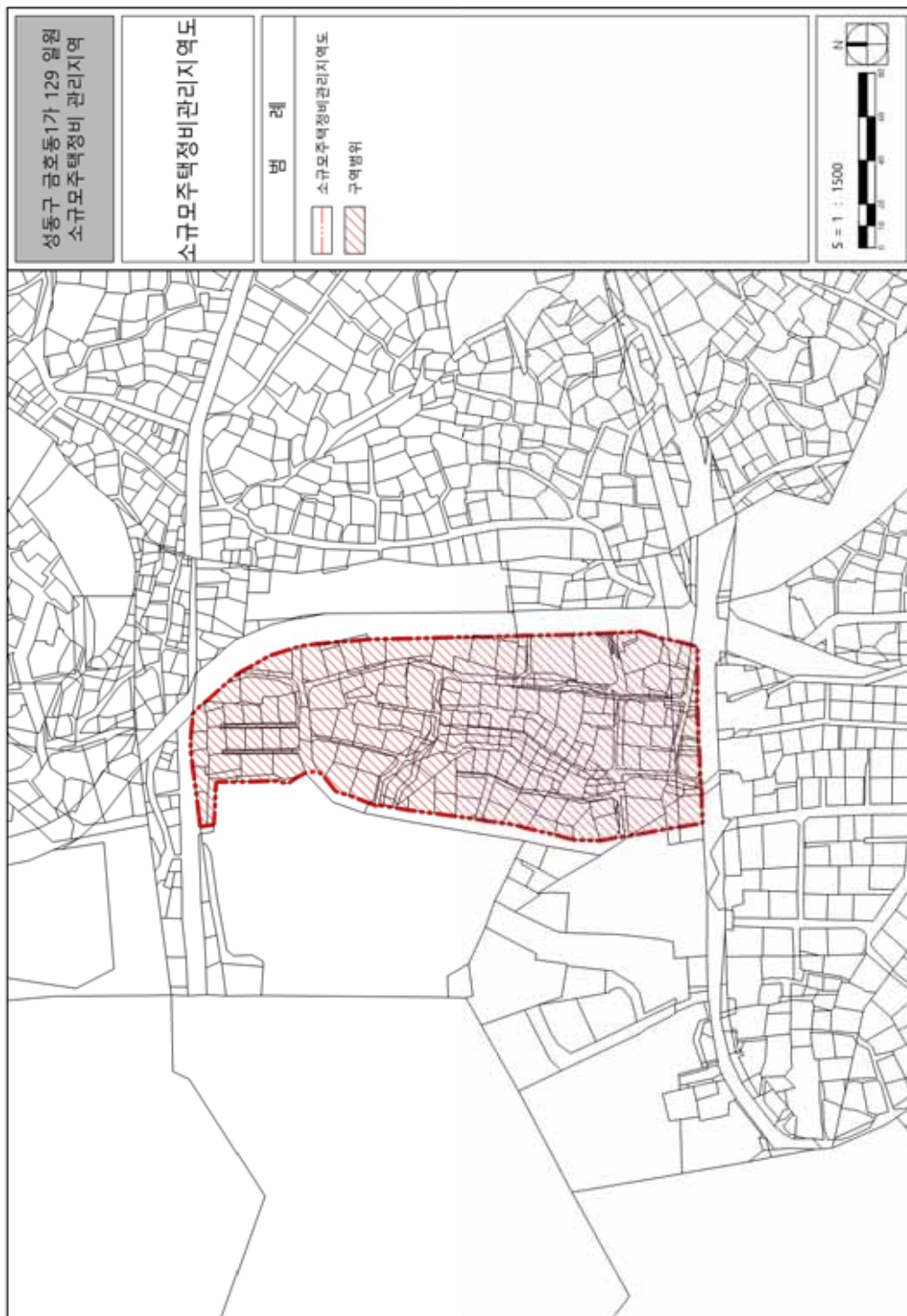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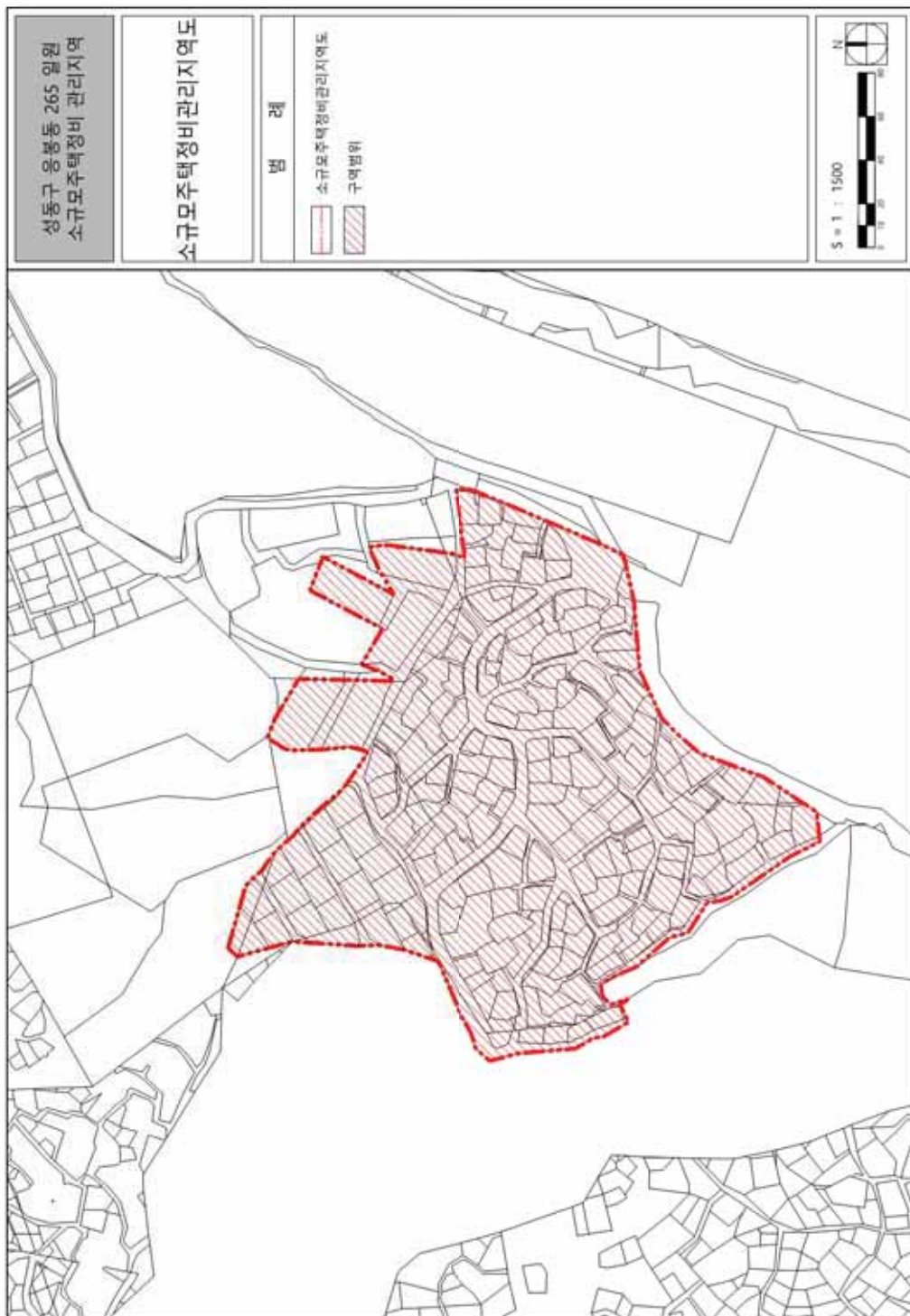
1.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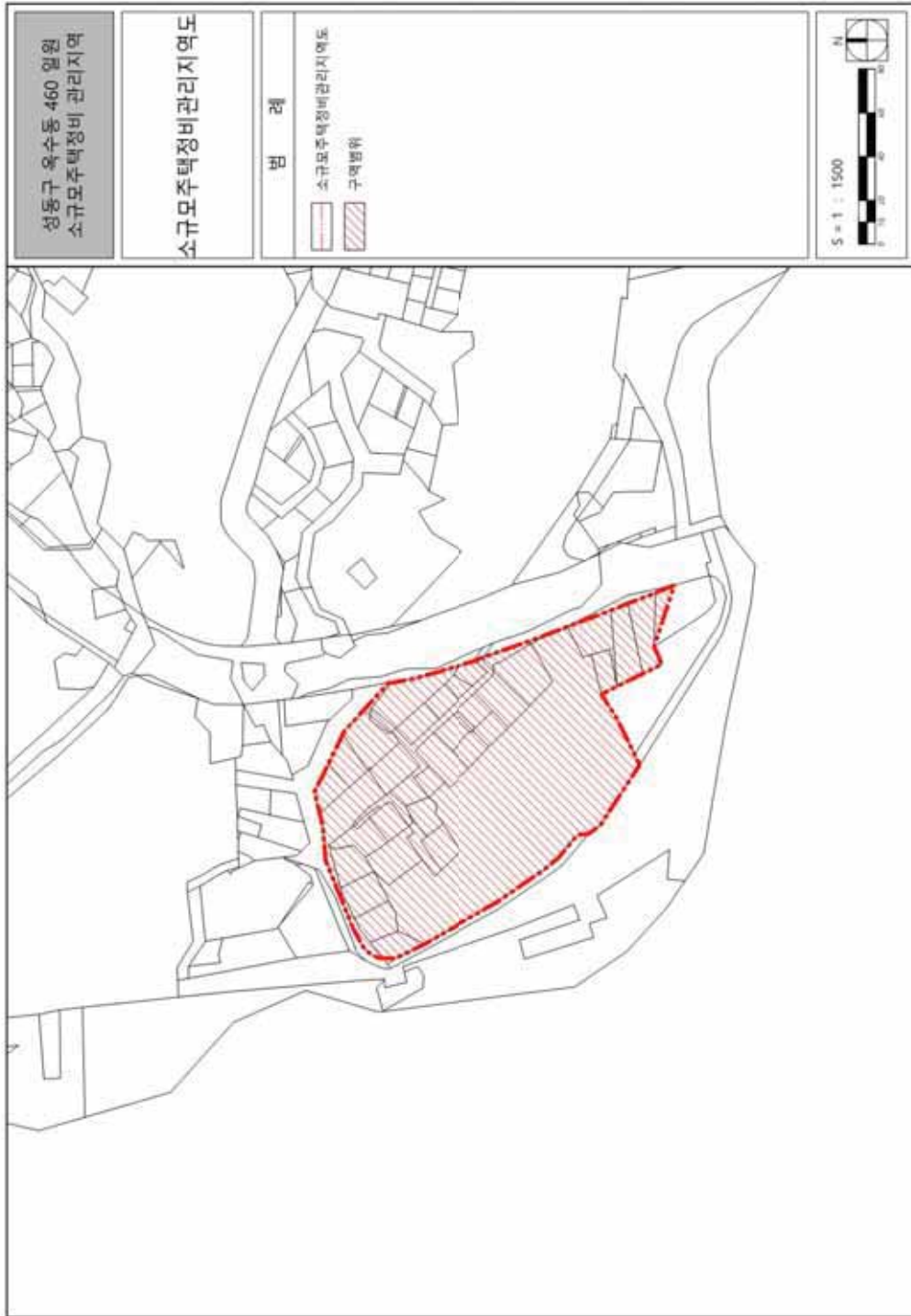
2. 성동구 금호동1가 12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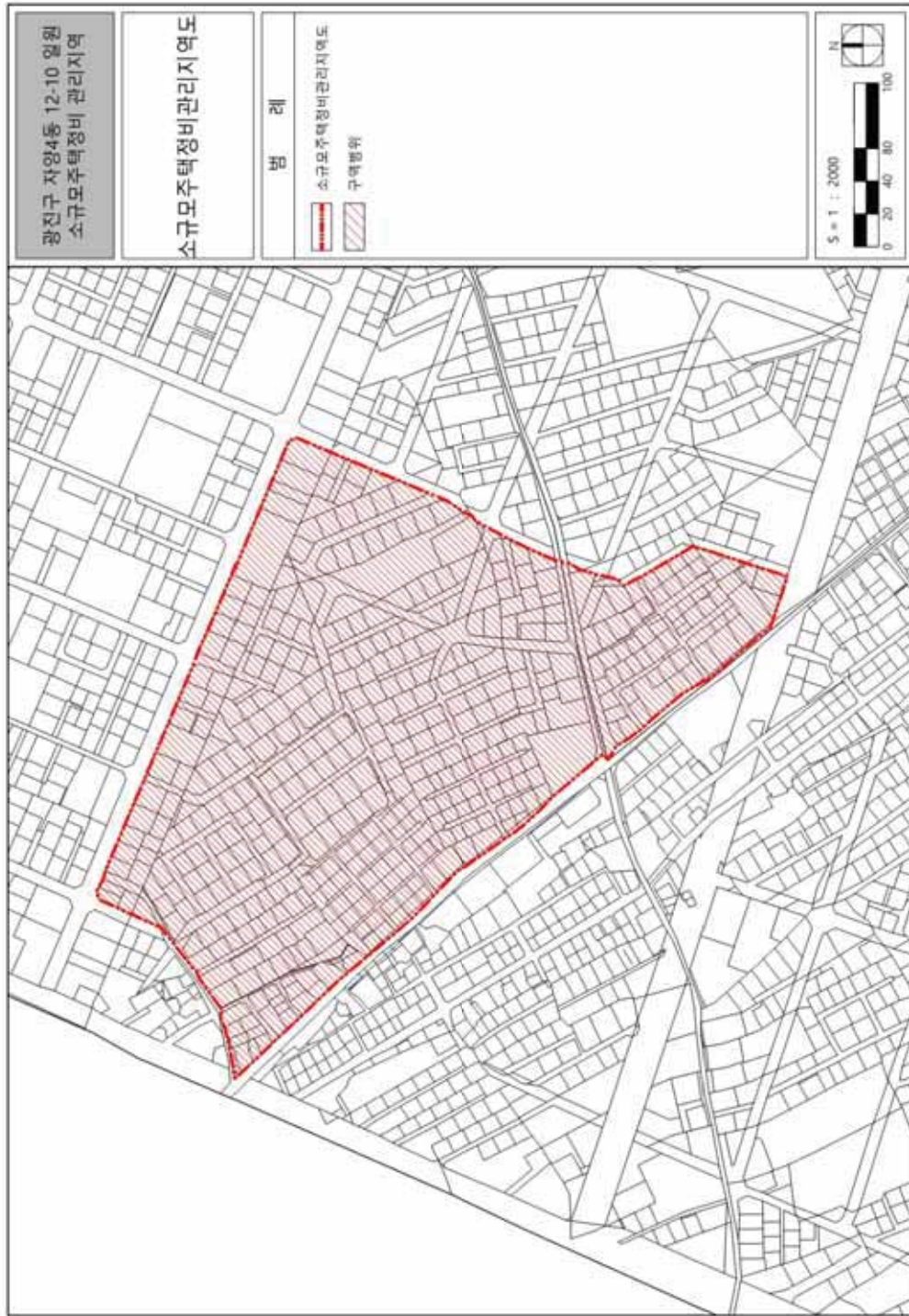
3.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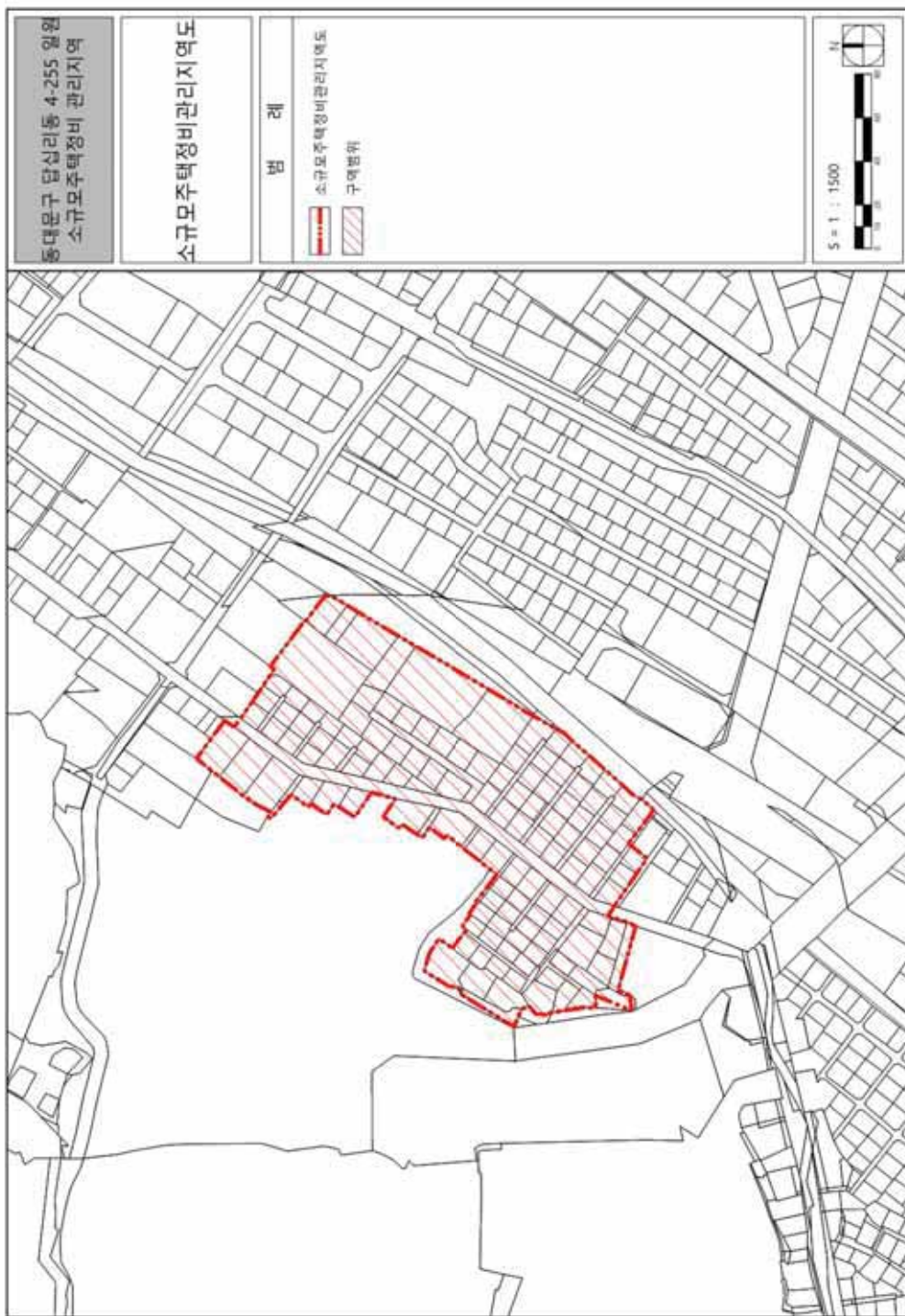
4. 성동구 옥수동 46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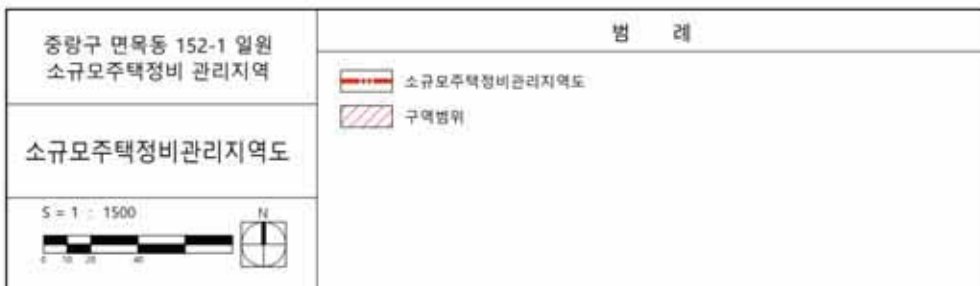
5. 광진구 자양4동 12-1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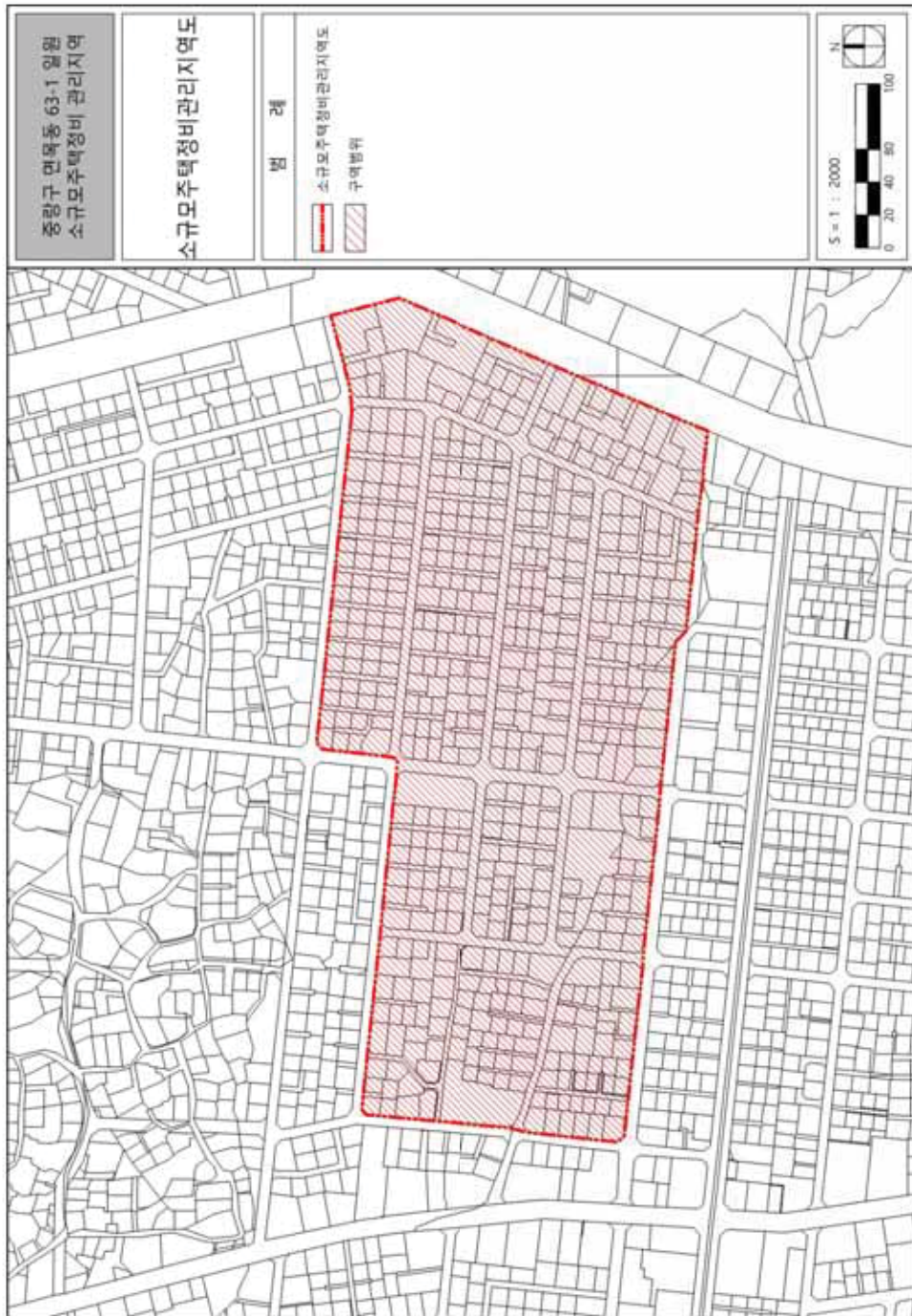
6. 동대문구 답십리동 4-255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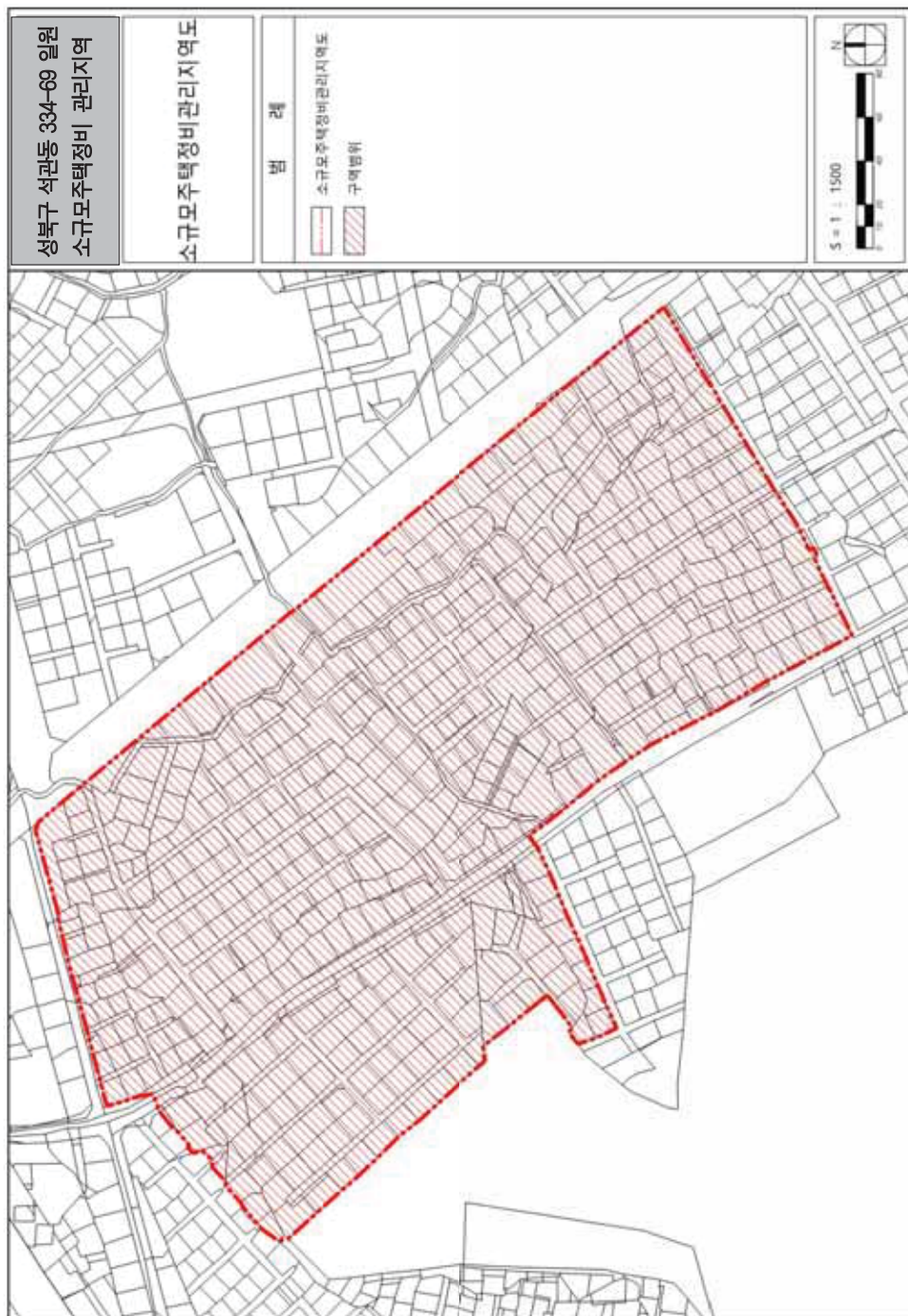
7.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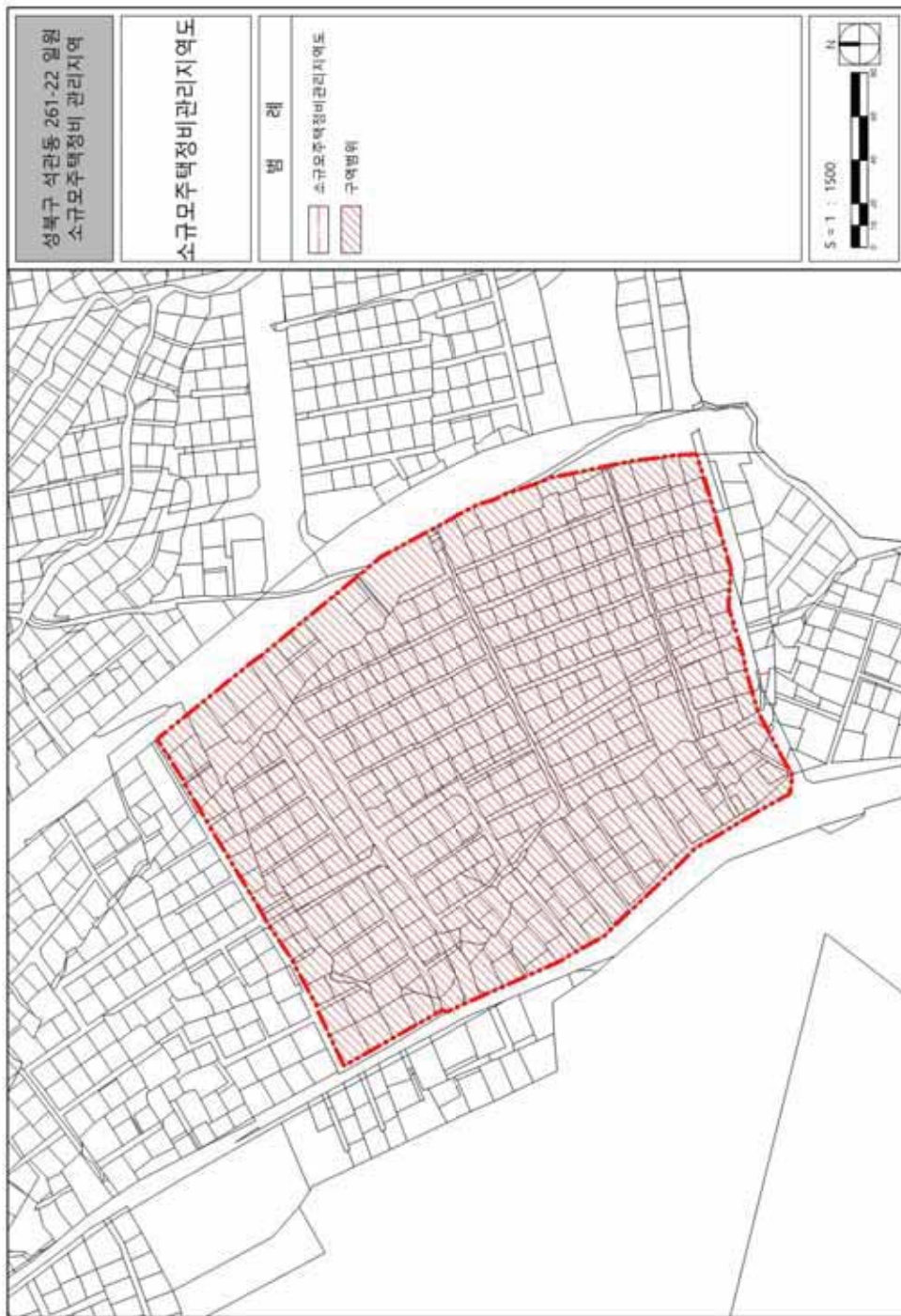
8. 중랑구 면목동 63-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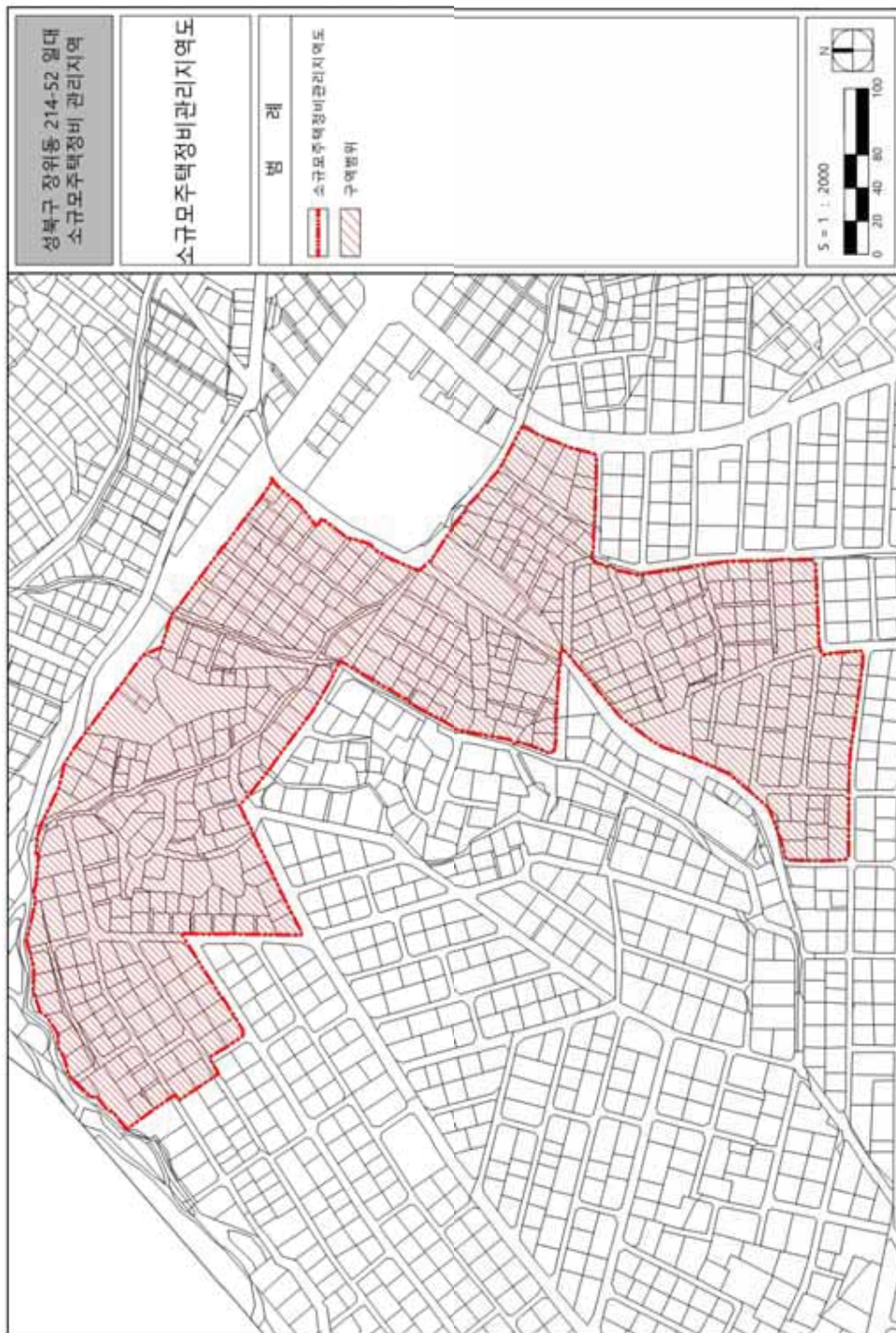
9.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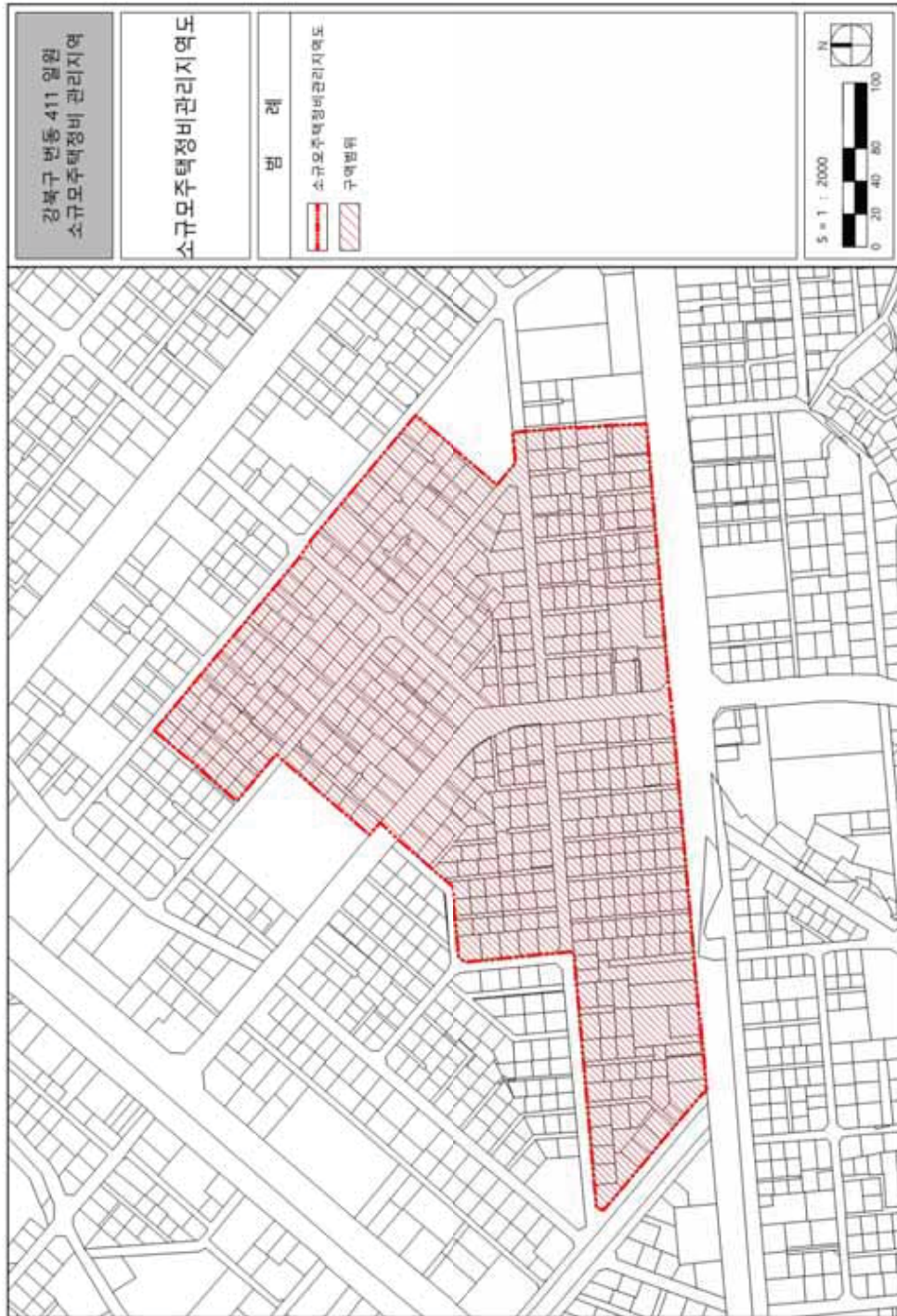
10. 성북구 석관동 261-22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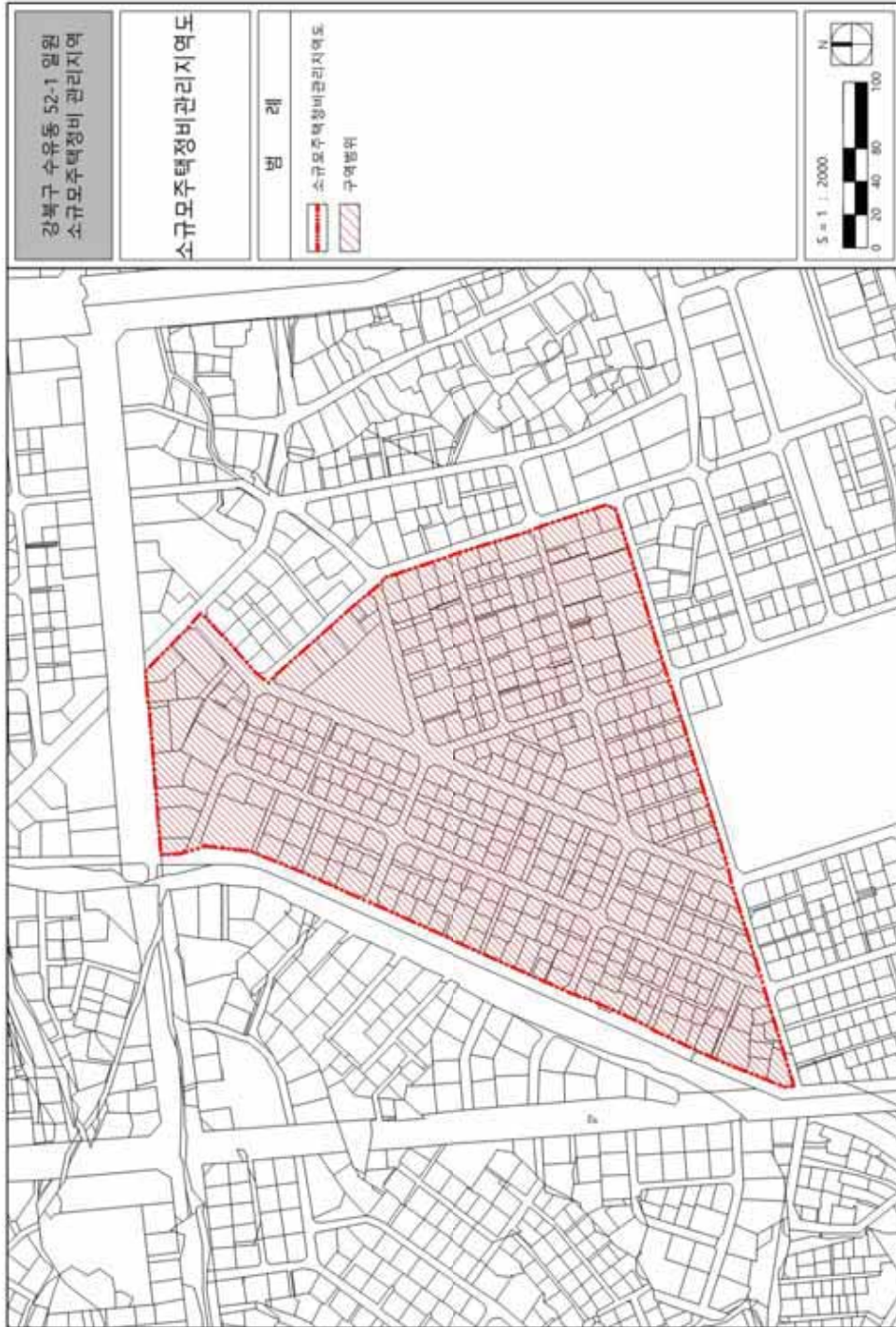
11. 성북구 장위동 214-52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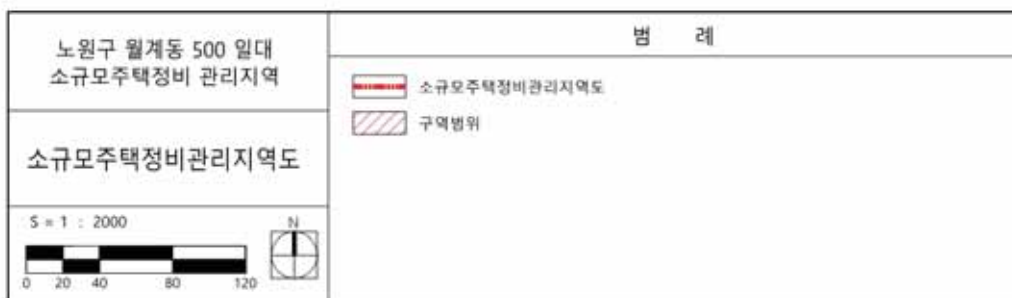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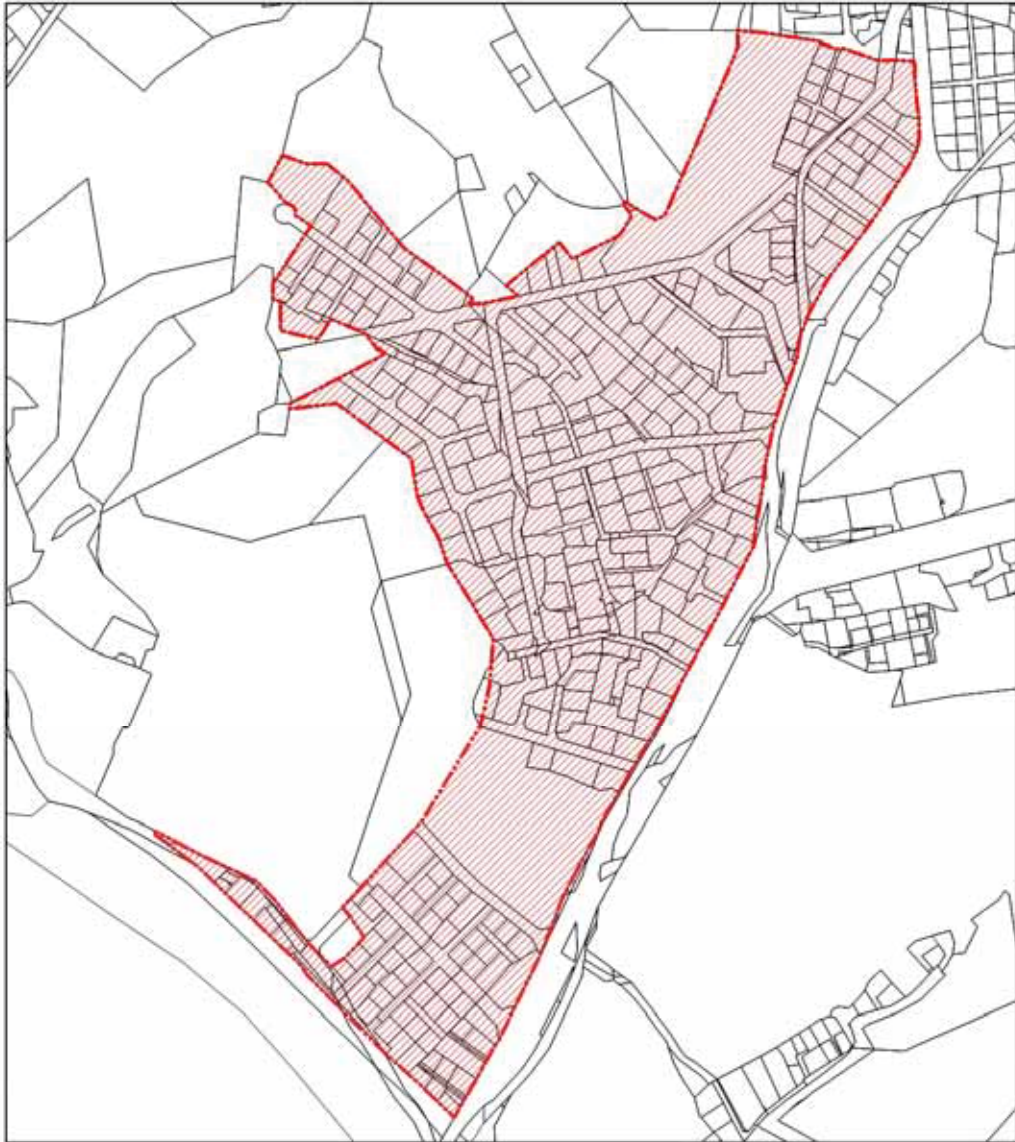
12. 강북구 변동 41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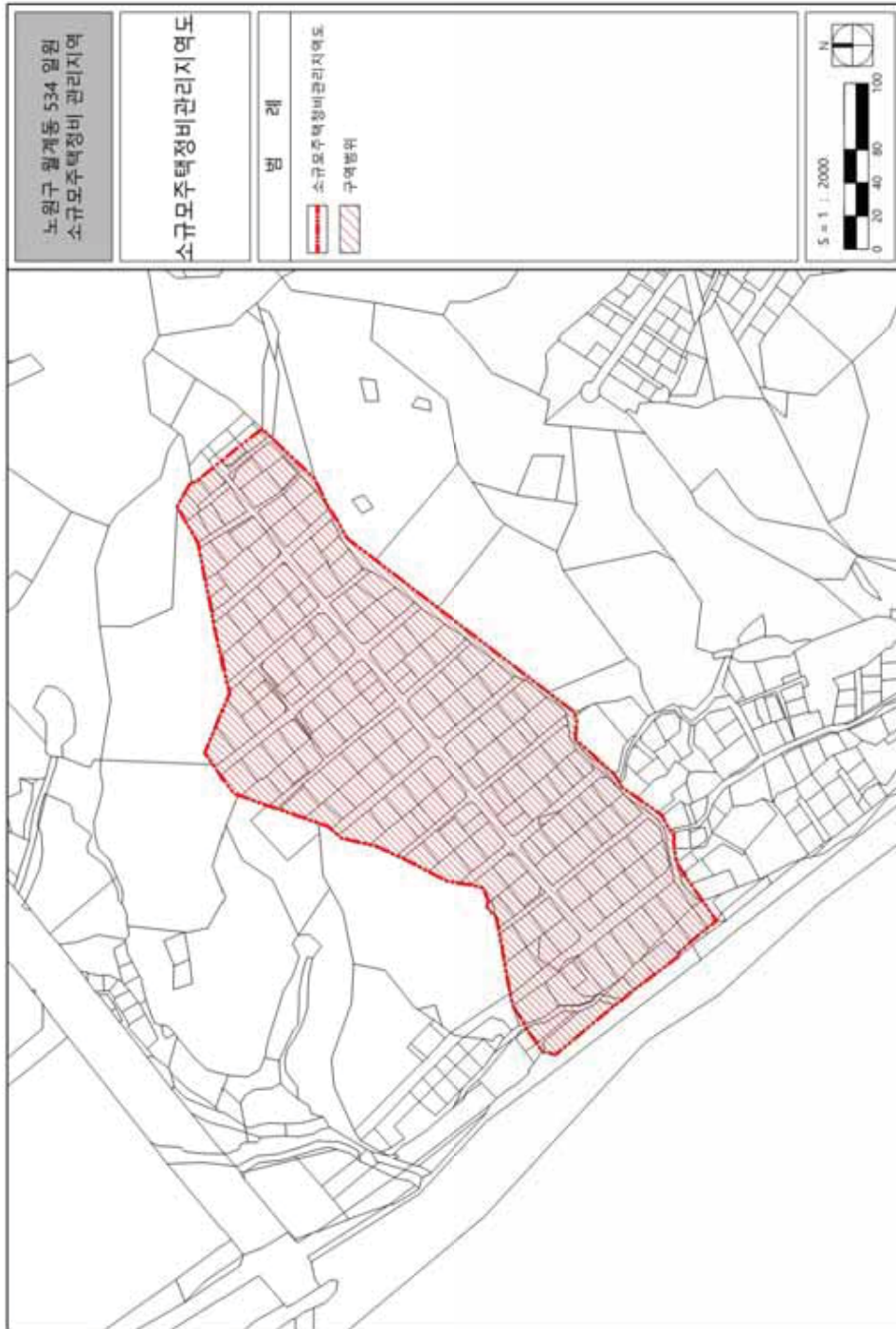
13. 강북구 수유동 52-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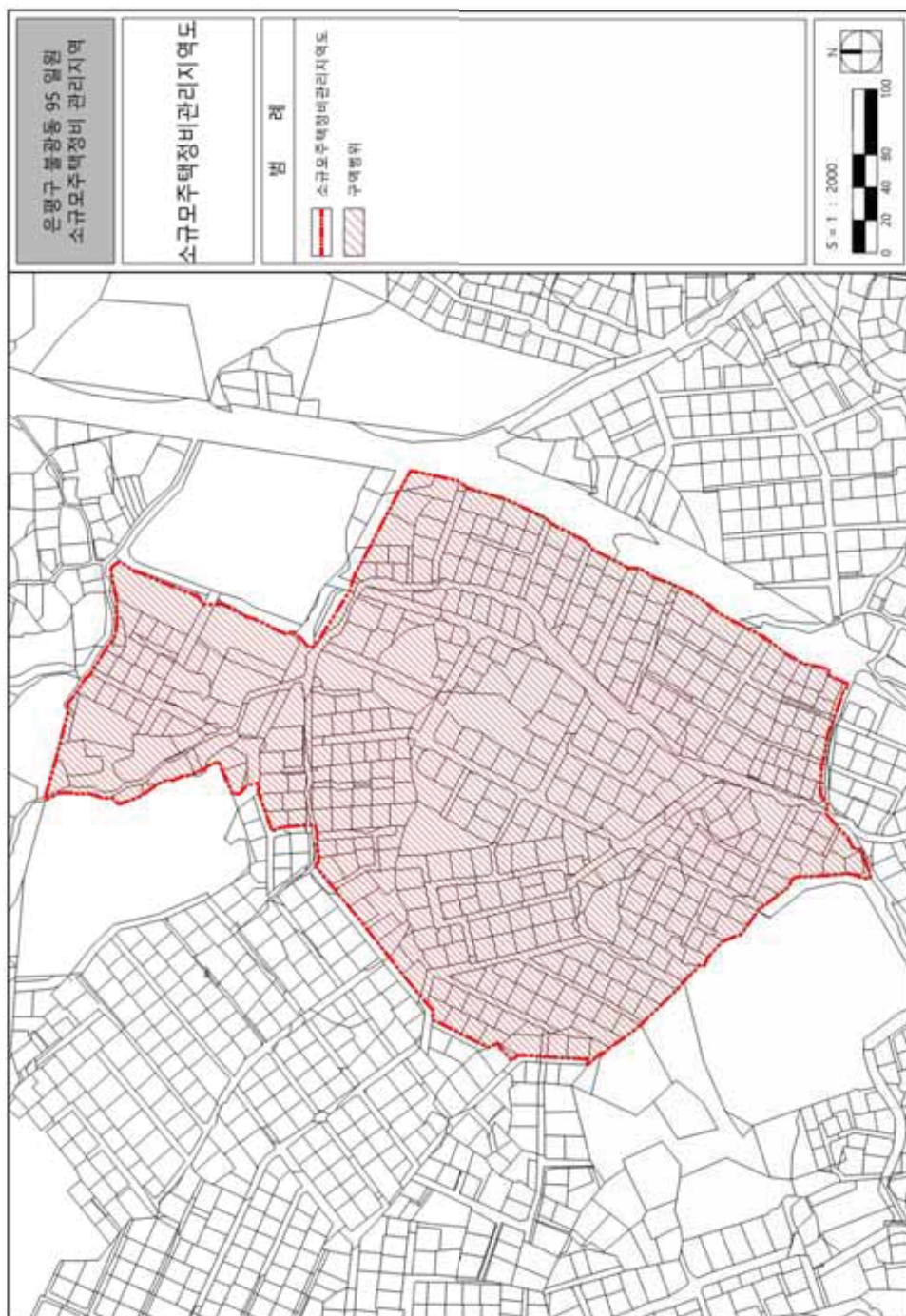
14. 노원구 월계동 50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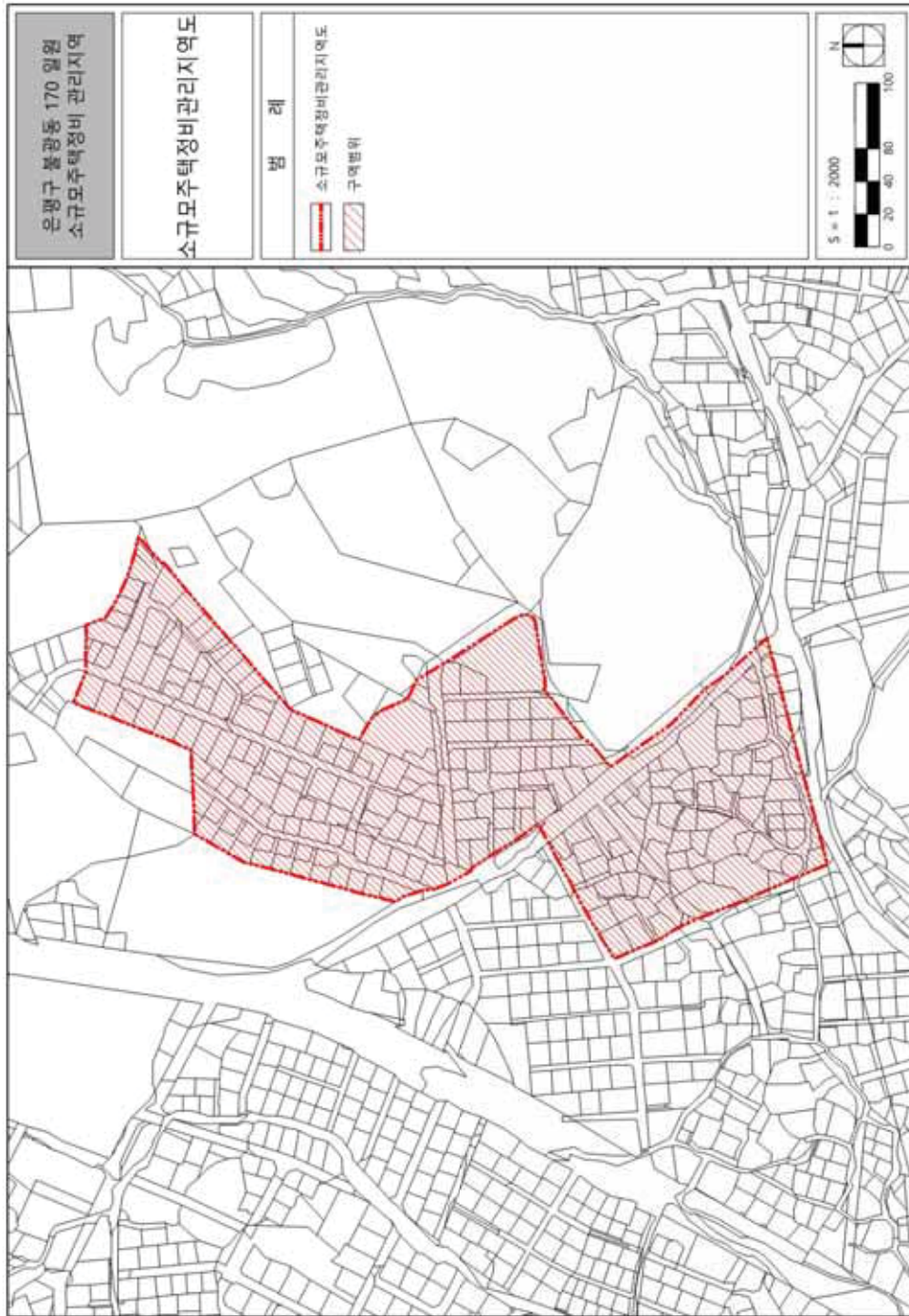
15. 노원구 월계동 534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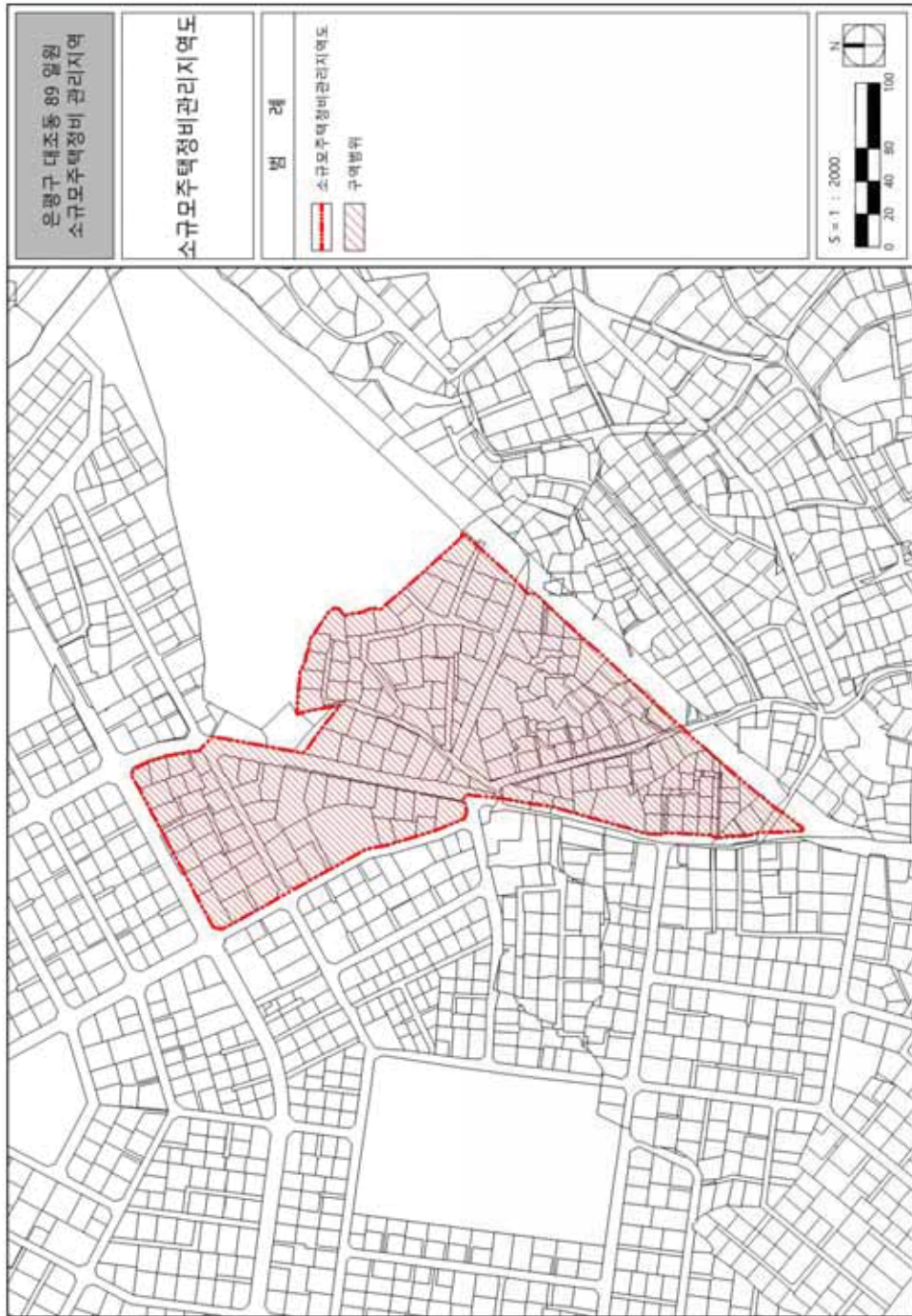
16. 인공구출 95 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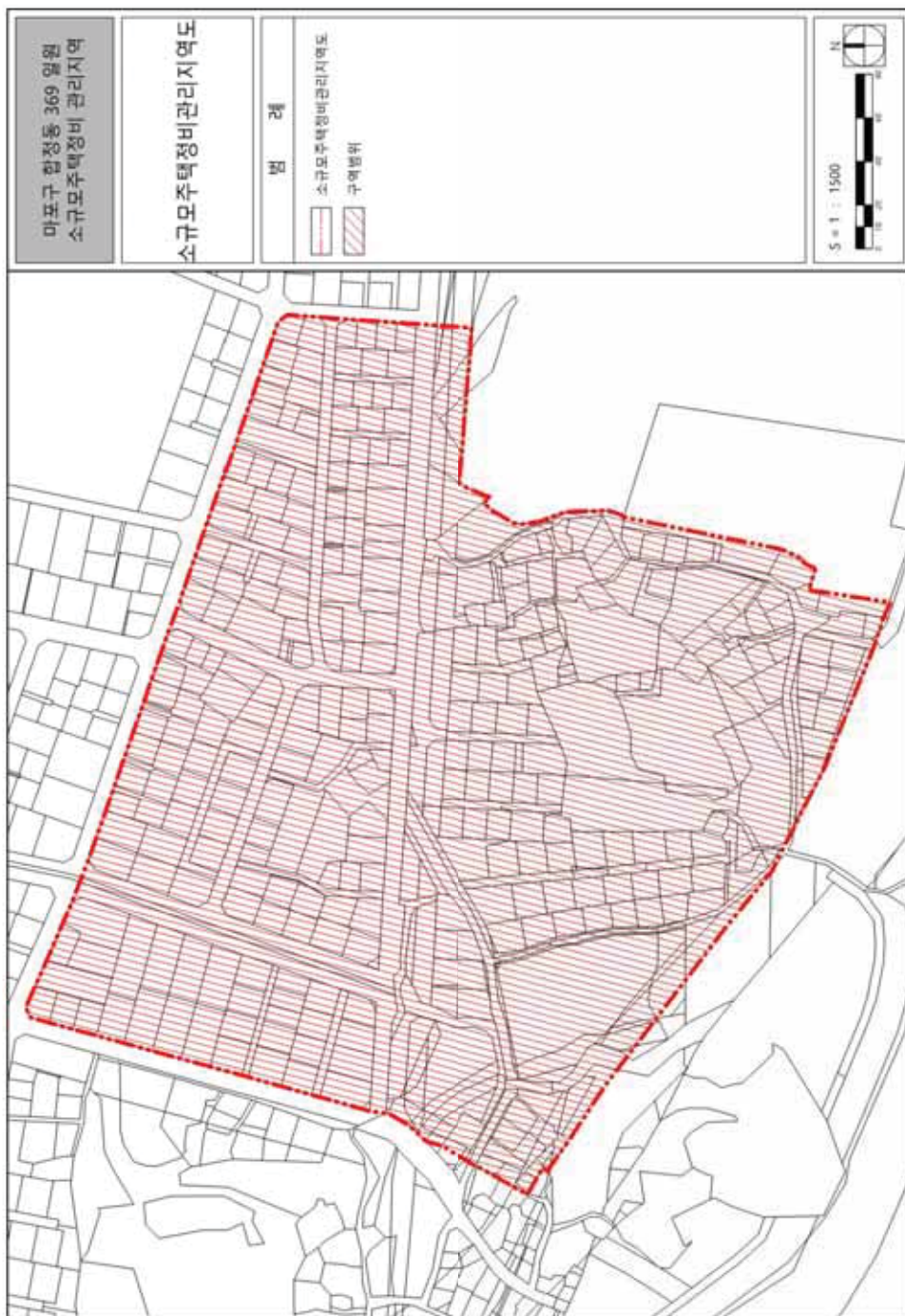
17. 은평구 불광동 17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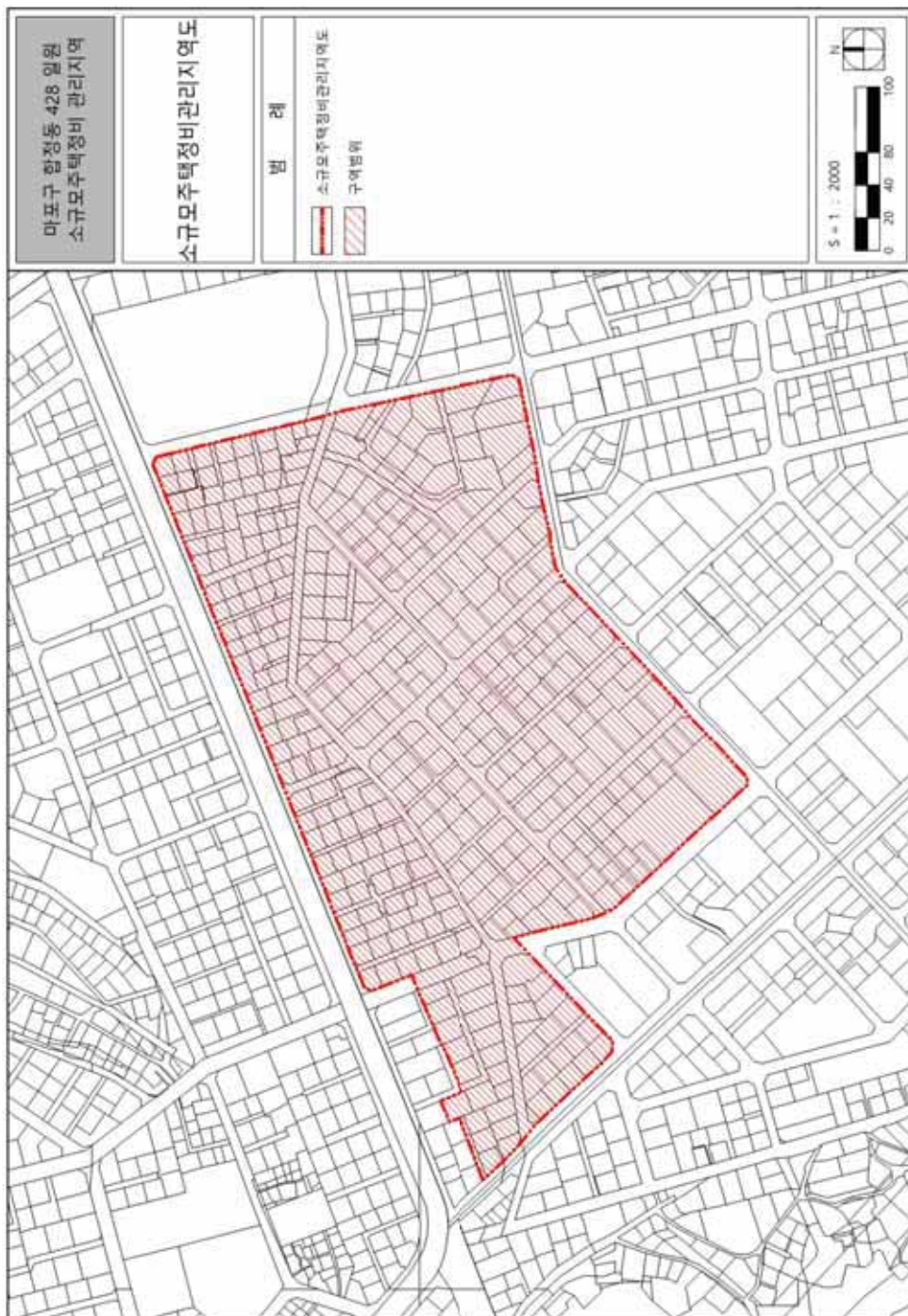
18. 은평구 대조동 8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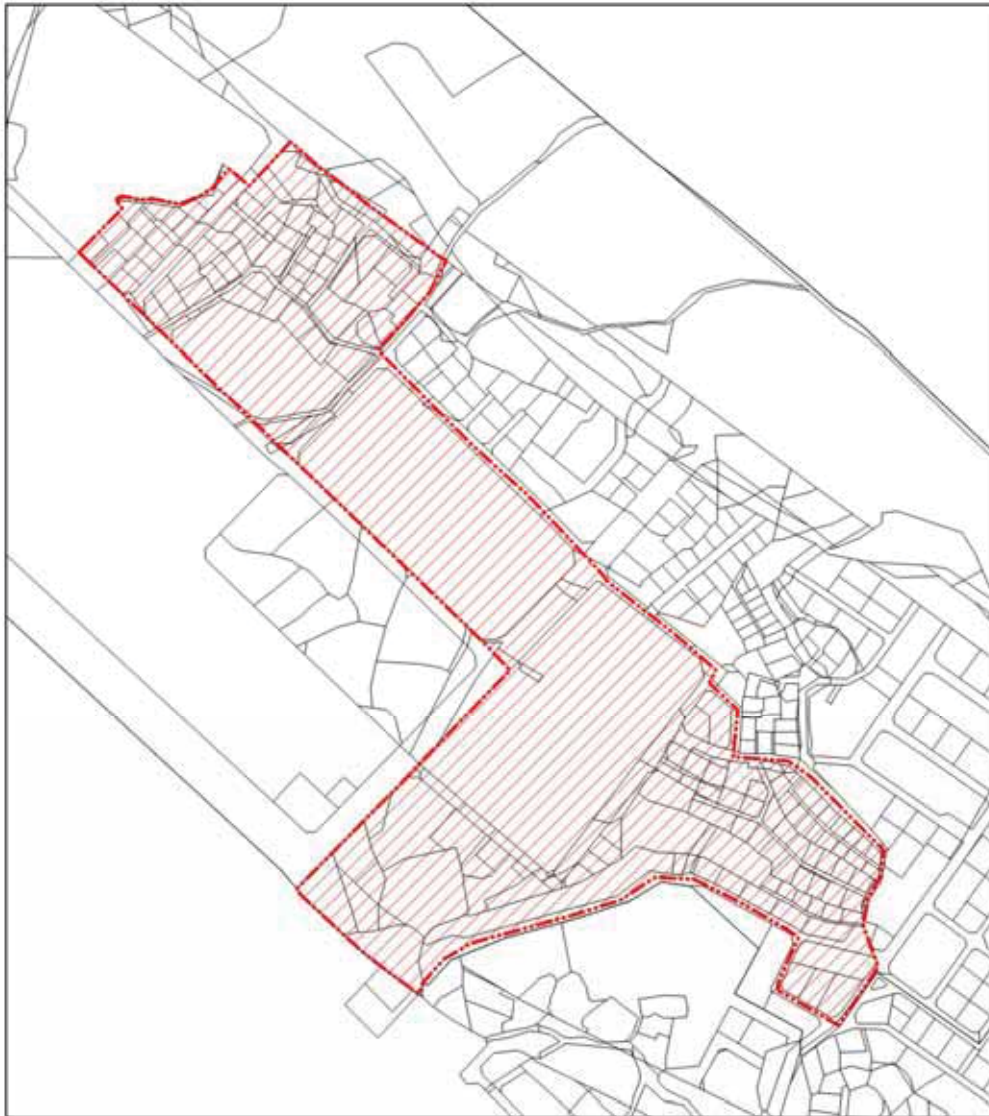
19.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20. 마포구 합정동 428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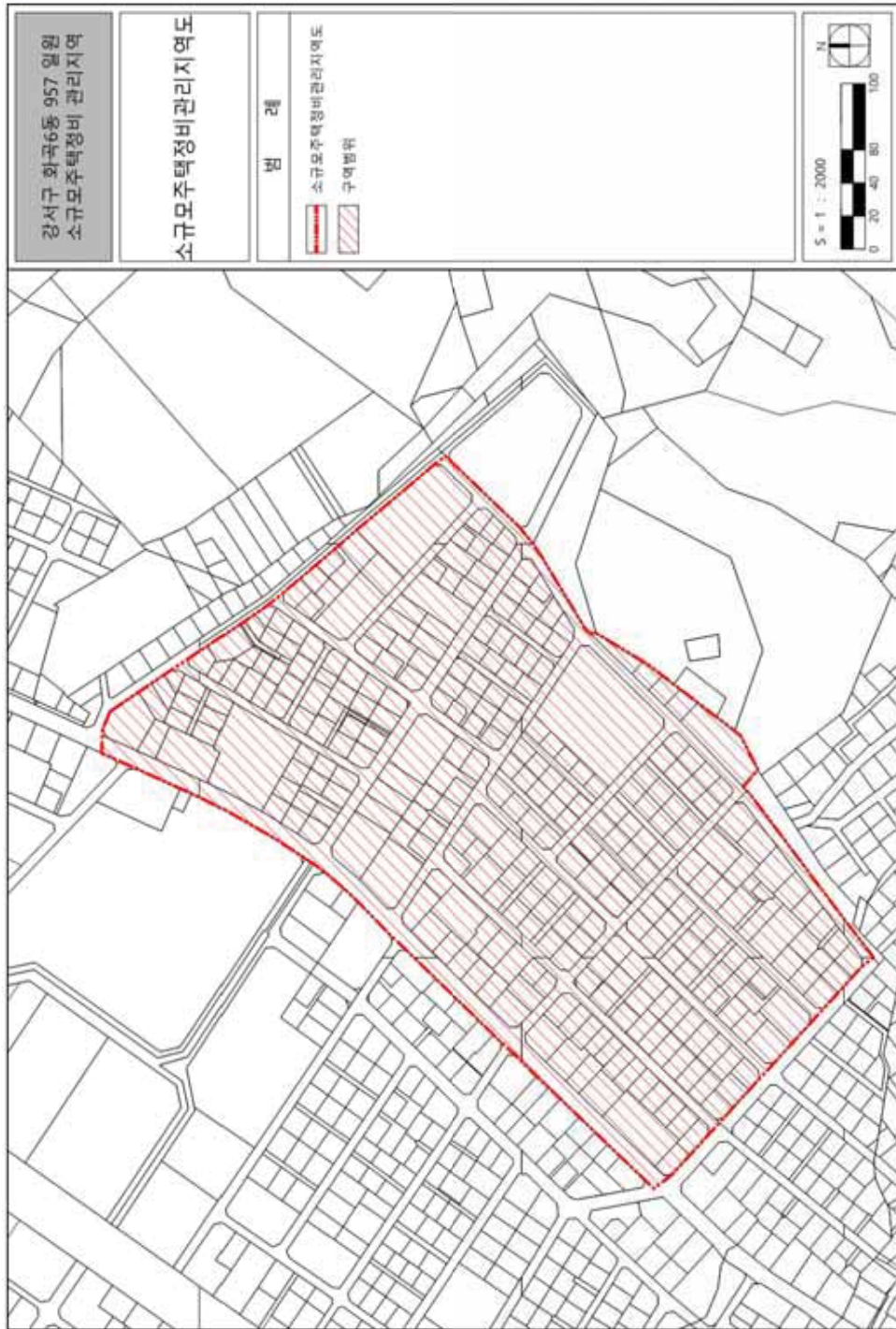
21. 마포구 중동 78 일원



22.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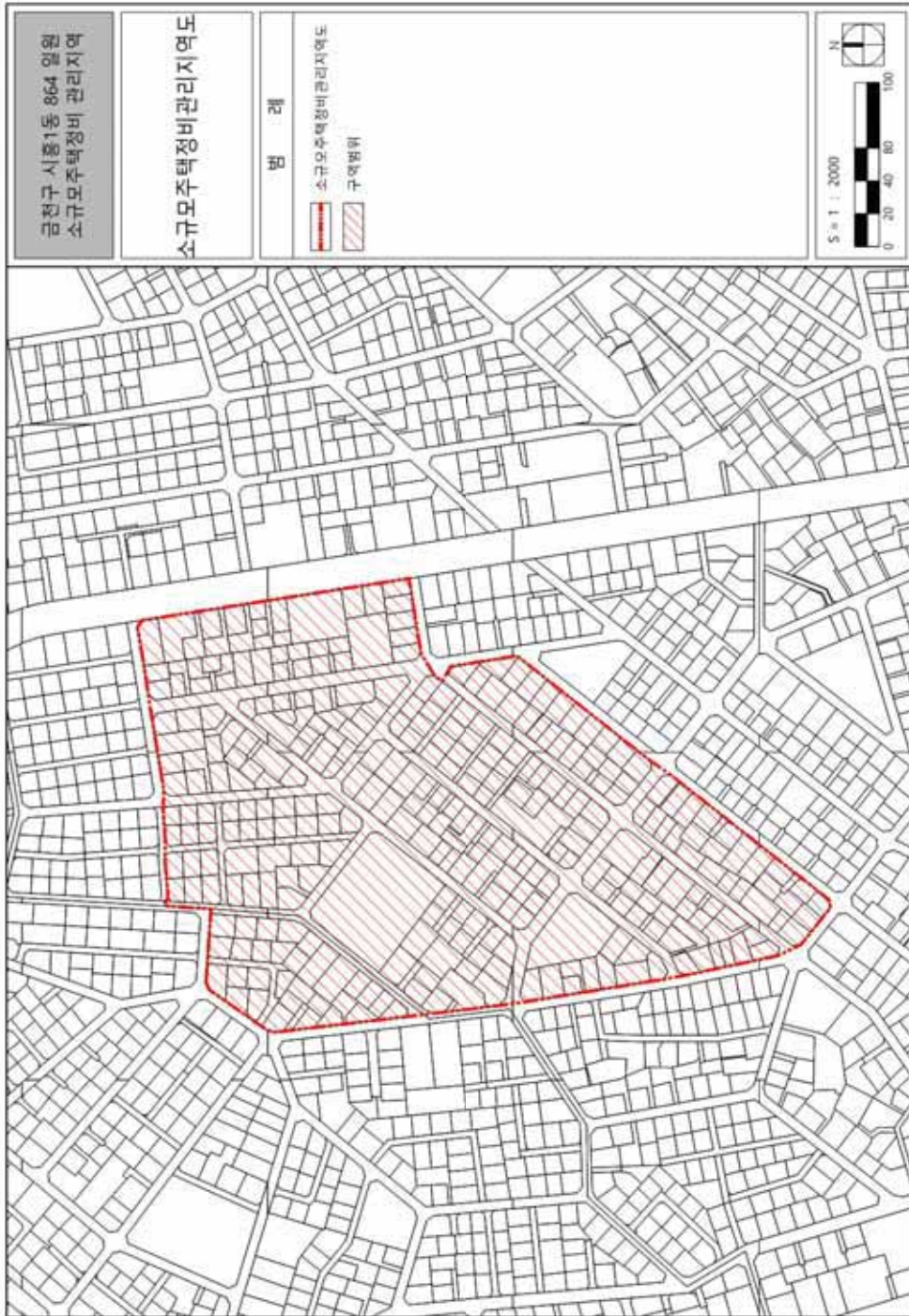
23. 강서구 화곡6동 957 일원



24.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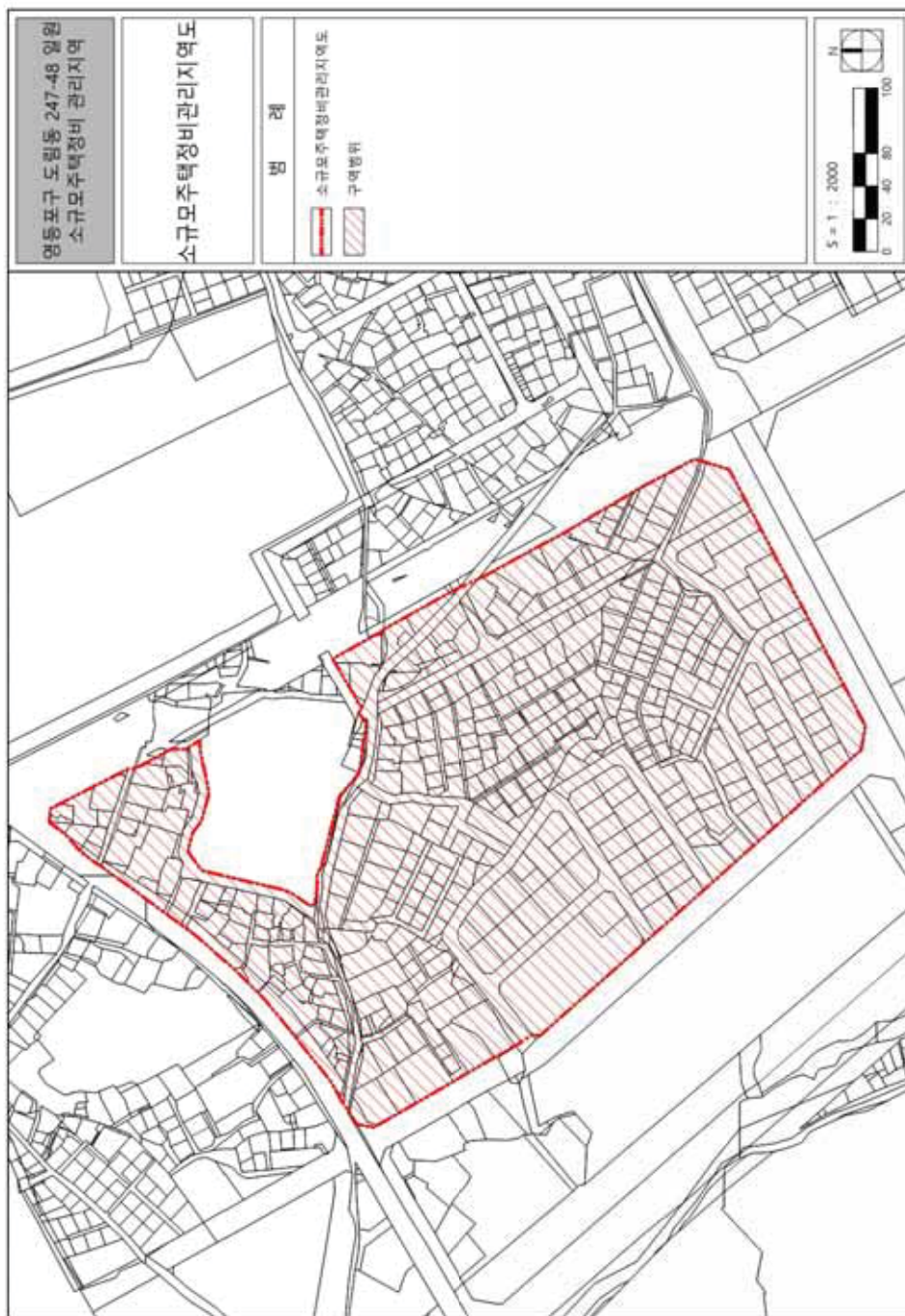
25. 금천구 시흥1동 864 일원



26. 금천구 시흥3동 95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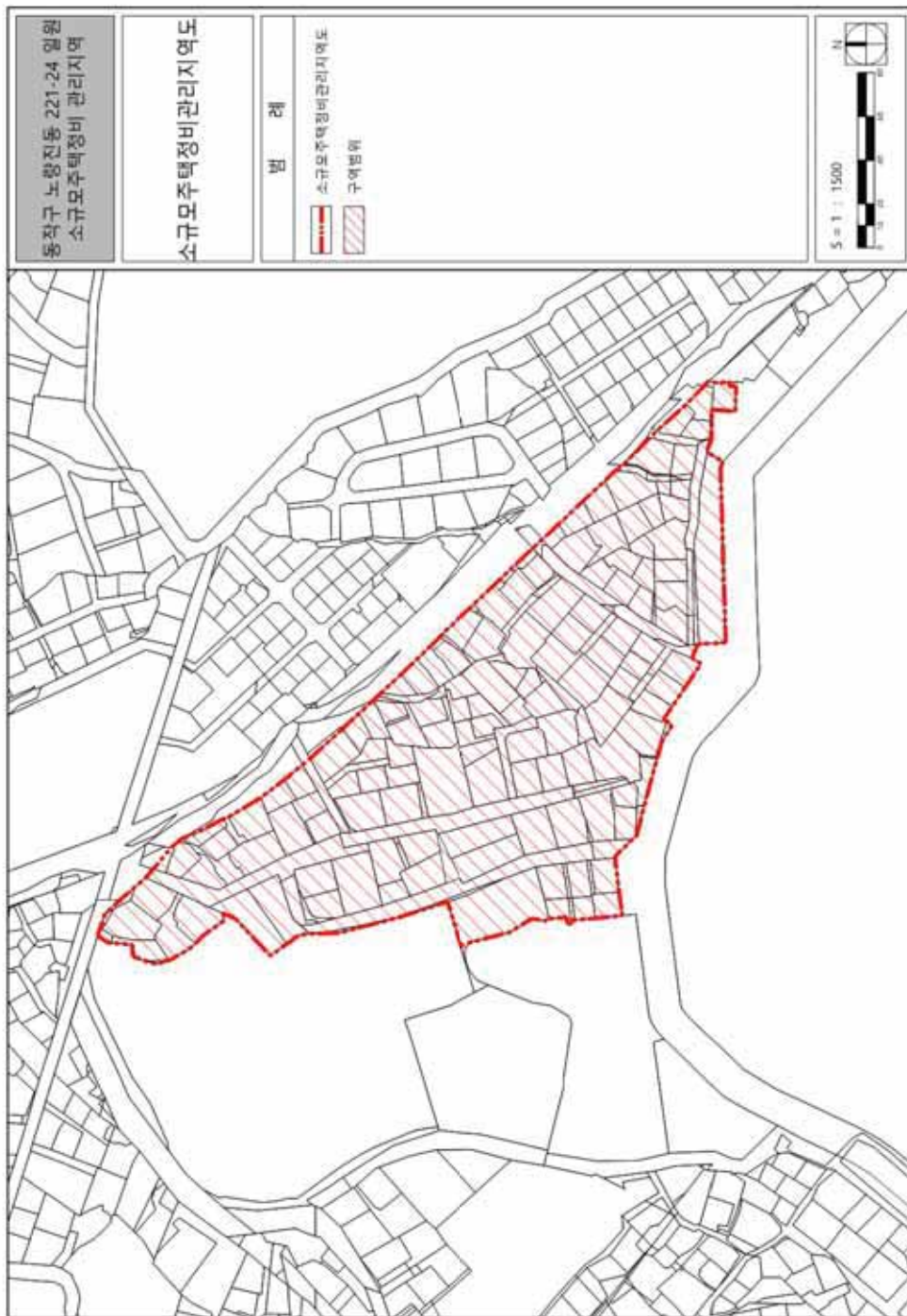
27. 영등포구 도림동 247-48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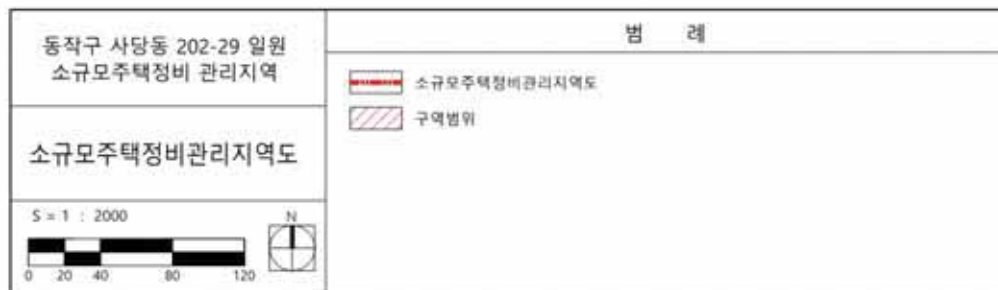
28.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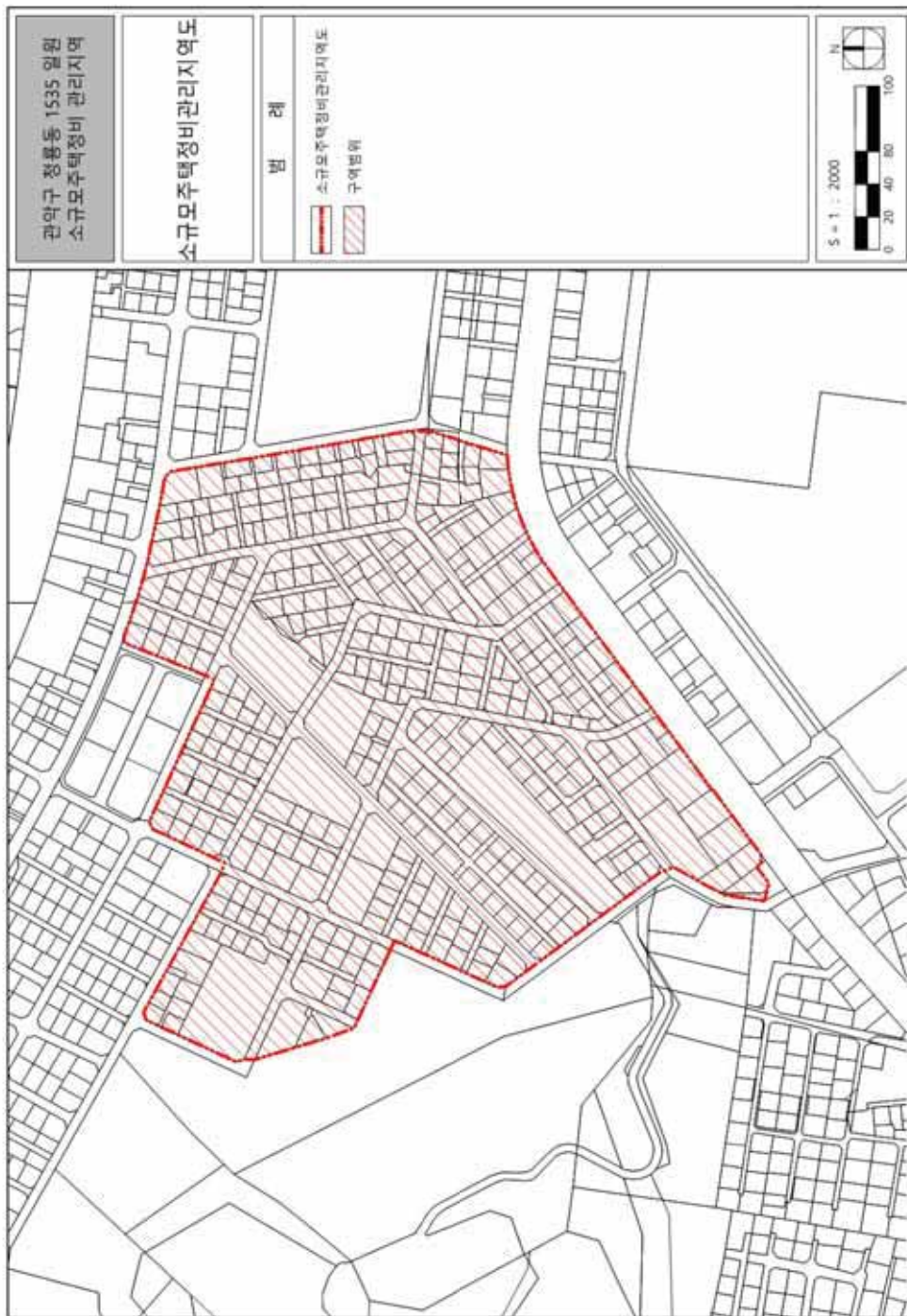
29.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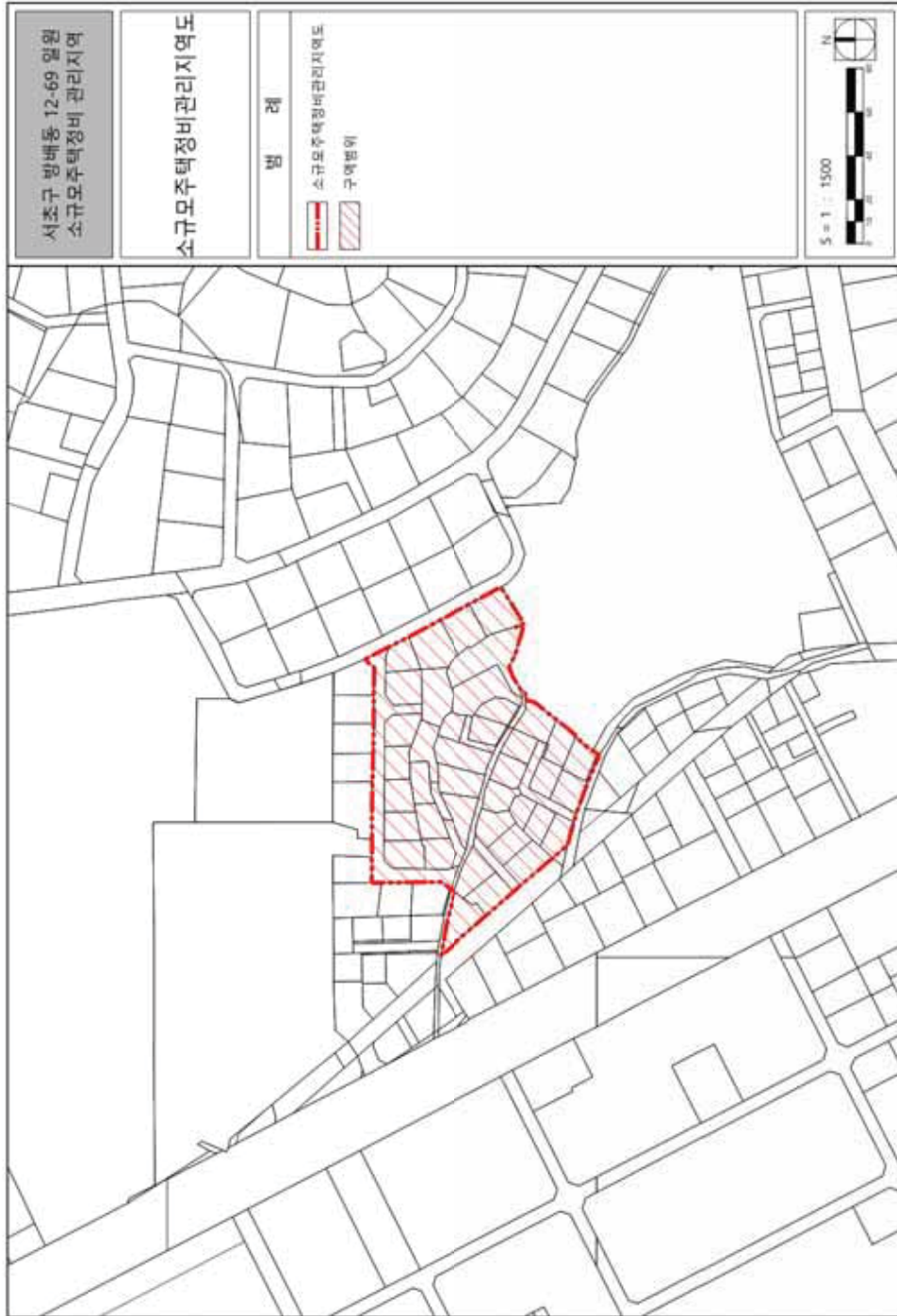
30. 동작구 사당동 202-29 일원



31. 관악구 청룡동 1535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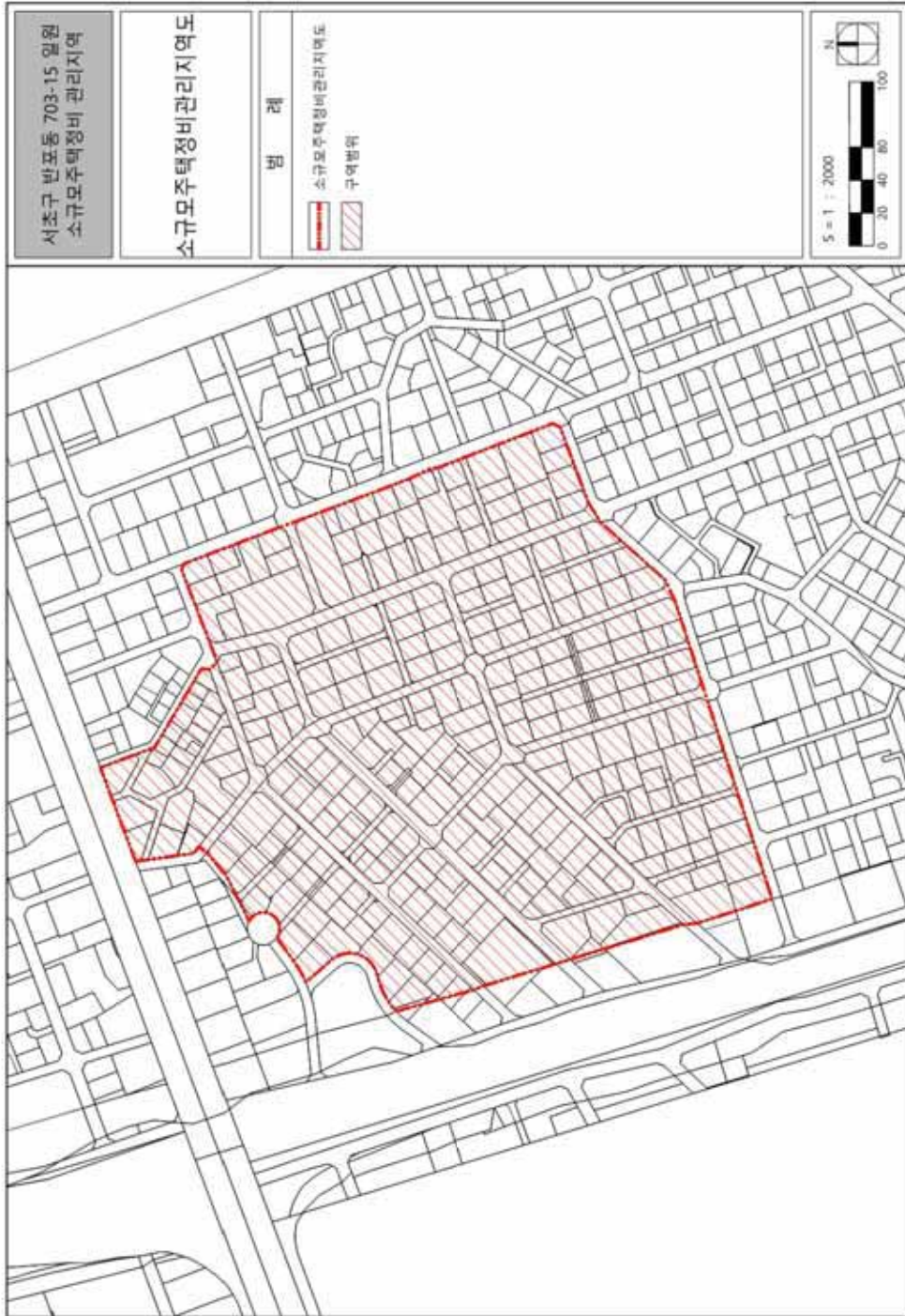
32. 서초구 방배동 12-6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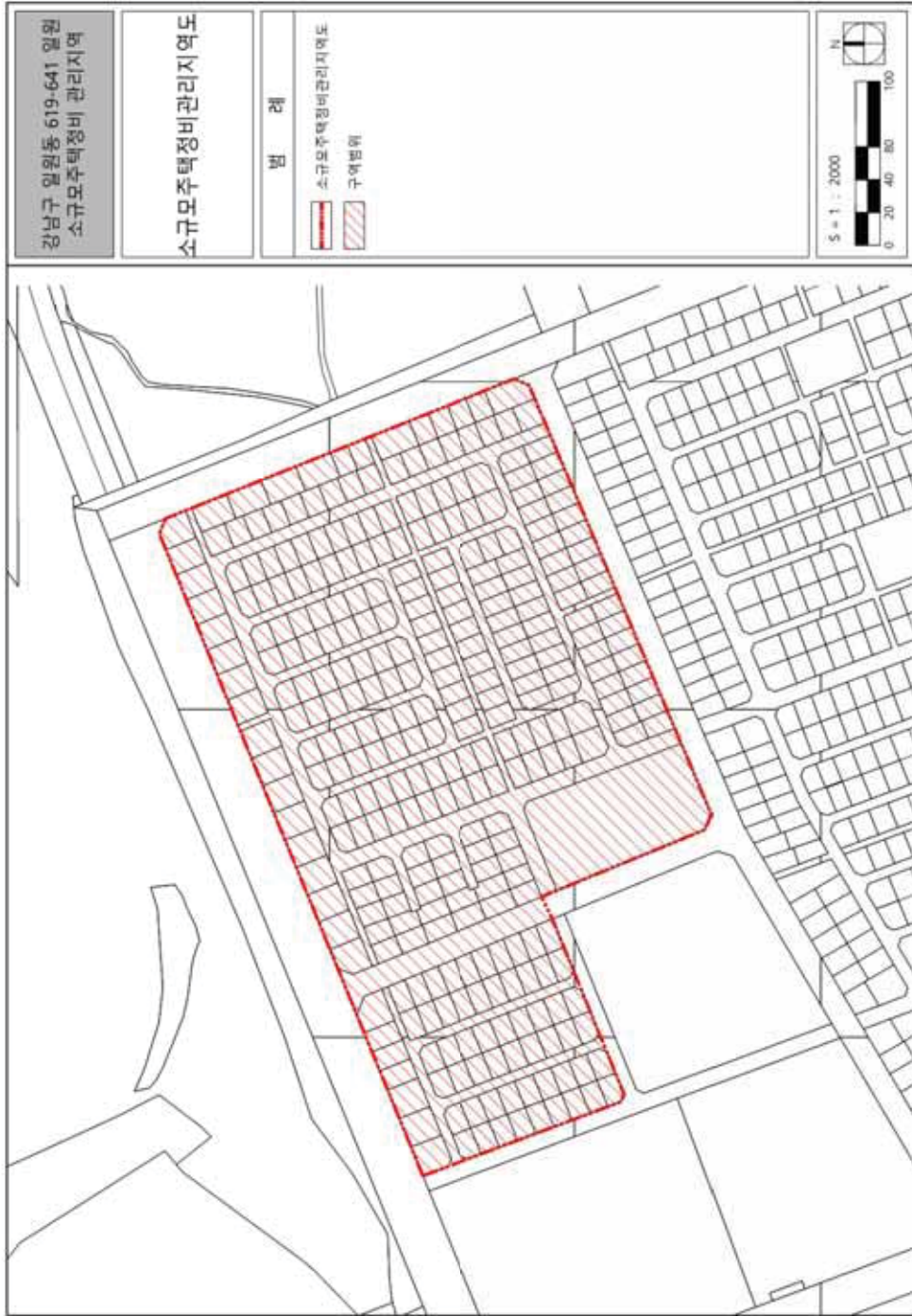
33. 서초구 반포동 726-3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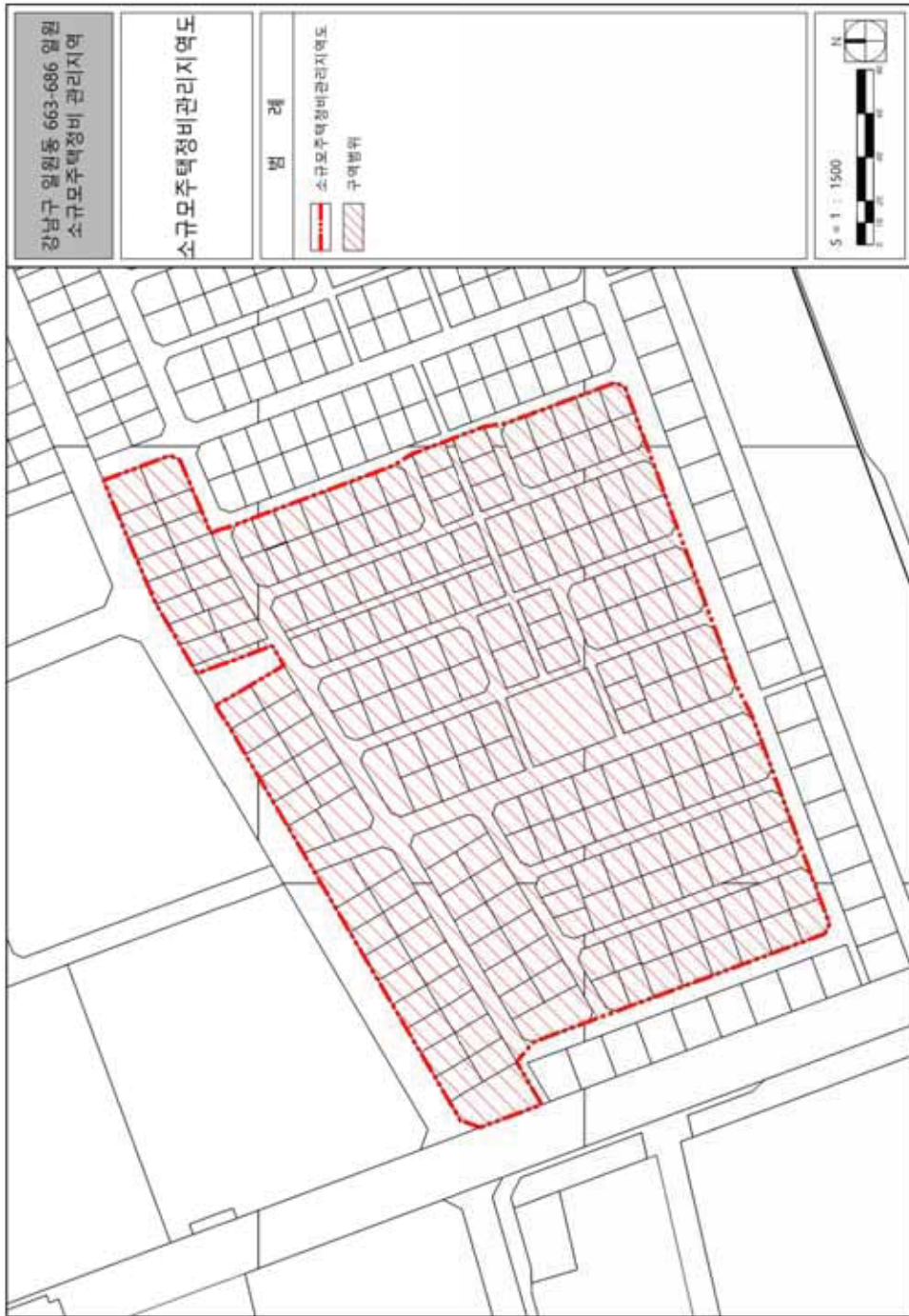
34. 서초구 반포동 703-15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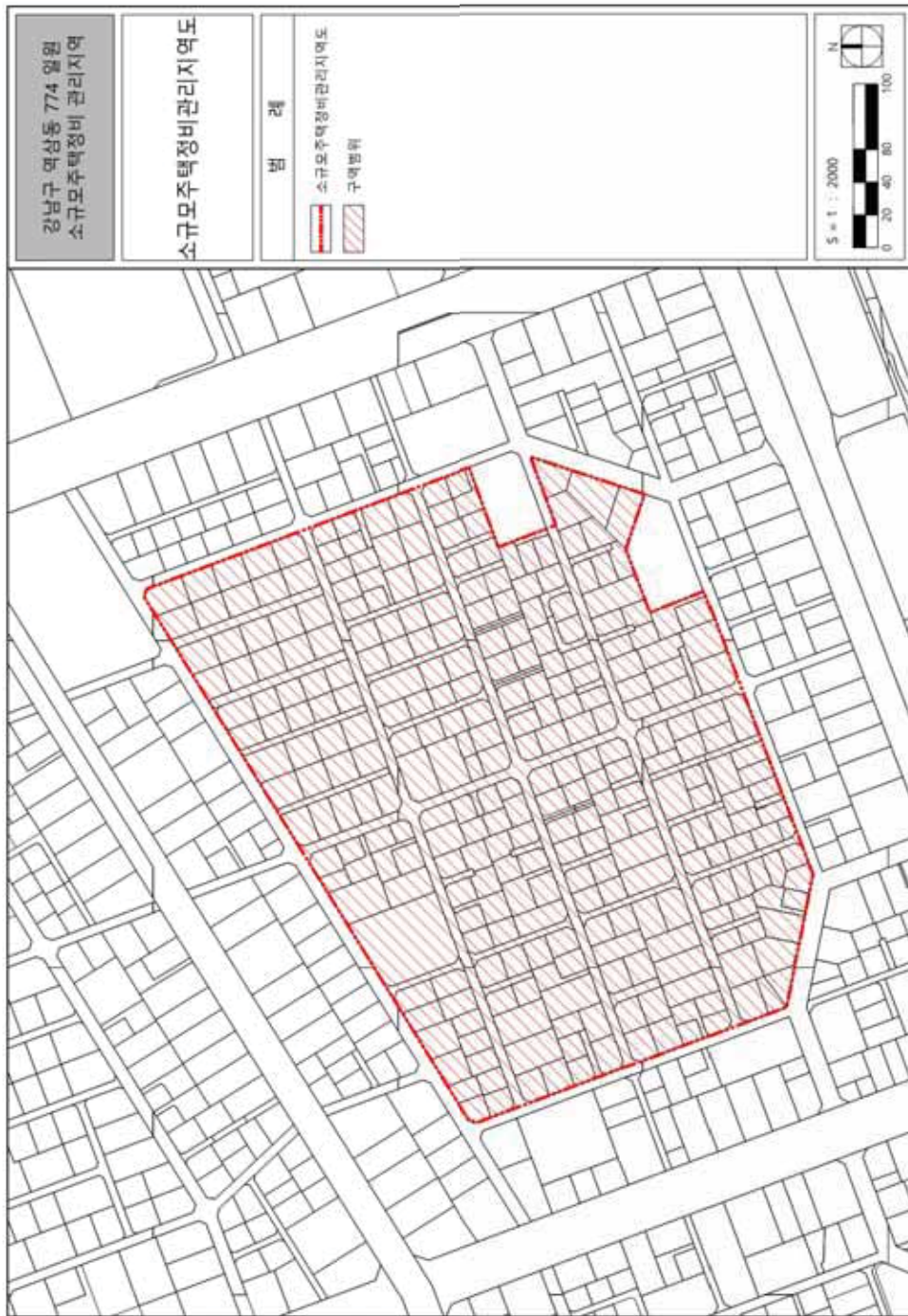
35. 강남구 일원동 619-64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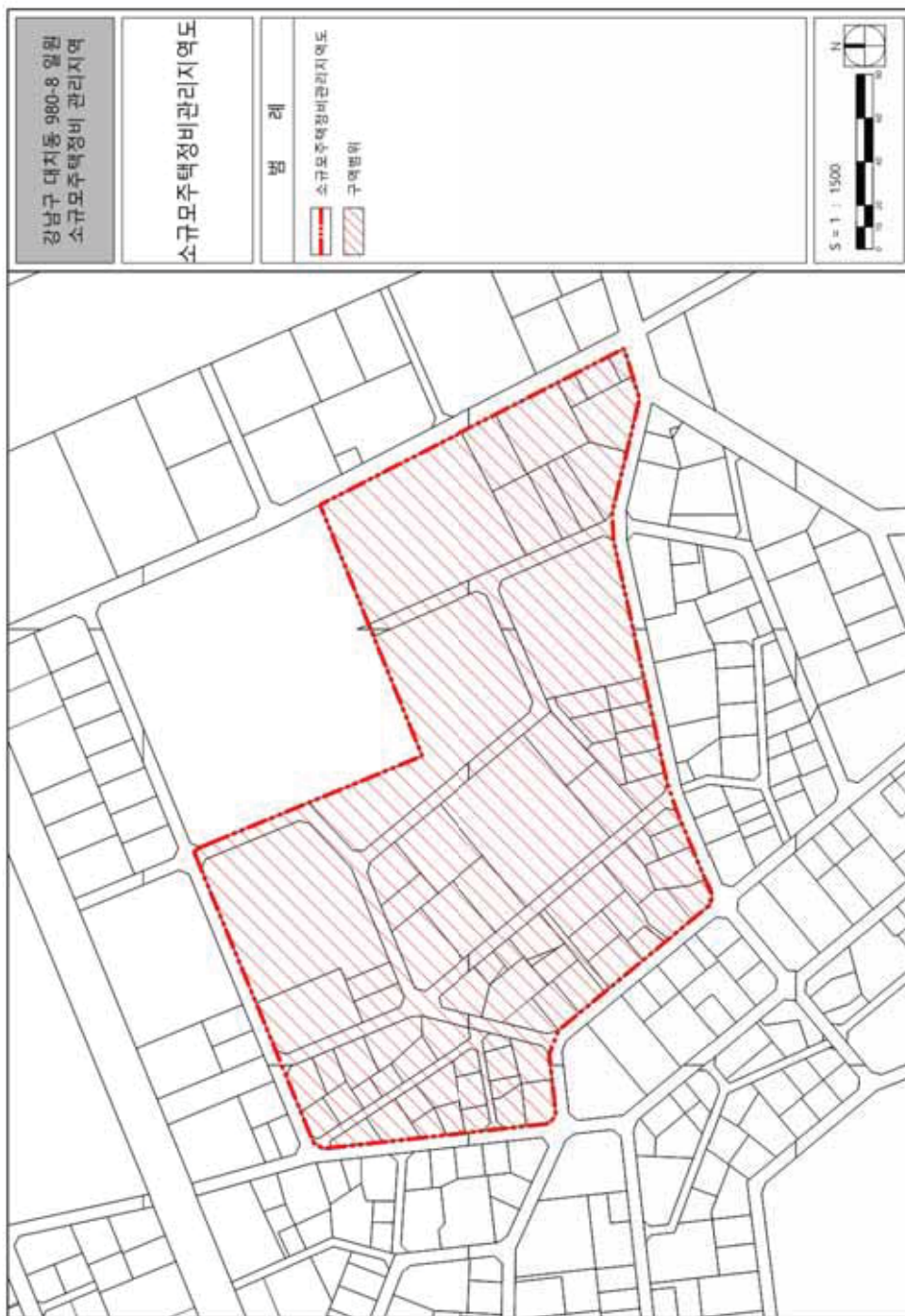
36. 강남구 일원동 663-686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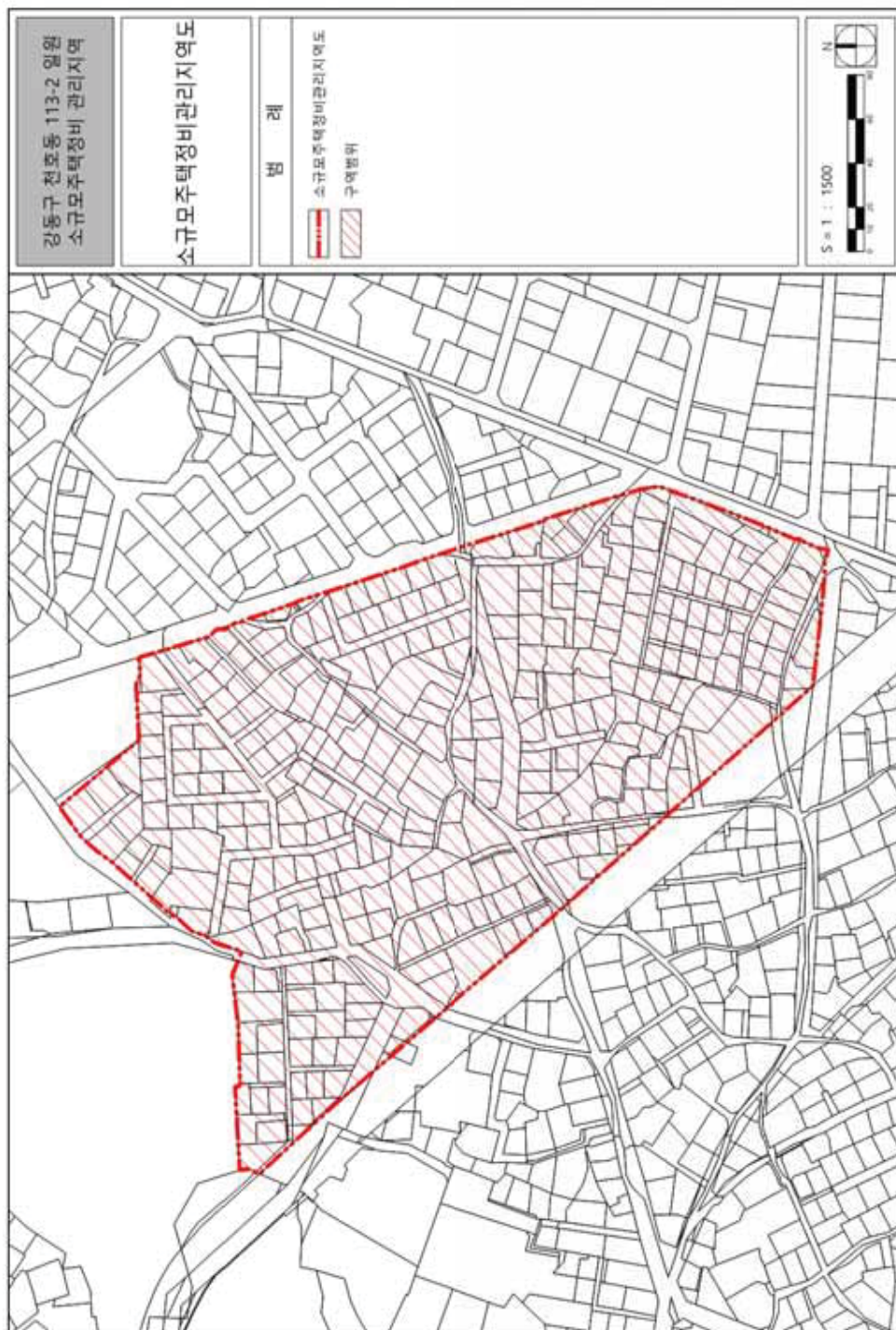
37. 강남구 역삼동 774 일원



38. 강남구 대치동 980-8 일원



39.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8호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70호(2017.03.02.)로 정비구역 지정, 같은 고시 제2021-97호(2021.02.2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된 사당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			
	5	303	20,265.0	2017. 3. 2.	2021.11.21.	2
					2023.11.21.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일몰)기한 연장

3.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4, 동작구청 주택과(☎02-820-9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29호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0호(1973.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40호(1998.7.1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호(2014.2.6.)로 공원변경결정(면적증가 및 세분)된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공원세분변경(근린→역사) 및 공원면적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서소문역사공원을 역사 체험 및 휴식공간으로 재조성하여 관광명소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2가 16-4번지

3. 공원면적 : 21,363.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68) 및 중구 공원녹지과(☎ 02-3396-5852)

서소문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구 의주로2가 16-4번지 일대)

	(㎡)	(㎡)	()	(㎡)	()	(㎡)	(㎡)	()	(㎡)	()	(㎡)	()
	17,340.00	5,425.95		149.36	149.36	169	21,363.00	9,949.90	782.84	24,822.16	200	4,023㎡
	3,797.74	3,797.74					5,580.29	5,580.29				1,782.55㎡
	2,929.90	2,929.90					2,698.99	2,698.99				
	867.84	867.84					2,881.30	2,881.30				
	277.68	277.68				13	468.77	468.77			13	191.09㎡
	(29.82)	(29.82)				17	958.42	958.42			74	958.42㎡ (57)
	670.03	670.03				4						670.03㎡
	166.00	166.00				1	2,459.68	2,459.68	293.35	24,549.57	1	2,293.68㎡
	344.39	344.39				6	436.98	436.98	247.60	236.50	11	92.59㎡ (5)
	170.11	170.11		149.36	149.36	128	45.76	45.76	42.05	36.09	101	124.35㎡ (27)
	11,914.05	(1,507.23)		(722.52)	(722.52)		11,413.10	(1,312.73)	199.84			500.95㎡
()	(5,425.95 / 17,340.00) × 100 = 31.29%						(9,949.90 / 21,363.00) × 100 = 46.58%					
(20%)	(149.36 / 17,340.00) × 100 = 0.86%						(782.84 / 21,363.00) × 100 = 3.66%					

2. 시설조서

							(m)		()						(m)		()
							149.36	149.36							839.69	24,780.76	
	-		17,340.00	5,425.95			149.36	149.36	169						21,363.00	9,949.90	200
			3,797.74	3,797.74											5,580.29	5,580.29	
	-		2,929.90	2,929.90											2,698.99	2,698.99	
	가	3	867.84	867.84					가	4					2,881.30	2,881.30	
	가-1		(269.65)	(269.65)													
	가-2		(254.47)	(254.47)													
	가-3		(343.72)	(343.72)													
	-	5	277.68	277.68					13		12				468.77	468.77	13
		2	182.25	182.25													
	-1		(121.50)	(121.50)					6								
	-2		(60.75)	(60.75)					1								
			(28.27)	(28.27)					6								
			(254.47)	(254.47)													
			95.43	95.43							1				54.55	0.00	1
										(B3F)					200.70	0.00	1
											3-1				61.55	0.00	1
											3-3				49.50	277.68	
										3					210.52	182.25	
										-1	1				(9.17)	(9.17)	1
										-2					(5.95)	(5.95)	1
										-3	2				(17.58)	(17.58)	1
											3				95.43	254.47	
										-1	1				(13.50)	(13.50)	1
										-2	2				(19.39)	(19.39)	1
										-3	2				(8.70)	(8.70)	2
											3				28.18	0.00	1
											(B3F)				(65.18)	(65.18)	2

			(m³)	(m³)	(m³)	()	(m³)	()							(m³)	()	
		3	(29.82)	(29.82)	(29.82)	17			15	958.42	(m³)	(m³)				74	958.42m²
	-1		(17.80)	(17.80)	(17.80)	3											
	-2		(0.36)	(0.36)	(0.36)	3											
	-3		(11.66)	(11.66)	(11.66)	11											
								8		958.42	958.42						
								-1	1	(90.00)	(90.00)						
								-2		(88.45)	(88.45)						
								-3		(196.82)	(196.82)						
								-4	2	(232.53)	(232.53)						
								-5	4,5	(38.48)	(38.48)						
								-6		(56.76)	(56.76)						
								-7	9	(24.85)	(24.85)						
								-8	3 - 1	(230.53)	(230.53)					3	6
									5	(17.94)	(17.94)					1	
										(12.56)	(12.56)						
()									5	(227.41)	(227.41)						
								-1	4	(88.59)	(88.59)					3	L=98.43m
								-2		(80.47)	(80.47)					28	L=107.30m
								-3		(24.15)	(24.15)					6	L=32.20m
								-4	1	(15.00)	(15.00)					3	L=15.00m
								-5	1	(19.20)	(19.20)					30	
			670.03	670.03	670.03	4											670.03m²
			670.03	670.03	670.03												
	-1		(24.00)	(24.00)	(24.00)												
	-2		(7.50)	(7.50)	(7.50)												

			(m³)	(m³)			()			(m³)	(m³)	(m³)		()					
			166.00	166.00	166.00	1	18	2,459.68	2,459.68	2,459.68	293.35	24,549.57	1	2,293.68m³					
			(16.80)																
			166.00	166.00	166.00	1			117.68	117.68	117.68			1 (48.32m³)					
	()						17		2,342.00	2,342.00	2,342.00	293.35	24,549.57						
	(B1F)						-1	1	(526.84)	(526.84)		(103.48)	(57.21)						
	(B3F)						-2	1	(1,353.69)	(1,353.69)		(59.35)	(42.08)						
	1						-3	1	(154.72)	(154.72)		(7.47)	(7.47)						
	2						-4		(306.75)	(306.75)		(123.05)	(98.61)						
							-4	(B2F - B3F)					(841.99)						
							-5	(B2F)					(304.63)						
							-6	(B2F - B3F)					(159.99)						
							-7	(B2F - B3F)					(1,963.91)						
							-8	(B1F, B3F)					(1,190.38)						
							-9	(B1F)					(684.25)						
							-10	(B1F)					(175.02)						
							-11	(B1F)					(205.85)						
							-12	(B1F)					(144.89)						
							-13	(B1F)					(151.08)						
							-14	(B1F)					(178.93)						
							-15	(B1F - B4F)					(1,510.32)						
							-16	(B1F - B4F)					(5,068.65)	,					
							-17	(B1F - B4F)					(11,764.31)						

[illegible]

			(㎡)	(㎡)	(㎡)			(㎡)		()				(㎡)		()
								(722.52)	(722.52)							
		14	11.914.05 10.406.82	(1.507.23)							11	11.413.10 9.724.08	(1.322.31)		199.84	500.95㎡ (682.74㎡)
	-									-						
	2	2	(202.25)	(202.25)												
	2-1		(94.26)	(94.26)												
	2-2		(107.99)	(107.99)												
	3	4	(157.20)	(157.20)						1	3	270.83	(260.32)		(132.53)	
	3-1		(22.39)	(22.39)												
1	3-2		(25.23)	(25.23)						1-1		(49.85)	(49.85)		(46.14)	
2	3-3		(38.67)	(38.67)						1-2		(55.36)	(55.36)		(20.66)	
	3-4		(70.91)	(70.91)						1-3		(165.62)	(165.62)		(65.73)	
	4	8	(57.76)	(57.76)												
	4-1		(23.76)	(23.76)												
	4-2		(19.20)	(19.20)												
	4-3		(6.16)	(6.16)												
	4-4		(5.79)	(5.79)												
	4-5		(2.85)	(2.85)												
	5		(361.18)	(361.18)												
	6		(671.05)	(671.05)						2		602.14	(602.14)			
	7		(57.79)	(57.79)												
										3		50.40	(50.40)		38.61	
										4		167.34	(105.60)		164.91	
										4-1		(31.66)	(31.66)		(28.70)	
										4-2		(45.60)	(45.60)			
										4-3		(26.74)	(26.74)			
가										5		143.82	(143.82)			
										6		376.29				
										7		141.54	(141.54)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m)	(m)	(㎡)				
					1,015.05	2,698.99				
					561.22	2,072.31				
		3	1	6.0	145.45	832.29		1		
		3	2	4.0	47.00	310.65		3-1	2	
		3	3	8.0	34.90	231.04			2	
		3	4	2.0	29.86	66.53		3-5	3-2	
		3	5	3.2	38.14	76.56			3-4	
		3	6	2.3	49.10	106.85		2		
		3	7	3.0	5.15	15.44		3-1		
		3	8	4.0	61.00	252.01		1	(B1F)	
		3	9	4.0	142.37	166.40		2		
		3	10	1.8	8.25	14.54		3-1		
					453.83	626.68				
		-	1	1.2	86.25	128.09		1	2	
		-	2	1.2	49.90	65.47		2		
		-	3	1.2	21.10	25.35				
		-	4	1.2	12.76	15.47			5	
		-	5	1.2	24.11	29.10		5		
		-	6	1.2	6.33	7.62		5	3-4	
		-	7	1.2	4.20	5.03		3-4	6	
		-	8	1.2	11.00	13.20		6		
		-	9	1.2	94.10	115.40				
		-	10	2.0	9.95	21.90			1	
		-	11	1.5	16.60	24.90		3-1	1	
		-	12	1.5	4.80	7.20			1	
		-	13	1.5	4.80	7.20			1	
		-	14	1.5	4.80	7.20			1	
		-	15	1.5	13.60	20.40		3-1	2	
		-	16	1.5	7.80	11.70			2	

				(m)	(m)	(m ³)				
		-	17	1.5	7.80	11.70			2	
		-	18	1.5	5.80	8.70		3	2	
		-	19	1.5	28.40	42.60		3-1	3	
		-	20	1.5	15.64	22.32		2	4	
		-	21	1.5	6.40	9.60		8	9	
		-	22	1.5	11.94	17.92		3-2	9	
		-	23	1.5	2.10	3.15		10	9	
		-	24	1.5	2.30	3.44		9	3-6	
		-	25	1.5	1.35	2.02			3-6	

조성계획도(변경전)

서소문역사공원

[변경전]



• 조성계획총괄표 (변경전)

구분	표지면적 (㎡)	사업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공식면적 (㎡)	비고
총계	11,340.00	8,425.90	140.30	140.30	180	
기타	3,797.74	3,797.74				
기타	2,829.90	2,829.90				
기타	867.64	867.64				
기타	227.68	227.68			13	
기타	128.82	128.82			17	
기타	670.03	670.03			4	
기타	186.00	186.00			1	
기타	344.39	344.39			6	
기타	110.11	110.11	140.30	140.30	126	
기타	11,340.00	8,425.90	140.30	140.30	180	
기타	11,340.00	8,425.90	140.30	140.30	180	

• 시설분례

구분	면적 (㎡)	비율 (%)	구분	면적 (㎡)	비율 (%)
1-1	3,797.74	33.5	1-2	3,797.74	33.5
2-1	2,829.90	25.0	2-2	2,829.90	25.0
3-1	867.64	7.6	3-2	867.64	7.6
4-1	227.68	2.0	4-2	227.68	2.0
5-1	128.82	1.1	5-2	128.82	1.1
6-1	670.03	5.9	6-2	670.03	5.9
7-1	186.00	1.6	7-2	186.00	1.6
8-1	344.39	3.0	8-2	344.39	3.0
9-1	110.11	1.0	9-2	110.11	1.0
10-1	140.30	1.2	10-2	140.30	1.2
11-1	140.30	1.2	11-2	140.30	1.2
12-1	140.30	1.2	12-2	140.30	1.2
13-1	140.30	1.2	13-2	140.30	1.2
14-1	140.30	1.2	14-2	140.30	1.2
15-1	140.30	1.2	15-2	140.30	1.2
16-1	140.30	1.2	16-2	140.30	1.2
17-1	140.30	1.2	17-2	140.30	1.2
18-1	140.30	1.2	18-2	140.30	1.2
19-1	140.30	1.2	19-2	140.30	1.2
20-1	140.30	1.2	20-2	140.30	1.2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26 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고

소방시설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해당 소방시설업체로 통보하여야 하나 현재 영업소재지 불명 및 대표자 연락두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2. 10. 27.(목) ~ 2022. 11. 10.(목)

2.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				
		[() -]			
		: 10 14, 801			
	30				
	(3 -)				
	o - 2 4 () - 9 2 2 - [1] 2. 3 - - 29233(2022. 10. 13.) “ ”				
		331			02 - 2622 - 1692
	2022 11 10 () 10:00				4

<청문시 유의사항>

-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바.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문회 미참석 또는 의견서 미제출시 예정된 처분인 (행정처분 3차 - 등록취소)가 청문실시일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서식 7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28>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청)		처리기관 (행정청, 청문주제자)		처리기관 (행정청, 청문주제자)		

* 청문주제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제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7.28>

기피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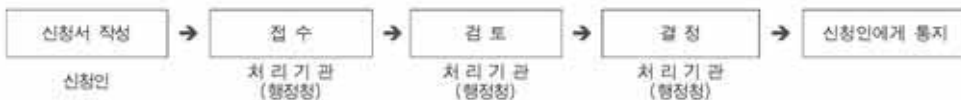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7.28>

청문공개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이유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문의 공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행정청)	→	검토 처리기관 (행정청)	→	결정 처리기관 (행정청)	→	신청인에게 통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 7. 28>

증거조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신청내용	증명할 사실				
증거조사의 방법					

「행정절차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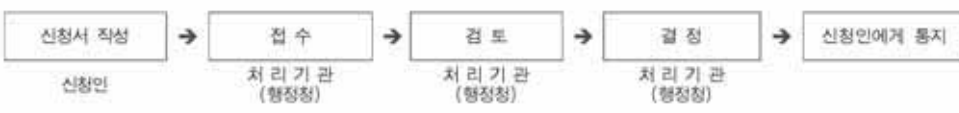
청문주재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7.28>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영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 7. 28>

문서 [열람] [복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① 청문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서의 열람(복사)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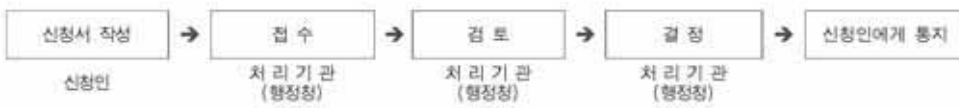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1. 위 청문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사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210mm×297mm[박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27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제117조제1항,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19 18	: 2022-04-05 06:40 : (~) : 98 6865(5 , (:19.6m, :2.9m), :)	: 2022. 05. 25. : 30 : 2022.07.31. : 2022. 08. 09.
*	321 27	: 2022-04-07 04:53 : (~) : 99 4458(5 , (:2.79m, :0.29m), :)	: 2022. 05. 25. : 30 : 2022.07.31. : 2022. 08. 09.
*	326	: 2022-04-26 05:10 : (~) : 99 6859(6 , (:19.4m, :2.7m), :H)	: 2022. 05. 25. : 30 : 2022.07.31. : 2022. 08. 09.

*	434	: 2022-04-27 05:28 : (~) : 98 7715(5 , (:2.79m, :0.29m), :)	: 2022. 05. 25. : 30 : 2022.07.31. : 2022. 08. 09.
*	298 15	: 2022-06-14 17:31 : (~) : 06 6898(4 , (:11.35t, :1.35t), :)	: 2022. 07. 25. : 50 : 2022.09.30. : 2022. 10. 05.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2. 11. 30.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관허사업,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02-2210-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3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	
1	203709	22.10.17.	110111-4313922	가 1 119, 804 (가)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31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			
1		202775	110111-4636506	197-2, 6 ()	22.10.17.	
		201539	110111-0945480	55 31()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35호
도시관리계획[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0호(2017.3.30.) 및 종로구 고시 제2019-136호(2019.11.7.)로 (변경)결정 고시된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구 역 명 :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구역
-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	()
1, 2-1, 2-2, 2-3 1, 2-1, 2-2, 3, 4, 가 2, 3-1, 3-2	2		,

※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⑤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⑥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 ⑦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2133-4652)
종로구 건축과(☎2148-2813)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도서로 갈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43호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70	: 2022-08-27 05:45 : (~) : 98 1425(6 , (:18.3m, :1.6m), :H)	: 2022. 09. 20. : 30
*	187	: 2022-08-03 06:43 : (~) : 15 6371(5 , (:2.75m, :0.25m), :)	: 2022. 09. 20. : 30
*	66 20	: 2022-08-12 15:53 : (~) : 99 1996(5 , (:2.62m, :0.12m), :)	: 2022. 09. 20. : 30
*	가 380	: 2022-08-13 06:37 : (~) : 80 8560(5 , (:2.74m, :0.24m), :)	: 2022. 09. 20. : 30
*	394-10	: 2022-08-15 06:51 : (~) : 93 4632(5 , (:11.25t, :1.25t), :)	: 2022. 09. 20. : 5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가. 과태료 납부기한 : 2022. 11. 30.

나.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며, 또한 납부 전용(가상)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해당 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이의제기 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02-2210-1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47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23)	1		()
	2		()
	3		()
	4		()
	5		()
	6		()
	7	가	(가)
	8		(가)
	9		(가 가)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18)	1	2023	()
	2	()	()
	3		()
	4		()
	5		()
	6		가 ()
	7		()

	8		()
	9	2 ()	()
	10		()
	11		()
	12		()
	13	(1)	가 ()
	14	R&D	(AI)
	15		()
	16		()
	17		()
	18		()
(4)	1	(,) () ()	()
	2	()	()
	3	() ()	()
	4	2030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4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9.(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006060144	(12 29 6-69)		2020. 2. 29. 15	16	1,278,980	2022. 10. 18.
			()			
()	(12 29 6-69)	*	780407-1*****	12 29	1,278,980	2022. 11. 11. -

3.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추성진 주무관 (☎ 02-3146-211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51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7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수)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22년 11월 30일(수)이후에는 위반시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49 8118	*		2022-09-01 13:18	61-1 1	
2	90 3593	*		2022-09-01 11:59	() 4	
3	82 4360	*		2022-09-01 16:13	1	
4	34 6617	*		2022-09-10 18:35	IC 1	
5	85 9437	*		2022-09-11 13:19	가 99-36 2	

				()		
6	36 9417	PARK HY*NMIN		2022-09-15 12:34	713-5 2	
7	80 5423	*		2022-09-18 15:42	() 2	
8	89 2949	*		2022-09-18 11:24	1	
9	98 5095	*		2022-09-18 06:07	1	
10	07 2723	*		2022-09-24 09:14	IC 1	
11	95 9779	*		2022-09-24 05:02	() 2	
12	54 4924	*		2022-09-27 10:52	IC 4	
13	89 0511	*		2022-09-29 15:28	3	
14	89 5397	*		2022-09-29 17:35	IC 4	
15	92 7212	*		2022-09-29 15:43	가 4	
16	17 6467	*		2022-09-30 21:33	IC 4	
17	49 8029	*		2022-09-30 23:34	() 2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2년 11월 30일(수)

나. 본 경고조치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건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 (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52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146건)

				()			
							()
1	01 1669	* 1 (*)		2022-09-01 18:15	728-6 2		200,000 (160,000)
2	35 7856	*		2022-09-01 22:42	() 2	"	"
3	40 8541	*		2022-09-01 14:20	IC 3	"	"
4	62 5683	*		2022-09-03 08:45	741 1	"	"
5	02 1436	*		2022-09-04 14:47	2	"	"
6	03 2452	*		2022-09-04 18:28	IC 3	"	"
7	07 6176	*		2022-09-04 10:56	(IC) 4	"	"

				()			
							()
8	90 2495	*		2022-09-05 10:48	() 2	"	"
9	01 1175	*		2022-09-07 22:23	() 1	"	"
10	05 7994	*		2022-09-08 21:08	() 1	"	"
11	21 1956	*		2022-09-08 12:13	2	"	"
12	52 9622	*()		2022-09-08 16:52	() 3	"	"
13	52 1029	*		2022-09-08 11:48	2	"	"
14	52 6130	*		2022-09-08 23:45	() 3	"	"
15	86 7240	*		2022-09-08 20:53	2	"	"
16	05 3192	*		2022-09-09 13:32	() 2	"	"
17	05 5538	*		2022-09-09 09:42	() 1	"	"
18	75 8234	*		2022-09-09 16:56	() 3	"	"
19	80 8400	* 가		2022-09-09 12:28	2	"	"
20	80 3037	*		2022-09-09 19:21	139-7 2	"	"
21	92 9785	*		2022-09-09 10:34	2	"	"
22	94 1048	*		2022-09-09 10:55	() 2	"	"
23	01 7074	*		2022-09-10 07:26	() 2	"	"
24	01 1055	*		2022-09-10 18:09	() 1	"	"

				()			
							()
25	02 5238	*		2022-09-10 07:42	2	"	"
26	02 2593	*		2022-09-10 11:19	4	"	"
27	04 3159	*		2022-09-10 12:36	1	"	"
28	22 4697	*		2022-09-10 19:58	() 3	"	"
29	31 1727	() *		2022-09-10 12:08	() 3	"	"
30	39 6310	*		2022-09-10 07:55	2	"	"
31	56 8712	* ()		2022-09-10 20:32	1	"	"
32	78 5034	JI Y*NHAI		2022-09-10 08:55	2 ()	"	"
33	02 5035	*		2022-09-11 21:16	IC 3	"	"
34	02 3664	*		2022-09-11 11:22	IC 2	"	"
35	10 9142	*		2022-09-11 09:04	IC 3	"	"
36	11 3764	*		2022-09-11 16:25	2	"	"
37	52 2197	*		2022-09-11 23:08	2	"	"
38	54 4889	Q*AN CHANGYI		2022-09-11 12:59	2	"	"
39	58 4264	*		2022-09-11 17:43	() 1	"	"
40	70 3207	*		2022-09-11 18:38	() 3	"	"
41	76 1227	*		2022-09-11 13:33	() 5	"	"

				()			
							()
42	48 9207	*		2022-09-11 21:28	IC 3	"	"
43	37 6064	*		2022-09-12 14:18	() 4	"	"
44	43 2283	* 1 (*)		2022-09-12 17:35	2	"	"
45	43 6019	*		2022-09-12 11:37	IC () 2	"	"
46	82 8740	*		2022-09-12 07:29	143-22(1)	"	"
47	01 4391	* -		2022-09-14 19:52	IC 4	"	"
48	01 8079	*		2022-09-15 17:18	() 1	"	"
49	04 9498	*		2022-09-15 13:07	() 2	"	"
50	05 6840	*		2022-09-15 19:51	() 2	"	"
51	80 7857	*		2022-09-15 13:10	1	"	"
52	04 2837	*		2022-09-16 16:51	2	"	"
53	19 5549	CH*N HONGYANG		2022-09-16 18:40	IC 5	"	"
54	80 4856	*		2022-09-16 19:10	6-3(1)	"	"
55	97 5631	*		2022-09-16 10:57	4	"	"
56	04 8911	*		2022-09-17 07:53	() 1	"	"
57	73 6962	*		2022-09-17 17:56	57 () 2	"	"

				()			
							()
58	80 9656	R*HIMI MOGHADDAM DOURAKI SEYED ALI		2022-09-17 14:29	() 1	"	"
59	94 3784	*		2022-09-17 16:23	598-67 3	"	"
60	02 6867	*		2022-09-18 21:41	6-3(2)	"	"
61	02 5638	*		2022-09-18 14:54	() 3	"	"
62	02 5841	*		2022-09-18 09:15	() 1	"	"
63	06 1848	*		2022-09-18 17:15	IC() 1	"	"
64	19 2279	*		2022-09-18 08:13	48-5(1)	"	"
65	19 7333	*		2022-09-18 00:19	() 1	"	"
66	35 7550	*		2022-09-18 07:15	() 3	"	"
67	49 4555	*		2022-09-18 17:04	() 2	"	"
68	10 2144	*		2022-09-19 06:23	IC() 1	"	"
69	86 7583	*		2022-09-19 11:22	1251-394(2)	"	"
70	09 5517	*		2022-09-20 12:31	1	"	"
71	55 5879	*		2022-09-20 05:55	2 IC	"	"
72	90 8026	*		2022-09-20 10:18	2	"	"

				()			
							()
73	96 8716	*		2022-09-20 18:49	713-5 2	"	"
74	39 2824	*		2022-09-21 10:02	2	"	"
75	46 2003	*		2022-09-21 21:18	IC 3	"	"
76	16 7970	*		2022-09-22 15:14	IC 4	"	"
77	20 2548	*		2022-09-22 22:13	() 2	"	"
78	82 8074	*		2022-09-22 22:40	() 3	"	"
79	38 5804	*		2022-09-23 14:24	2	"	"
80	01 1677	*		2022-09-24 08:57	() 1	"	"
81	02 8284	*		2022-09-24 21:22	() 2	"	"
82	03 5225	* -		2022-09-24 12:05	() 1	"	"
83	32 8549	L*PEZ IAN BERNARD		2022-09-24 16:39	462-1 2	"	"
84	33 3954	*		2022-09-24 15:24	() 4	"	"
85	387 3873	*		2022-09-24 02:45	2 IC	"	"
86	61 7153	*		2022-09-24 06:11	1	"	"
87	01 9930	*		2022-09-25 15:28	DMC () 2	"	"
88	09 5675	*		2022-09-25 19:51	4	"	"
89	09 9524	*		2022-09-25 22:19	() 3	"	"

				()			
							()
90	09 4838	*		2022-09-25 10:38	172-7 2	"	"
91	15 8880	*		2022-09-25 12:19	142-2 2	"	"
92	21 2217	*		2022-09-25 18:19	2	"	"
93	26 7138	*		2022-09-25 17:44	() 3	"	"
94	42 2320	*		2022-09-25 05:19	() 1	"	"
95	49 5468	*		2022-09-25 20:10	1	"	"
96	80 3727	*		2022-09-25 17:31	IC() 2	"	"
97	38 5457	- *		2022-09-25 12:25	3	"	"
98	53 3585	*		2022-09-25 07:53	IC 3	"	"
99	54 2742	*		2022-09-25 18:35	3	"	"
100	03 6592	*		2022-09-26 18:27	1	"	"
101	37 7007	*		2022-09-26 03:17	1 ()	"	"
102	70 3556	PARK*RNWIWAT PANJACHOK		2022-09-26 22:26	() 1	"	"
103	86 7260	*		2022-09-26 07:01	IC() 1	"	"
104	01 1489	*		2022-09-27 13:44	IC 2	"	"
105	07 3044	*		2022-09-27 12:34	DMC () 1	"	"
106	73 8166	WA*G LEI		2022-09-27 12:14	2	"	"

				()			
							()
107	89 7388	*		2022-09-27 15:30	2	"	"
108	45 1137	*		2022-09-27 04:17	1	"	"
109	57 5958	*		2022-09-27 09:40	309 1	"	"
110	07 5844	*		2022-09-28 05:44	() 4	"	"
111	16 2132	*		2022-09-28 21:22	1	"	"
112	30 3274	*		2022-09-28 21:23	IC 3	"	"
113	37 7680	*		2022-09-28 21:08	() 4	"	"
114	46 5428	* 地		2022-09-28 21:27	() 2	"	"
115	72 9661	CUI G*ANXI		2022-09-28 05:19	139-7 2	"	"
116	92 2799	*		2022-09-28 13:27	48-5(2)	"	"
117	01 7564	*		2022-09-29 19:21	() 1	"	"
118	06 4705	*		2022-09-29 10:47	가 99-36 2	"	"
119	07 7359	*		2022-09-29 22:51	IC () 1	"	"
120	16 3569	*		2022-09-29 11:09	() 2	"	"
121	36 5981	*		2022-09-29 02:42	() 2	"	"
122	46 7813	*		2022-09-29 15:56	() 2	"	"

				()			
							()
123	70 3068	- *		2022-09-29 07:12	IC 3	"	"
124	80 7939	*		2022-09-29 11:17	() 3	"	"
125	80 4269	- *		2022-09-29 10:56	178-8 1	"	"
126	80 4565	*		2022-09-29 17:23	3	"	"
127	91 5758	*		2022-09-29 16:55	() 1	"	"
128	01 3396	*		2022-09-30 15:53	() 3	"	"
129	01 9790	*		2022-09-30 22:46	1	"	"
130	02 6145	*		2022-09-30 19:22	2 () 3	"	"
131	05 8927	*		2022-09-30 21:04	() 1	"	"
132	08 4000	*		2022-09-30 16:51	() 2	"	"
133	14 6708	*		2022-09-30 15:56	() 1	"	"
134	19 1364	*		2022-09-30 18:01	309 1	"	"
135	230716510	*		2022-09-30 10:13	3	"	"
136	25 8223	*		2022-09-30 11:34	IC() 1	"	"
137	36 3473	*		2022-09-30 17:52	() 1	"	"
138	47 8342	* ()		2022-09-30 09:25	2 () 2	"	"
139	49 6832	*		2022-09-30 19:33	() 3	"	"

				()			
							()
140	50 5089	*		2022-09-30 09:17	() 1	"	"
141	80 2554	*		2022-09-30 10:18	() 1	"	"
142	80 8510	*		2022-09-30 22:21	4	"	"
143	89 8402	*		2022-09-30 16:34	2	"	"
144	91 5172	*		2022-09-30 17:54	() 2	"	"
145	92 4270	*		2022-09-30 12:02	3	"	"
146	93 9415	*		2022-09-30 15:05	() 4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2년 11월 30일(수)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담당 : 장재희(Tel 02-2133-3664)
김석근(Tel 02-2133-3659)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 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핸드폰번호 :(010-9615-3659)로 사진파일을 문자 접수하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5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및 본점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10.(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006180664	1가 15-1, 401 ()		2021. 6.30. 7	8	306,200	2022. 9. 23. ~ 2022. 10. 05. 2022. 10. 06.- ()	1152102146282 : :	
()	1가 15-1, 401 ()	*	630907-2*****		82-9 ()		306,200	2022. 11. 14. ~

007200002	6-13(7)		2021. 4. 30. 8	9	487,770	2022. 9. 23. ~ 2022. 10. 05. 2022. 10. 06.~ ()	1152102146275 · : · :	
()	6-13(7)	*	750906-2*****		65 10()	487,770	2022. 11. 14. ~	

000106996	4 21-23 ()		2021. 7. 31. 6	7	712,270	2022. 9. 23. ~ 2022. 10. 05. 2022. 10. 06.~ ()	1152102146285 · : · :	
()	4 21-23 ()	*	570119-2*****		4 21-23 ()	712,270	2022. 11. 14. ~	

000093531	19, 102 ()		2021. 9. 30. 6	7	672,360	2022. 9. 23. ~ 2022. 10. 05. 2022. 10. 06.~ ()	1152102146293 · : · :	
()	19, 102 ()	*	630715-1*****		27가 16 ()	672,360	2022. 11. 14. ~	

037404605	1304 (29가 19,)		2019. 8. 31. 18	19	361,230	2022. 9. 23. ~ 2022. 10. 05. 2022. 10. 06. ~ ()	152102146273	
()	1304 (29가 19,)	*	630813-1*****		5 73 ()		361,230	2022. 11. 14. ~

000198909	(5 13-2)		2020. 10. 31. 11	12	26,640	2022. 6. 21. ~ 2022. 06. 30. 2022. 07. 01. ~ ()	1152102139710	
()	(5 13-2)	*	740525-2*****		1 12 (22-48)		26,640	2022. 11. 14. ~

001758085	(23 10-3)		2019. 10. 31. 13	14	463,540	2022. 9. 23. ~ 2022. 09. 30. 2022. 10. 04. ~ ()	1152102146294	
()	(23 10-3 217-134 1)	*	680706-2*****		23 10-3 ()		463,540	2022. 11. 14. ~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2. 11. 11.)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신용현 주무관 (☎ 02-3146-210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58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2, **4 ()	: 2022-06-10 00:30 : : 0.28	: 30
	**2 **.-1, **9 ()	: 2022-06-10 00:30 : : 0.28	: 30
	***5-.*4, **2 **6 ()	: 2022-05-07 01:40 : : 0.28	: 30
	***6 *8-.*()	: 2022-05-07 02:45 : : 0.28	: 30

	**1 () * *8,	: 2022-06-21 22:40 : : 0.28	: 30
	**2 ** -1, **9 ()	: 2022-06-28 00:40 : : 0.28	: 30
	**1 () * *8,	: 2022-06-28 23:50 : : 0.28	: 30
	*6-*2, **5 **4 () *1	: 2022-05-13 06:56 : : 0.12	: 30
	**2 () **1, **1	: 2022-05-30 04:05 : : 2.5	: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 **6 () *9	: 2022-08-01 03:05 : : 0.28	: 30
	* *-* , **2 ()	: 2022-08-12 20:25 : : 0.28	: 30
	*0, **1 **9 () *3	: 2022-08-17 06:20 : : 0.28	: 30
	* *4-*()	: 2022-08-20 06:40 : : 0.28	: 30

	*8 *0, * **7 ()	: 2022-08-22 21:10 : : 0.28	: 30
	*1. *4, **2 ***2 ()	: 2022-08-26 14:00 : : 0.49	: 5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2.11.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6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277 1*()	: 2022-06-07 11:02 : : (:17.1m, :0.4m, 99 860*)	: 30 : 2022-07-27 : 2022-09-30
CUI JUN	8-12 40* () 1273	: 2022-06-15 14:40 : : (:4.13m, :0.13m, 84 236*)	: 50 : 2022-07-27 : 2022-09-30
	20-58(가) 39	: 2022-06-15 15:21 : 17가 251 : (:36.7t, :4.7t, 06 573*)	: 50 : 2022-07-27 : 2022-09-30
	20* () 119-3 105	: 2022-07-01 14:04 : 1151 : (:4.23m, :0.23m, 83 059*)	: 30 : 2022-07-27 : 2022-09-30

	B0*(, 19 17)	: 2022-07-08 15:42 : : (:4.19m, :0.19m, 81 316*)	: 30 : 2022-07-27 : 2022-09-3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22. 11.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0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6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2.10.27 ~ 2022.11.10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006020982	가 14 23(가 350-9)		2020. 6 8	8	1,265,570	
			()			
	가 350-9		920411-1***** (1105002419 707)	가 14 23(가)	1,265,570	2022.11.11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02-3146-35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64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	** , *** **** (, 1)	: 2022-08-31 05:37 : : 0.28m	: 2022. 9. 26. : 30 : 2022. 11. 30.
*	가 8 ** , *** **** (,)	: 2022-09-01 15:25 : : 77 2	: 2022. 9. 26. : 50 : 2022. 11.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	*** (, 245 *** , *** 1)	: 2022-05-20 08:45 : : 0.24m	: 2022. 7. 28. : 30 : 2022. 9. 30.

*	** ()	: 2022-05-25 12:15 : : 0.18m	: 2022. 7. 28. : 30 : 2022. 9. 30.
*	1 *** ()	: 2022-06-03 10:00 : : 0.28m	: 2022. 7. 28. : 15 : 2022. 9. 30.
*	74 **, *** (, II)	: 2022-06-14 11:04 : IC, 가 가 : 6.6t	: 2022. 7. 28. : 80 : 2022. 9. 30.
*	** ()	: 2022-07-04 09:59 : 가 : 77 2	: 2022. 7. 28. : 50 : 2022. 9. 30.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22. 11.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7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22.10.27 ~ 2022.11.10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003761751	가 20 26, 1 3 (가 5-204)		2019. 9 11	11	496,420	
			()			
	가 20 26, 1 3		710517-1***** (110500155304 8)	26, 1 3 23(가)	496,420	2022.11.11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세영(☎02-3146-35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78호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 공고

2022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이수증 발급 대상자

- 제8호 삼해주(약주) (1명) : 김궁년
- 제13호 매듭장(4명) : 유혜정, 우정민, 고현선, 아베 타마에
- 제25호 판소리고법(6명) : 남정태, 이영채, 윤춘식, 최성목, 송우주, 김소정
- 제26호 소목장(창호) (11명) : 전희경, 임준혁, 홍도경, 허찬욱, 성백현, 김예준, 장영우, 김석진, 우재원, 오원진, 이응규
- 제28호 악기장(1명) : 이성규
- 제36호 입사장(1명) : 송은선
- 제38호 재담소리(2명) : 조연주, 유현지
- 제39호 아쟁산조(2명) : 유다현, 서준웅
- 제41호 송서(3명) : 김향순, 박우연, 이수현
- 제44호 삼현육각(4명) : (해금)고주희, 송영선, 김수진, (피리)이승민
- 제45호 한량무(8명) : 정윤성, 변창일, 정현도, 장여진, 손승주, 하나경, 손채령, 박해리
- 제46호 살풀이춤(4명) : 오정은, 강효정, 이수진, 서성원

☐ 이수증 발급일 : 2022. 10. 27.

☐ 안내사항

- 이수증은 이수심사 결과 공고 후 30일 이내 이수심사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 또는 보존회 사무실로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직접 수령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이수심사 담당 (02-2133-2616, 정빛샘 주무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84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유)산들농산 등 677명
4. 공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10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22. 10. 27 ~ 2022. 11. 10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 (<http://cartax.seoul.go.kr>) 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2 팩스번호 : 02-2133-4904
 -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치(<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명단

1	15 2475	()	2022-09-02 17:46				50,000
2	35 1898	()	2022-09-22 08:24		2 12		50,000
3	35 1898	()	2022-09-23 08:24		2 12		50,000
4	35 1898	()	2022-09-21 08:29		2 12		50,000
5	84 7838	()	2022-09-13 18:28				50,000
6	84 7838	()	2022-09-01 17:21				50,000
7	122 8599	()	2022-08-22 17:20		YMCA		50,000
8	140 8438	()	2022-08-22 17:46		111		50,000
9	140 8438	()	2022-08-22 17:25		111		50,000
10	54 0357	()	2022-09-20 17:53		IC		50,000
11	54 0357	()	2022-09-20 17:50		IC		50,000
12	81 6133	()	2022-09-23 07:32		()		50,000
13	59 2968	()	2022-09-23 18:22		1		50,000
14	335 5456	()	2022-09-19 14:32		IC		50,000
15	149 4146	()	2022-09-02 18:13		()		50,000
16	166 1062	()	2022-09-15 14:30				50,000
17	166 1062	()	2022-09-13 16:33				50,000
18	61 6704	()	2022-09-21 07:32				50,000
19	95 4303	()	2022-09-21 09:27		1		50,000
20	16 2281	() 가	2022-09-22 17:22				50,000
21	56 7738	() ENG	2022-09-20 20:27		1 ~ 2		50,000
22	50 7561	()	2022-09-02 19:18				50,000
23	01 1905	()	2022-08-25 14:41				50,000
24	19 1191	()	2022-09-23 09:17		1		50,000
25	42 5822	()	2022-08-24 19:41		1		50,000
26	149 4298	()	2022-08-25 09:35		1 ~ 2		50,000
27	149 4298	()	2022-08-23 09:44		SK		50,000

28	58 7256	()	2022-09-22 17:30		106		50,000
29	34 5736	()	2022-09-19 15:45				50,000
30	19 8391	()	2022-09-09 14:55				50,000
31	58 9555	()	2022-09-19 10:54				50,000
32	160 2492	()	2022-09-23 09:49		()		50,000
33	94 0963	()	2022-09-20 08:31		()		50,000
34	49 2244	()	2022-09-22 18:57		1		50,000
35	45 5994	()	2022-09-16 20:39		1		50,000
36	126 1010	()	2022-09-07 19:51		()		50,000
37	63 9690	()	2022-09-06 13:11				50,000
38	128 1216	()	2022-09-21 18:58		IC		50,000
39	128 1216	()	2022-09-21 19:00		IC		50,000
40	85 5256	()	2022-09-22 07:54		154		50,000
41	63 6872	()	2022-08-30 12:02		IC		50,000
42	233 7257	()	2022-09-19 07:44		~		50,000
43	145 5575	()	2022-09-13 19:54				50,000
44	148 9033	()	2022-09-08 21:04		IC		50,000
45	148 9033	()	2022-09-08 21:06		IC		50,000
46	96 6289	()	2022-09-21 20:40		1가		50,000
47	157 2895	()	2022-09-14 15:02		IC		50,000
48	78 3807	()	2022-09-20 11:57				60,000
49	160 7869	()	2022-08-26 09:33		1 ~ 2		50,000
50	813 2974	()	2022-09-19 17:57		10		50,000
51	128 2113	()	2022-09-15 17:24		1		50,000
52	25 7423	()	2022-08-29 18:56				50,000
53	41 8235		2022-09-05 08:56		1		50,000
54	75 7155		2022-09-05 09:12				60,000

55	160 3919		2022-09-06 11:13				50,000
56	128 9218		2022-09-05 21:44		1가		50,000
57	344 2102		2022-09-22 07:37		1		50,000
58	16 3400		2022-09-08 20:25				50,000
59	169 8065		2022-09-15 08:31		12		50,000
60	57 0454		2022-09-07 09:38		1		50,000
61	61 2661		2022-07-23 04:03				50,000
62	91 7192		2022-09-20 20:31		()		50,000
63	46 0826	가 ()	2022-09-08 21:04		IC		50,000
64	46 0826	가 ()	2022-09-08 21:03		IC		50,000
65	170 4900		2022-09-03 12:37		IC		50,000
66	20 9070		2022-09-22 16:28		IC		50,000
67	20 9070		2022-09-22 16:26		IC		50,000
68	20 9070		2022-09-22 16:27		IC		50,000
69	58 3110		2022-09-19 14:31		IC		50,000
70	28 3592		2022-09-21 17:19		()		50,000
71	104 2914		2022-09-05 10:22		IC		50,000
72	87 0318		2022-09-20 19:12				50,000
73	160 9896		2022-08-31 19:49		IC		50,000
74	80 0888	()	2022-09-23 08:24		()		50,000
75	10 7874	()	2022-09-05 09:39				50,000
76	172 1636		2022-08-31 12:36		SK		50,000
77	157 1773	()	2022-09-07 12:55		111		50,000
78	04 0336		2022-09-12 00:21		IC		50,000
79	47 7956		2022-09-21 17:12		1		50,000

80	56 9891		2022-09-13 00:05		IC		50,000
81	46 0946		2022-08-30 17:21				50,000
82	61 2947		2022-09-23 18:58		1		50,000
83	38 2702		2022-09-22 17:46				50,000
84	28 8025		2022-09-20 20:42		IC		50,000
85	342 6303		2022-09-20 19:15		YMCA		50,000
86	567 5065		2022-09-23 19:08				50,000
87	101 6186		2022-09-07 12:40		111		50,000
88	89 9460		2022-09-22 08:26		()		50,000
89	35 3174		2022-09-23 20:16		2 12		50,000
90	153 9628		2022-09-21 13:27				50,000
91	283 9965		2022-09-21 18:36				50,000
92	283 9965		2022-09-22 08:15				50,000
93	32 1265		2022-09-21 19:51		1 ~ 2		50,000
94	248 3019		2022-09-23 18:11		2 12		50,000
95	07 3317		2022-09-22 17:03				50,000
96	577 0322		2022-09-19 07:44		~		50,000
97	84 6240		2022-09-19 08:24		()		50,000
98	331 4254		2022-09-21 17:12		IC		50,000
99	137 1550		2022-09-23 09:21		17가		50,000
100	05 0880		2022-09-05 07:52		SK		50,000
101	101 7996		2022-09-23 18:27		1		50,000
102	35 8348		2022-09-22 20:03				50,000
103	242 1961		2022-09-23 19:21		()		50,000
104	44 4181		2022-09-01 15:37		111		50,000
105	145 1445	()	2022-09-07 20:49		1 107		50,000

106	166 6173		2022-09-08 17:12		()		50,000
107	20 0770	()	2022-09-13 19:24		()		50,000
108	128 8317		2022-09-23 15:18				50,000
109	06 0643		2022-08-30 18:27				50,000
110	16 6543	가 ()	2022-08-26 16:11				50,000
111	101 3862		2022-09-15 14:38				50,000
112	467 0343		2022-09-23 17:52				50,000
113	104 3200	()	2022-09-12 23:26		IC		50,000
114	14 2256	A**	2022-09-20 19:42				50,000
115	54 7556	A**	2022-09-22 20:56		SK		50,000
116	49 8272	A**	2022-09-23 18:16		IC		50,000
117	49 8272	A**	2022-09-23 18:15		IC		50,000
118	16 1866	D**	2022-09-22 20:42		()		50,000
119	91 1872	F**	2022-09-19 17:25		IC		50,000
120	24 9838	G**	2022-09-21 09:04		SK		50,000
121	101 3010	H**	2022-09-11 12:00		IC		50,000
122	101 3010	H**	2022-09-11 12:01		IC		50,000
123	103 3777	H**	2022-09-22 08:03		IC		50,000
124	30 8727	H**	2022-09-23 17:17		IC		50,000
125	34 4207	I**	2022-09-21 20:11		IC		50,000
126	3397 5792	J**	2022-09-20 08:25		7		50,000
127	3397 5792	J**	2022-09-19 08:18		7		50,000
128	3397 5792	J**	2022-09-21 08:29		7		50,000
129	3397 5792	J**	2022-09-23 08:20		7		50,000
130	13 8246	J**	2022-09-23 15:37		IC		50,000
131	172 8685	J**	2022-09-23 09:09				50,000
132	330 3737	J**	2022-09-06 18:37				50,000
133	190 7732	J**	2022-09-16 19:14		YMCA		50,000

134	59 9065	J**	2022-09-19 01:12		SK		50,000
135	19 5139	J**	2022-09-01 12:33				50,000
136	13 0275	K**	2022-09-20 19:42				50,000
137	69 0733	K**	2022-08-11 18:20		IC~		50,000
138	27 2970	L**	2022-09-19 17:25		IC		50,000
139	27 2970	L**	2022-09-19 17:24		IC		50,000
140	61 7547	L**	2022-09-24 14:03		IC		50,000
141	61 7547	L**	2022-09-24 14:02		IC		50,000
142	61 7547	L**	2022-09-24 14:01		IC		50,000
143	20 7698	M**	2022-09-20 09:19		IC		50,000
144	248 1376	M**	2022-09-22 18:52		IC		50,000
145	256 7878	M**	2022-09-25 07:36		IC		50,000
146	53 3576	M**	2022-09-23 08:26				50,000
147	53 3576	M**	2022-09-22 13:44				50,000
148	243 7288	N**	2022-09-22 19:26				50,000
149	47 9051	P**	2022-09-24 17:23		IC		50,000
150	207 9698	P**	2022-09-20 16:22				50,000
151	05 9687	P**	2022-09-19 10:13		IC		50,000
152	178 6989	P**	2022-09-17 17:30		~		50,000
153	66 7957	R**	2022-09-24 16:40		IC		50,000
154	66 7957	R**	2022-09-24 16:41		IC		50,000
155	28 4320	S**	2022-09-25 17:54				50,000
156	43 5879	S**	2022-09-21 19:50		IC		50,000
157	43 5879	S**	2022-09-21 19:51		IC		50,000
158	03 2364	T**	2022-09-25 12:40		IC		50,000
159	33 5783	W**	2022-09-21 08:02		IC		50,000
160	19 1035	W**	2022-09-20 07:48		()		50,000
161	397 8888	W**	2022-09-20 19:22		1		50,000

162	09 0341	Y**	2022-09-24 13:21		IC		50,000
163	246 1758	Z**	2022-09-21 06:17				50,000
164	103 6065	Z**	2022-09-20 12:27		IC		50,000
165	103 6065	Z**	2022-09-20 12:28		IC		50,000
166	130 4868	Z**	2022-09-19 07:20				50,000
167	63 9084	Z**	2022-09-17 09:25				50,000
168	0242	**	2022-09-02 13:00		~ ic		40,000
169	32 6465	**	2022-09-22 09:39		1		50,000
170	67 6575	**	2022-09-20 19:38		1		50,000
171	53 6334	**	2022-09-21 18:47		10		50,000
172	99 0331	**	2022-09-23 18:21		()		60,000
173	34 6670	**	2022-09-23 14:23				50,000
174	32 3222	**	2022-09-21 20:32		2 12		50,000
175	160 9027	**	2022-09-07 13:04		YMCA		50,000
176	05 0836	**	2022-09-12 22:45		IC		50,000
177	05 0836	**	2022-09-12 22:43		IC		50,000
178	36 7926	**	2022-09-12 21:03		IC		50,000
179	57 1289	**	2022-09-06 19:05				50,000
180	31 8247	**	2022-09-20 17:55		1		50,000
181	20 9654	**	2022-09-08 18:54				50,000
182	386 2514	**	2022-09-19 13:11				50,000
183	110 4027	**	2022-09-23 19:11		()		50,000
184	38 0969	**	2022-09-21 19:28		2 12		50,000
185	83 4545	**	2022-09-22 14:16				50,000
186	54 3016	**	2022-09-19 17:48		()		50,000
187	26 0970	**	2022-09-13 20:12		1		50,000
188	34 9681	**	2022-09-23 17:52		1 ~ 2		50,000
189	15 0884	**	2022-09-06 15:33				50,000

190	163 9790	**	2022-09-20 20:43				50,000
191	13 7024	**	2022-09-20 08:46				50,000
192	85 4426	**	2022-09-22 08:59		1 ~ 2		50,000
193	32 2846	**	2022-09-21 19:39		SK		50,000
194	52 9246	**	2022-09-19 08:08		~		50,000
195	106 3252	**	2022-09-12 22:43		IC		50,000
196	37 4068	**	2022-09-20 07:47		()		50,000
197	57 1207	**	2022-09-19 19:48		SK		50,000
198	38 0454	**	2022-09-24 10:57		IC		50,000
199	01 8348	**	2022-09-19 09:49		1 107		50,000
200	54 3372	**	2022-09-21 12:14				50,000
201	112 6169	**	2022-09-22 17:43				50,000
202	14 4010	**	2022-09-06 18:04				50,000
203	73 8746	**	2022-09-05 17:39				60,000
204	38 2788	**	2022-09-09 22:58		IC		50,000
205	38 2788	**	2022-09-09 22:57		IC		50,000
206	26 0561	**	2022-09-19 20:41		()		50,000
207	64 2856	**	2022-09-23 09:41				50,000
208	43 9453	**	2022-09-20 17:52		1		50,000
209	353 6896	**	2022-09-21 17:04				50,000
210	22 1769	**	2022-09-23 12:01				50,000
211	380 9220	**	2022-09-19 08:21		1		50,000
212	376 5722	**	2022-09-20 19:28				50,000
213	146 6642	**	2022-08-23 18:11		1		50,000
214	27 0477	**	2022-09-21 19:53		SK		50,000
215	09 6523	**	2022-09-22 16:03		YMCA		50,000
216	36 7998	**	2022-09-20 09:48		1 ~ 2		50,000
217	3370121	**	2022-09-19 11:31		IC		50,000

218	3370121	**	2022-09-19 11:33		IC		50,000
219	31 7273	**	2022-09-23 18:01		1		50,000
220	02 0547	**	2022-07-22 17:51		SK		50,000
221	31 7016	**	2022-09-22 09:55		~		50,000
222	398 3110	**	2022-09-20 07:36		1 ~ 2		50,000
223	34 5939	**	2022-09-25 00:49				50,000
224	19 8173	**	2022-09-23 17:58				50,000
225	50 3846	**	2022-09-23 17:32		()		50,000
226	54 8319	**	2022-09-21 20:26		()		50,000
227	10 9501	**	2022-09-16 19:10				50,000
228	128 7965	**	2022-09-11 23:36		IC		50,000
229	128 7965	**	2022-09-11 23:37		IC		50,000
230	97 4622	**	2022-09-23 15:46		YMCA		50,000
231	46 1216	**	2022-09-22 20:30				50,000
232	149 5088	**	2022-09-23 17:11		1		50,000
233	48 5846	**	2022-09-19 07:44		~		50,000
234	59 1471	**	2022-09-23 09:39		1		50,000
235	31 3813	**	2022-09-21 09:25		1		50,000
236	87 5499	**	2022-09-19 13:09				50,000
237	62 6012	**	2022-09-21 16:17				50,000
238	11 6446	**	2022-09-22 08:36		1		50,000
239	278 6974	**	2022-09-19 19:17		1가		50,000
240	28 8964	**	2022-09-06 18:53				50,000
241	166 9279	**	2022-09-08 17:43		1 ~ 2		50,000
242	23 4847	**	2022-09-19 08:28		1		50,000
243	84 5152	**	2022-09-21 20:07		()		50,000
244	84 5152	**	2022-09-21 20:00		()		50,000
245	04 2659	**	2022-09-22 12:39		IC		50,000

246	31 7190	**	2022-09-23 20:31		YMCA		50,000
247	101 3806	**	2022-09-08 18:01		1 107		50,000
248	52 4281	**	2022-09-20 17:44				50,000
249	2667 2472	**	2022-09-21 08:42		1		50,000
250	148 8243	**	2022-09-10 07:25				50,000
251	33 4832	**	2022-09-16 16:37				50,000
252	06 5700	**	2022-09-20 20:24		()		50,000
253	05 6567	**	2022-09-23 07:36		()		50,000
254	26 7095	**	2022-09-20 15:03				50,000
255	63 0281	**	2022-09-20 19:27		1 ~ 2		50,000
256	246 4369	**	2022-09-22 18:21		()		50,000
257	64 4662	**	2022-09-19 18:45		SK		50,000
258	81 7466	**	2022-09-23 07:25		1 ~ 2		50,000
259	57 8030	**	2022-09-24 20:11		IC		50,000
260	23 6160	**	2022-09-19 08:52		()		50,000
261	39 1130	**	2022-09-21 09:49		()		50,000
262	1137 3381	**	2022-09-15 18:05				50,000
263	50 3418	**	2022-09-24 15:07				50,000
264	36 6232	**	2022-09-25 04:42				50,000
265	156 5376	**	2022-09-07 15:49		IC		50,000
266	156 5376	**	2022-09-07 15:47		IC		50,000
267	42 4908	**	2022-09-21 17:45		SK		50,000
268	06 4227	**	2022-09-23 17:01				50,000
269	83 7405	**	2022-09-23 09:27		1 ~ 2		50,000
270	359 3987	**	2022-09-02 08:43				50,000
271	23 7410	**	2022-09-06 19:39				50,000
272	13 0689	**	2022-09-20 10:55		YMCA		50,000
273	143 9540	**	2022-09-19 15:59		IC		50,000

274	143 9540	**	2022-09-19 15:57		IC		50,000
275	42 7165	**	2022-09-22 08:24		~		50,000
276	31 4763	**	2022-09-19 15:08				50,000
277	67 3323	**	2022-09-22 09:29		()		50,000
278	35 7082	**	2022-09-22 20:39		1		50,000
279	36 6508	**	2022-09-23 18:41		2 12		50,000
280	157 6204	**	2022-09-05 10:01		111		50,000
281	31 4848	**	2022-09-01 18:41				50,000
282	32 3548	**	2022-09-21 20:28				50,000
283	07 2405	**	2022-09-22 14:25				50,000
284	156 1819	**	2022-09-06 18:56				50,000
285	40 4226	**	2022-09-21 14:11		~		50,000
286	49 3221	**	2022-09-20 18:05				50,000
287	35 1249	**	2022-09-23 09:17		1		50,000
288	20 9144	**	2022-09-19 20:21		1		50,000
289	12 6056	**	2022-09-09 00:19		IC		50,000
290	07 1833	**	2022-09-25 14:56		IC		50,000
291	10 1086	**	2022-09-22 09:20		1		50,000
292	96 6157	**	2022-09-21 18:09				50,000
293	57 0248	**	2022-09-09 00:38		IC		50,000
294	87 2009	**	2022-09-22 17:13		()		50,000
295	04 7177	**	2022-09-21 17:14		()		50,000
296	30 7964	**	2022-09-20 07:38		()		50,000
297	125 1233	**	2022-09-02 14:33		~		50,000
298	101 4097	**	2022-09-15 10:08		~		50,000
299	16 9865	**	2022-09-12 22:56		IC		50,000
300	65 2221	**	2022-09-07 07:24				50,000
301	41 2056	**	2022-09-20 17:20		1 ~ 2		50,000

302	23 4462	**	2022-09-21 16:55		IC		50,000
303	23 4462	**	2022-09-21 16:57		IC		50,000
304	21 6523	**	2022-09-20 08:40		()		50,000
305	65 2592	**	2022-09-24 09:03				50,000
306	97 7005	**	2022-09-21 19:09		1		50,000
307	48 9170	**	2022-09-23 19:06		7		50,000
308	124 2413	**	2022-09-22 15:34		IC		50,000
309	252 2531	**	2022-09-23 19:11		7		50,000
310	101 6134	**	2022-08-29 19:05		SK		50,000
311	101 6134	**	2022-08-23 17:13		SK		50,000
312	29 8941	**	2022-08-31 14:37		IC		50,000
313	10 2488	**	2022-09-22 11:23				50,000
314	05 2103	**	2022-09-23 18:55		()		50,000
315	38 7363	**	2022-09-22 07:58		1		50,000
316	64 1079	**	2022-09-20 18:33		1		50,000
317	29 2468	**	2022-09-05 07:35		111		50,000
318	160 5107	**	2022-09-09 22:56		IC		50,000
319	34 6322	**	2022-08-03 17:44		1 107		50,000
320	31 2463	**	2022-09-22 07:21		1		50,000
321	46 9916	**	2022-09-23 17:41		1		50,000
322	104 7470	**	2022-09-07 09:39		()		50,000
323	32 1768	**	2022-09-23 15:42		~		50,000
324	48 9880	**	2022-09-05 18:24				50,000
325	12 2315	**	2022-09-20 17:52		IC		50,000
326	67 2132	**	2022-08-24 09:20		~		50,000
327	24 5308	**	2022-08-31 17:21		1		50,000
328	90 7146	**	2022-09-20 09:11		10		50,000
329	51 3184	**	2022-09-19 09:07		109		50,000

330	155 8406	**	2022-09-05 20:25		IC		50,000
331	92 0813	**	2022-09-21 19:50		1		50,000
332	31 5609	**	2022-09-23 09:39		2 12		50,000
333	301 1673	**	2022-09-20 19:23		SK		50,000
334	37 6368	**	2022-09-08 18:24				50,000
335	41 8043	**	2022-09-01 17:11		1		50,000
336	360 1252	**	2022-09-21 09:44		()		50,000
337	65 6933	**	2022-09-17 17:30		~		50,000
338	40 6697	**	2022-09-25 09:20				50,000
339	05 8872	**	2022-09-12 00:39		IC		50,000
340	05 8872	**	2022-09-12 00:38		IC		50,000
341	17 9474	**	2022-09-19 00:52				50,000
342	83 5723	**	2022-09-19 16:24		IC		50,000
343	83 5723	**	2022-09-19 16:21		IC		50,000
344	12 3943	**	2022-09-08 18:09				50,000
345	59 7236	**	2022-09-25 19:05				50,000
346	86 4835	**	2022-09-22 15:46				50,000
347	03 1062	**	2022-09-25 22:51				50,000
348	55 3912	**	2022-09-23 08:56		1		50,000
349	234 6493	**	2022-09-20 15:51				50,000
350	07 6048	**	2022-09-23 09:17		1		50,000
351	32 5167	**	2022-09-16 08:06				50,000
352	31 6122	**	2022-09-23 00:26				50,000
353	06 6407	**	2022-09-23 09:47		~		60,000
354	43 2866	**	2022-09-19 08:43		()		50,000
355	93 3612	**	2022-09-23 09:18				50,000
356	84 2609	**	2022-09-23 18:43		()		50,000
357	02 1252	**	2022-09-20 17:10		2 12		50,000

358	93 9986	**	2022-09-22 17:59		IC		50,000
359	23 3180	**	2022-09-23 17:42		1		50,000
360	278 9423	**	2022-09-19 20:30		1 ~ 2		50,000
361	17 9693	**	2022-09-22 08:16		10		50,000
362	54 9546	**	2022-09-22 19:29		YMCA		50,000
363	244 3374	**	2022-09-22 17:57		1 ~ 2		50,000
364	137 3590	**	2022-09-21 08:16		10 ~		50,000
365	59 6907	**	2022-09-23 18:54		()		50,000
366	14 0419	**	2022-09-20 07:48		()		50,000
367	09 0243	**	2022-09-08 21:03		IC		50,000
368	136 9010	**	2022-09-22 18:15		1		50,000
369	24 3865	**	2022-09-23 17:15		1 ~ 2		50,000
370	30 7551	**	2022-09-23 15:40				50,000
371	31 4016	**	2022-09-22 08:16		10		50,000
372	147 3385	**	2022-09-21 09:08		IC		50,000
373	147 3385	**	2022-09-21 12:31		IC		50,000
374	147 3385	**	2022-09-21 12:30		IC		50,000
375	20 1344	**	2022-09-23 23:27				50,000
376	62 5710	**	2022-09-21 09:33		1		50,000
377	191 3918	**	2022-09-02 16:47		~		50,000
378	58 3379	**	2022-09-23 17:51		10		50,000
379	146 6683	**	2022-09-11 23:09				50,000
380	64 8676	**	2022-09-22 18:33				50,000
381	21 5008	**	2022-09-21 09:39		1 ~ 2		50,000
382	31 1728	**	2022-09-21 17:52		1		50,000
383	337 4459	**	2022-09-19 19:16		SK		50,000
384	63 0175	**	2022-09-20 20:42				50,000
385	142 3498	**	2022-09-21 10:28		IC		50,000

386	142 3498	**	2022-09-21 10:30		IC		50,000
387	142 3498	**	2022-09-21 10:29		IC		50,000
388	45 8024	**	2022-08-31 15:14		111		50,000
389	23 4026	**	2022-09-13 18:46				50,000
390	83 0110	**	2022-09-21 10:28				50,000
391	62 6643	**	2022-09-20 14:08				50,000
392	09 6909	**	2022-09-20 07:39		1		50,000
393	63 5342	**	2022-09-04 21:37		1가		50,000
394	가5629	**	2022-09-07 16:48		~		40,000
395	161 4943	**	2022-09-22 09:30				50,000
396	5474345	**	2022-09-22 18:34		()		50,000
397	157 3352	**	2022-09-12 21:20		IC		50,000
398	32 6367	**	2022-09-22 07:34				50,000
399	28 9107	**	2022-09-23 18:42		()		50,000
400	03 0960	**	2022-09-23 13:01				50,000
401	269 7931	**	2022-09-22 15:27				50,000
402	301 7287	**	2022-09-13 18:25				50,000
403	05 1254	**	2022-09-25 13:07		IC		50,000
404	05 1254	**	2022-09-25 13:05		IC		50,000
405	05 1254	**	2022-09-25 13:06		IC		50,000
406	61 2411	**	2022-09-19 17:43		1 ~ 2		50,000
407	169 1462	**	2022-09-22 11:42				50,000
408	56 5616	**	2022-09-23 09:21		1가		50,000
409	43 3964	**	2022-09-20 13:12				50,000
410	81 4537	**	2022-09-19 10:52		YMCA		50,000
411	46 2282	**	2022-09-20 20:11		1		50,000
412	66 8639	**	2022-09-19 18:03				50,000
413	15 3450	**	2022-09-15 19:38		1		50,000

414	157 7371	**	2022-09-23 17:38		()		60,000
415	31 1745	**	2022-09-21 17:47		1		25,000
416	31 2201	**	2022-09-22 18:28		()		50,000
417	153 9371	**	2022-08-22 19:54		1		50,000
418	91 5015	**	2022-09-22 14:33				50,000
419	53 9114	**	2022-09-12 22:46		IC		50,000
420	86 6560	**	2022-09-24 11:46				50,000
421	81 1526	**	2022-09-22 05:23		가 ~		50,000
422	93 0115	**	2022-09-24 13:50		IC		50,000
423	08 3722	**	2022-09-21 11:45				50,000
424	56 1964	**	2022-09-23 20:30		1		50,000
425	17 4901	**	2022-09-22 16:06		IC		50,000
426	53 1724	**	2022-09-19 06:53		~		50,000
427	64 1513	**	2022-09-23 09:25		1		50,000
428	52 7377	**	2022-09-25 17:58				50,000
429	33 6396	**	2022-09-20 12:01				50,000
430	12 0198	**	2022-09-07 09:09				50,000
431	60 8500	**	2022-09-23 17:40		()		50,000
432	50 4803	**	2022-09-22 19:29				50,000
433	192 1304	**	2022-09-17 16:11		IC		50,000
434	192 1304	**	2022-09-17 16:09		IC		50,000
435	30 2953	**	2022-09-22 08:44		~		50,000
436	364 8331	**	2022-09-16 19:19		ic~ ic		50,000
437	69 1840	**	2022-09-19 07:44		2 12		50,000
438	395 8891	**	2022-09-19 19:54		()		50,000
439	32 3687	**	2022-09-21 17:50		1		50,000
440	86 7320	**	2022-09-23 14:56				50,000
441	162 1317	**	2022-08-31 10:51		IC		50,000

442	02 6085	**	2022-09-19 07:37		~		60,000
443	13 2605	**	2022-09-25 21:14		SK		50,000
444	33 4107	**	2022-09-23 20:16		()		50,000
445	37 1580	**	2022-09-23 17:14		()		50,000
446	340 8051	**	2022-09-19 18:36		10		50,000
447	53 8761	**	2022-09-23 19:22		()		50,000
448	47 8076	**	2022-09-20 18:33		1 107		50,000
449	37 0506	**	2022-09-23 13:17				50,000
450	19 7848	**	2022-09-22 18:17		2 12		50,000
451	15 5796	**	2022-09-25 00:27		1가		50,000
452	31 2564	**	2022-09-22 09:31		2 12		50,000
453	37 5644	**	2022-09-19 19:13		SK		50,000
454	32 4535	**	2022-09-20 20:36		()		50,000
455	03 6946	**	2022-09-23 20:45		1 ~ 2		50,000
456	86 5618	**	2022-09-22 18:01		100		50,000
457	51 7638	**	2022-09-22 09:25		()		50,000
458	133 5670	**	2022-09-09 00:35		IC		50,000
459	133 5670	**	2022-09-11 22:22		IC		50,000
460	194 3426	**	2022-08-30 15:46				50,000
461	19 9757	**	2022-09-16 17:24				50,000
462	39 6183	**	2022-09-06 20:28				50,000
463	21 7275	**	2022-09-23 19:22		1 ~ 2		50,000
464	05 2728	**	2022-09-21 18:23				50,000
465	21 6817	**	2022-09-21 20:27		1		50,000
466	89 6455	**	2022-09-23 18:17		IC		50,000
467	54 7926	**	2022-09-20 13:55				50,000
468	31 3221	**	2022-09-21 18:47		1		50,000
469	19 4394	**	2022-09-11 09:59		IC		50,000

470	83 7102	**	2022-09-16 13:29				50,000
471	181 7381	**	2022-09-23 08:49				50,000
472	49 2509	**	2022-09-21 18:42		()		50,000
473	125 6012	**	2022-09-09 23:02		IC		50,000
474	67 6721	**	2022-09-23 07:32		()		50,000
475	160 5156	**	2022-09-25 12:15				50,000
476	54 7759	**	2022-09-21 14:19				50,000
477	32 3740	**	2022-09-20 10:10		~		50,000
478	57 6693	**	2022-09-23 20:36				50,000
479	31 2275	**	2022-09-19 09:35		10		50,000
480	107 8540	**	2022-09-22 17:38		1		50,000
481	82 2331	**	2022-09-02 09:09				50,000
482	32 2586	**	2022-09-21 17:52		1		50,000
483	12 7952	**	2022-09-22 11:40		SK		50,000
484	184 1978	**	2022-09-23 19:25		1 ~ 2		50,000
485	101 4635	**	2022-08-23 13:26		YMCA		50,000
486	25 8968	**	2022-09-19 18:41				50,000
487	193 9008	**	2022-09-12 23:25		IC		50,000
488	25 0859	**	2022-09-22 20:10		()		50,000
489	31 4495	**	2022-09-19 18:15		()		50,000
490	22 2289	**	2022-09-20 18:14		1 ~ 2		50,000
491	57 4306	**	2022-08-23 15:28		IC		50,000
492	30878108	**	2022-09-19 09:07		()		50,000
493	31 4724	**	2022-09-20 09:42		()		50,000
494	47 8171	**	2022-09-20 09:15		()		50,000
495	31 4038	**	2022-09-20 09:28		1		50,000
496	35 7017	**	2022-09-22 19:04		1		50,000
497	14 1440	**	2022-09-21 20:45		()		50,000

498	23 6248	**	2022-09-22 19:30		1 ~ 2		50,000
499	38 0760	**	2022-09-19 15:25				50,000
500	138 1654	**	2022-09-19 19:40		1		50,000
501	32 9262	**	2022-09-23 07:15		1		50,000
502	32 9262	**	2022-09-23 07:43		1		50,000
503	22 8493	**	2022-09-25 18:39				50,000
504	20 1544	**	2022-09-20 09:10				50,000
505	109 1042	**	2022-09-07 17:12		IC		50,000
506	93 2492	**	2022-09-22 09:04				50,000
507	105 3067	**	2022-08-26 14:33				50,000
508	105 3067	**	2022-08-23 08:49				50,000
509	27 5019	**	2022-09-19 02:36				50,000
510	20 1725	**	2022-09-23 20:43		2 12		50,000
511	57 0105	**	2022-09-23 09:30				50,000
512	204 3936	**	2022-09-16 08:05		~		50,000
513	43 3812	**	2022-09-23 17:33		1		50,000
514	88 2793	**	2022-09-06 17:51				50,000
515	21 6316	**	2022-09-21 10:34		IC		50,000
516	123 4729	**	2022-09-01 19:46				50,000
517	162 5952	**	2022-09-20 16:51		~		50,000
518	395 6617	**	2022-09-20 18:02				50,000
519	88 2641	**	2022-08-31 19:59				50,000
520	98 5847	**	2022-09-19 08:05		~		60,000
521	57 5063	**	2022-09-23 18:46		2 12		50,000
522	35 4252	**	2022-09-23 20:38		10		50,000
523	24 8128	**	2022-09-16 18:02				50,000
524	45 0585	**	2022-09-20 20:15		1		50,000
525	07 4653	**	2022-09-23 09:18		1 ~ 2		50,000

526	35 3269	**	2022-09-23 20:18		1		50,000
527	181 4385	**	2022-09-25 23:25				50,000
528	85 1064	**	2022-09-21 08:57		()		50,000
529	18 3083	**	2022-09-21 08:26		()		50,000
530	82 6486	**	2022-09-21 07:31		()		50,000
531	84 8862	**	2022-09-20 19:00		()		50,000
532	06 0661	**	2022-09-20 14:51		YMCA		50,000
533	06 5110	**	2022-09-24 13:30		SK		50,000
534	167 9154	**	2022-08-25 09:19		1 ~ 2		50,000
535	32 5676	**	2022-08-29 17:45				50,000
536	283 8205	**	2022-09-20 17:06		YMCA		50,000
537	125 1912	**	2022-09-02 18:02				50,000
538	147 7785	**	2022-09-21 08:17		1		50,000
539	83 2475	**	2022-09-22 20:41				50,000
540	53 9757	**	2022-09-23 20:41		1 107		50,000
541	65 0465	**	2022-09-10 23:40		IC		50,000
542	183 2933	**	2022-09-12 22:12		IC		50,000
543	183 2933	**	2022-09-12 22:14		IC		50,000
544	31 9174	**	2022-09-22 20:03		1		50,000
545	31 7345	**	2022-09-22 10:45		~		50,000
546	370 9476	**	2022-09-23 10:39				50,000
547	807 5734	**	2022-09-19 19:27		10		50,000
548	153 5613	**	2022-09-20 08:51		1		50,000
549	295 6444	**	2022-09-07 18:14				50,000
550	134 5107	**	2022-09-25 19:03				50,000
551	238 1920	**	2022-09-23 08:18		()		50,000
552	54 6360	**	2022-09-22 12:50				50,000
553	85 0811	**	2022-09-21 07:40				50,000

554	81 4555	**	2022-09-23 07:14		IC		50,000
555	65 1363	**	2022-09-20 07:53		()		50,000
556	20 1598	**	2022-09-23 08:12		IC~ IC		50,000
557	32 2348	**	2022-09-23 14:41		~		50,000
558	104 7651	**	2022-09-12 23:14		IC		50,000
559	244 2161	**	2022-09-21 17:25		1		50,000
560	58 6307	**	2022-09-20 16:36				50,000
561	06 1339	**	2022-09-22 08:48		SK		50,000
562	102 1805	**	2022-08-01 08:29		YMCA		50,000
563	102 1805	**	2022-08-15 21:39				50,000
564	15 7005	**	2022-09-21 17:13		()		50,000
565	193 5738	**	2022-09-15 07:34		1		50,000
566	20 5155	**	2022-09-21 09:16		()		50,000
567	145 8225	**	2022-09-08 19:32				50,000
568	02 0754	**	2022-09-24 06:43		SK		50,000
569	312 5897	**	2022-09-20 19:51				50,000
570	145 9783	**	2022-09-20 13:04				50,000
571	93 3764	**	2022-09-22 18:11				50,000
572	180 1027	**	2022-09-20 07:59		~		50,000
573	12 5522	**	2022-09-23 17:54		YMCA		50,000
574	06 1850	**	2022-09-23 17:58		YMCA		50,000
575	26 7686	**	2022-09-18 14:02		IC~ IC		50,000
576	54 6316	**	2022-09-20 17:22		1		50,000
577	32 6920	**	2022-09-19 13:38		SK		50,000
578	138 3603	**	2022-09-20 17:40		SK		50,000
579	57 7862	**	2022-09-20 17:26		10		50,000
580	98 7524	**	2022-09-23 09:06		1		60,000
581	20 0263	**	2022-09-23 17:25				50,000

582	14 2392	**	2022-09-13 19:26				50,000
583	104 2975	**	2022-09-02 19:14		IC		50,000
584	104 2975	**	2022-09-02 19:16		IC		50,000
585	166 4957	**	2022-09-08 18:27		1		50,000
586	90 2654	**	2022-09-19 19:43		()		50,000
587	31 4228	**	2022-09-22 15:51		330		50,000
588	30 2466	**	2022-09-23 17:15		88		50,000
589	83 0938	**	2022-09-24 15:39				50,000
590	29 1357	**	2022-09-22 18:18				50,000
591	33 9839	**	2022-09-21 14:48				50,000
592	10 6699	**	2022-09-22 20:41				50,000
593	57 6485	**	2022-09-21 09:10				50,000
594	74 4568	**	2022-09-23 07:35				60,000
595	61 0299	**	2022-09-23 18:22		()		50,000
596	161 6167	**	2022-09-25 16:50		~		50,000
597	234 4272	**	2022-09-21 16:17		IC		50,000
598	35 4467	**	2022-09-23 19:18		1 107		50,000
599	14 1032	**	2022-09-06 18:39				50,000
600	81 2409	**	2022-09-19 08:41		1 107		50,000
601	33 6593	**	2022-09-07 19:37				50,000
602	25 7057	**	2022-09-22 19:33		()		50,000
603	08 1930	**	2022-09-09 13:22		1가		50,000
604	63 4422	**	2022-09-19 07:29		2 12		50,000
605	299 6128	**	2022-09-21 09:27		1		50,000
606	375 6312	**	2022-09-17 11:22				50,000
607	54 1678	**	2022-09-21 19:56		1		50,000
608	12 2279	**	2022-09-20 19:14		~		50,000
609	60 4402	**	2022-09-16 13:23		IC~ IC		50,000

610	28 2781	**	2022-09-20 18:34		()		50,000
611	92 7350	**	2022-09-19 08:07		~		60,000
612	15 5282	**	2022-08-30 17:24				50,000
613	50 5339	**	2022-09-21 17:56		()		50,000
614	95 2481	**	2022-09-20 19:47		IC		50,000
615	301 2800	**	2022-09-21 18:08				50,000
616	05 9486	**	2022-09-20 09:13		()		50,000
617	31 5176	**	2022-09-19 18:54		()		50,000
618	83 6343	**	2022-09-23 07:20		()		50,000
619	103 5424	**	2022-09-21 20:25		SK		50,000
620	31 4334	**	2022-09-20 18:49		2 12		50,000
621	31 2065	**	2022-09-23 17:50		1		50,000
622	398 3688	**	2022-09-06 18:19				50,000
623	24 4239	**	2022-09-23 18:52				50,000
624	31 6644	**	2022-08-17 17:03				50,000
625	26 9761	**	2022-09-19 19:31				50,000
626	08 0741	**	2022-09-20 09:55		2 ~		50,000
627	31 2004	**	2022-09-20 15:53				50,000
628	66 2704	**	2022-09-16 18:01				50,000
629	16 8004	**	2022-09-21 16:25		YMCA		50,000
630	63 2736	**	2022-09-20 19:03		IC		50,000
631	63 2736	**	2022-09-19 19:40		IC		50,000
632	23 7703	**	2022-09-20 18:42		()		50,000
633	67 1738	**	2022-09-23 08:37		24		50,000
634	30 4536	**	2022-09-07 19:26				50,000
635	25 7480	**	2022-09-22 08:56		()		50,000
636	41 3907	**	2022-09-19 14:54				50,000
637	39 2059	**	2022-09-20 18:12		1 107		50,000

638	30 5006	**	2022-09-19 10:30		YMCA		50,000
639	323 6043	**	2022-08-29 20:07				50,000
640	31 7893	**	2022-09-20 20:47		1 ~ 2		50,000
641	25 8235	**	2022-09-22 11:18				50,000
642	60 3147	**	2022-09-23 12:37				50,000
643	126 5444	**	2022-09-18 13:10		IC		50,000
644	12 3866	**	2022-09-22 20:14		()		50,000
645	18 8401	**	2022-09-23 07:27		()		50,000
646	62 0521	**	2022-08-11 18:20		IC~		50,000
647	84 8155	**	2022-09-23 20:20				50,000
648	87 9490	**	2022-09-21 08:13		1		50,000
649	38 3512	**	2022-09-16 20:43		LG		50,000
650	33 5553	**	2022-09-21 14:03				50,000
651	368 7001	**	2022-09-21 08:56		1 ~ 2		50,000
652	6471218	**	2022-09-24 04:10				50,000
653	67 6743	**	2022-09-21 20:11				50,000
654	16 3906	**	2022-09-02 19:02				50,000
655	57 1904	**	2022-09-23 15:47				50,000
656	36 8640	**	2022-09-23 18:50		()		50,000
657	62 6592	**	2022-09-19 19:43		1		50,000
658	154 9544	**	2022-09-20 08:58				50,000
659	279 3022	**	2022-09-19 17:00				50,000
660	62 7693	**	2022-09-23 09:35		1		50,000
661	15 2150	**	2022-09-19 15:51		~		50,000
662	31 5543	**	2022-09-23 20:49		1		50,000
663	18 9795	**	2022-09-19 07:27		~		50,000
664	31 2748	**	2022-09-23 19:22		()		50,000
665	79 0889	**	2022-09-23 17:47		1 107		60,000

666	35 8407	**	2022-09-21 18:53		IC		50,000
667	03 7662	**	2022-09-20 14:52				50,000
668	03 5447	**	2022-09-21 20:10		10		50,000
669	22 8034	**	2022-09-22 19:12				50,000
670	167 5549	**	2022-08-24 19:30		()		50,000
671	34 9148	**	2022-09-08 18:06				50,000
672	91 0805	**	2022-09-23 20:36		10		50,000
673	16 2577	**	2022-09-24 09:12		IC		50,000
674	54 4575	**	2022-09-22 16:40				50,000
675	31 2956	**	2022-09-22 20:34				50,000
676	811 4571	**	2022-09-19 08:05		~		50,000
677	52 5420	**	2022-09-23 15:42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88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	
1	203710	22.10.24.	110111 - 7263322	238, 3 (2가,)
2	203711	22.10.24.	110111 - 8408711	88, 420 (,)
3	203712	22.10.24.	110111 - 7849859	83, 9, 15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3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퇴직교직원 및 일반시민의 정의, 활동 참여대상(안 제2조~제3조)
- 다. 센터 운영,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안 제4조~제5조)
- 라.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평생교육과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19-3, 4층 (신설동)
 - 연락처 : 전화 02-2230-8568, FAX 02-2230-8558
 - 이메일 : seoedu14@sen.go.kr

※ 이 규칙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구 고 시

◆ 동대문구고시 제2022-17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동대문구고시 제249호(2021.12.2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로 중복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결정사유

답십리동 일대 간데메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경미한 변경 결정을 하여 주차수요 증대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공원) 결정(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471	5,000	2021-249 (2021.12.23.)	5,000㎡
		471	5,000	-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	가

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471	15,179.7	1997-51 (1997.3.5.)	5,000㎡

3.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도(기정)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 결정도(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2127-4903) 및 도시계획과(☎2127-5668)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고시 제2022-171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실효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실효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은 평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300-5, 93-14 300-79)	826㎡	

2. 실효일자 : 2020. 07. 01.

3. 실효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효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효

4. 지형도면 : 불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6) 및 공원녹지과(☎351-800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 기존



○ 변경



◆ 동작구고시 제2022-158호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9-74호(2019.9.11.), 동작구고시 제2020-111호(2020.7.30.), 동작구고시 제2020-185호(2020.12.3.)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변경없음) : (주)우리자산신탁(대표 이창하, 이창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강남파이낸스빌딩 20층)
3.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가.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65-74번지 일대
 - 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	(%)	(%)	()
	(/)							
	5/18	10	771	33,897.0	121,475.1071	21.18	226.89	2023.10.
	5/18	10	771	33,897.0	121,475.1071	21.18	226.89	2023.10.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1.02. ~ 2023.10.

5.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65-74	47,515	-	47,515	

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	
		47,515	-	47,515	100.0	
	1	7,675	) 60	7,615	16.0	
	2 (7)	5,943	) 60	6,003	12.7	
	2	33,897	-	33,897	71.3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
65-74	1	2 (7)	7,675	7,615	• (3-37), ()
	2 (7)	1	5,943	6,003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m)								
		3	37	12~16		1,030 (188)	3-18	3-35		-	722 (' 36.12.26)	
		3	37	12~16		1,030 (188)	3-18	3-35		-	722 (' 36.12.26)	
		1	1	10		288 (288)	65-176	65-190		-	2019-74 (' 19.9.11)	
		2	1	8		22	279-328	279-482		-	533 (' 88.6.20)	
		2	2	8		698 (233)	214	264-160		-	75 (' 90.3.20)	
		3	1	6		16	228-5	228-15		-	354 (' 90.10.24)	
		3	4	6~8		151 (41)	235-40	236-7		-	354 (' 90.10.24)	
		2	A	8		56 (56)	3-37	238-2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
3-37	3-37	• : 3,373m² → 3,433m² (60m²)	• 가 가 가
-	2-A	• () - B = 8.0m, L = 56.0m	• (2-A,

나) 공간시설(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				
				65-113	3,367	) 431	2,936	2019-74 (' 19.9.11)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 3,367㎡ → 2,936㎡ (431㎡)	• 2-A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65-113	1,281	) 60	1,221	2019-74 (' 19.9.11)	• : 60% • : 150% • : 20m (4)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 : 1,281㎡ → 1,221㎡ (60㎡)	• 3-37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공동주택(변경없음)

가	(㎡)						
				(㎡)			
A	33,897	1	65 - 74	33,897	-	33,897	

② 공공청사(변경)

가	(㎡)							
					(㎡)			
B	1,281	1,221	1	65 - 113	1,281	) 60	1,221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	()
• : 1,281㎡ → 1,221㎡ (60㎡)	• 3-37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① 공동주택(변경없음)

가				
-	A		• 1 2 • 2 • • 60% • : 166.78% • : 236.02% • 54m , 18 • • 3m	

② 공공청사(변경없음)

가				
-	B		• 1 14 가 • • 60% • 150% • 20m , 4 • • • 2m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대지내 공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3m	
		• : 2m	
		• (6m)	
		• (6m)	

■ 대지내 공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	()
•	• ' (2-A,)

■ 교통처리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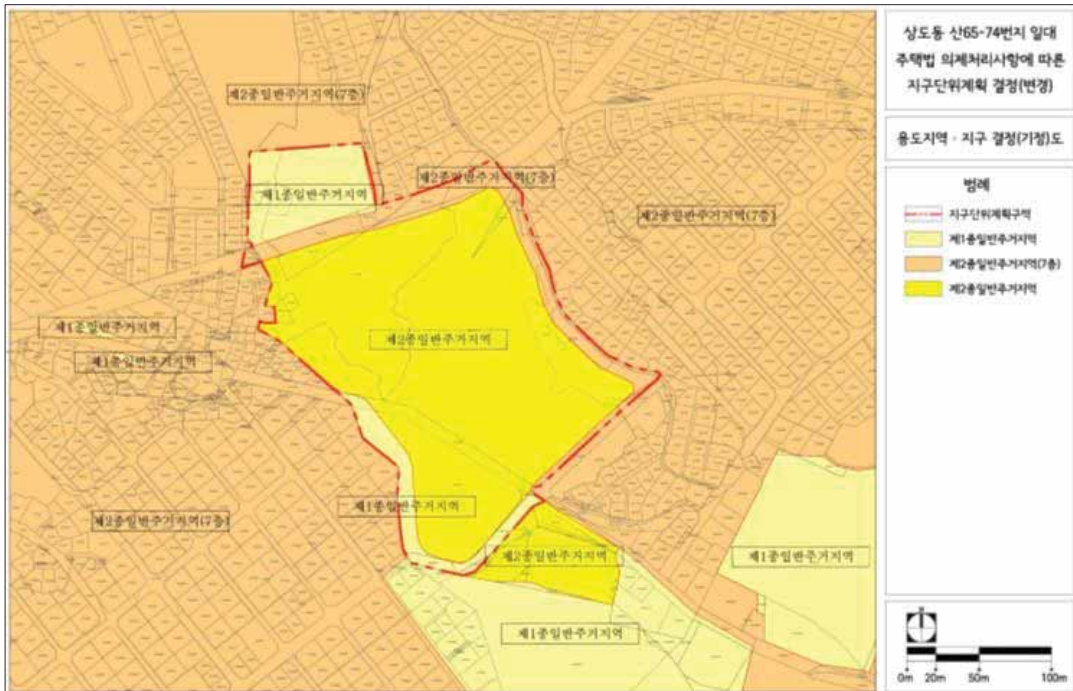
	• 3-37 ()	

6. 기타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02-820-1381)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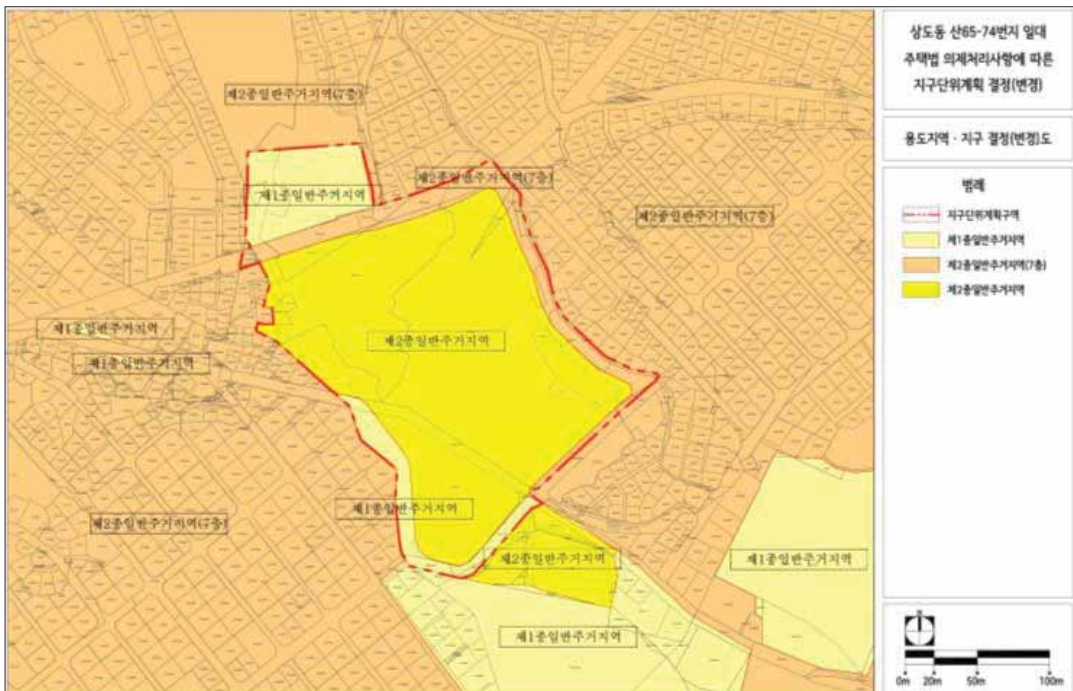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도면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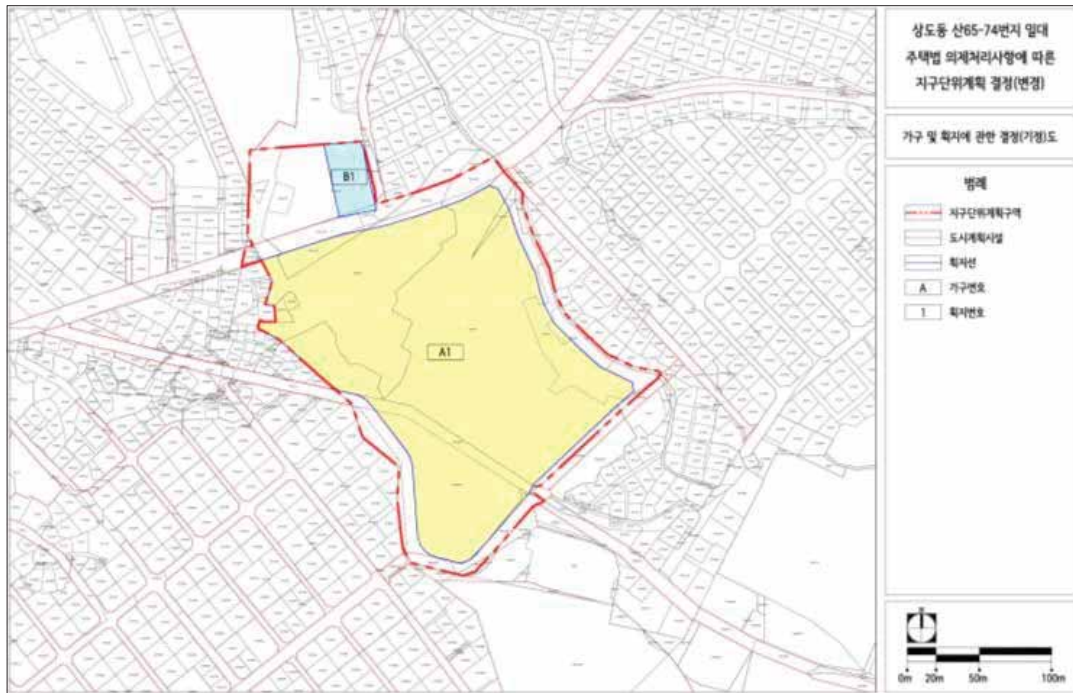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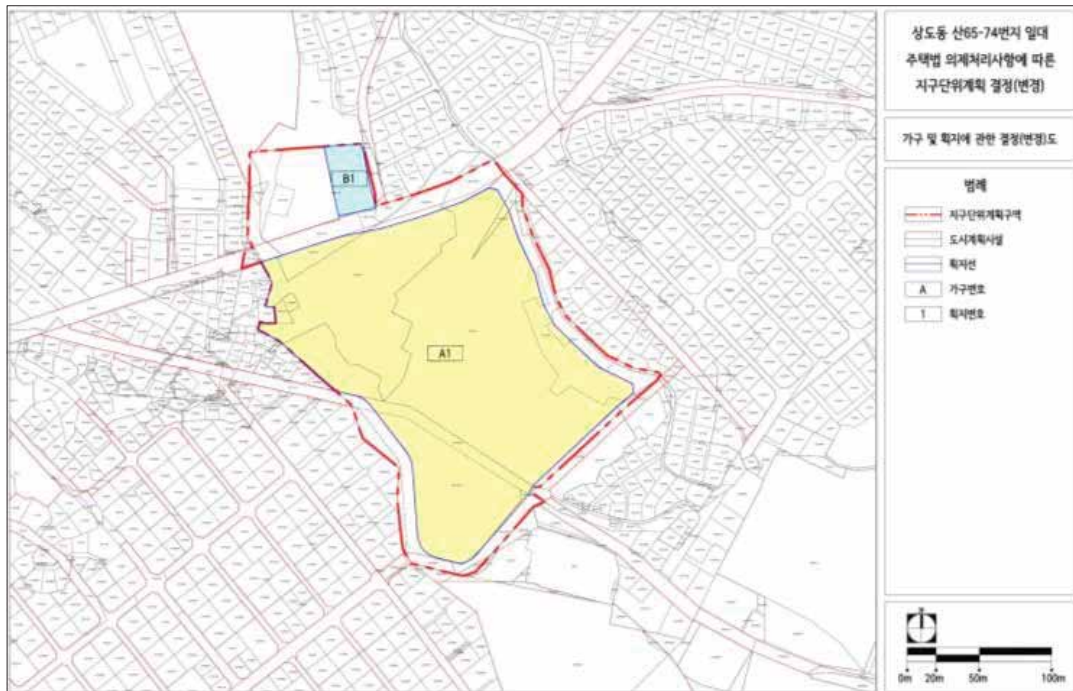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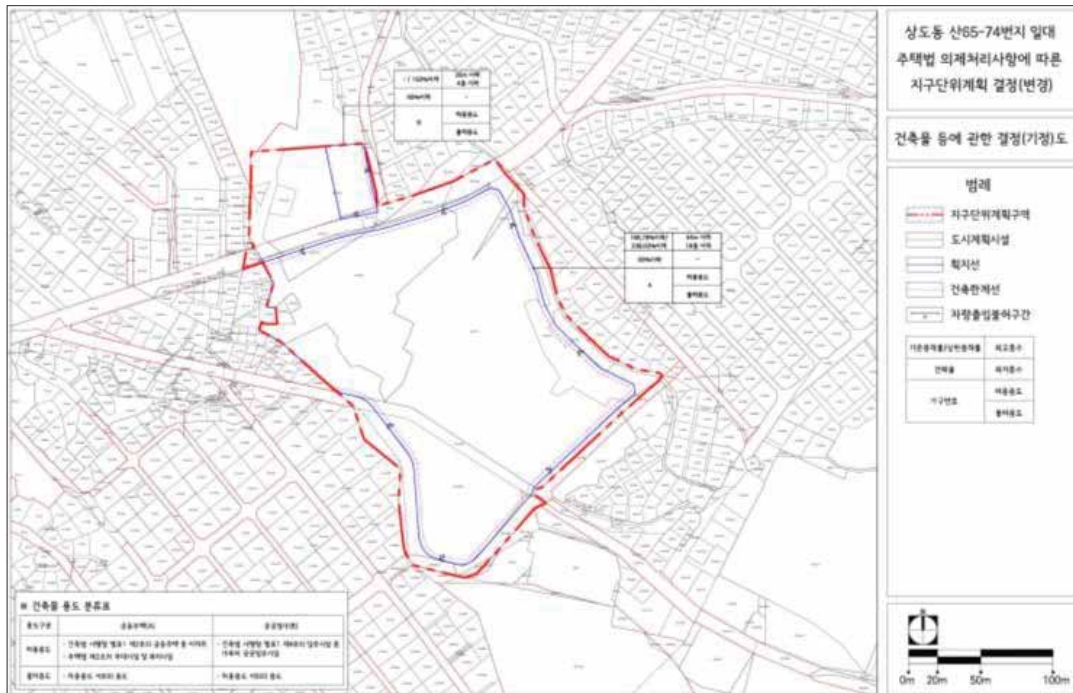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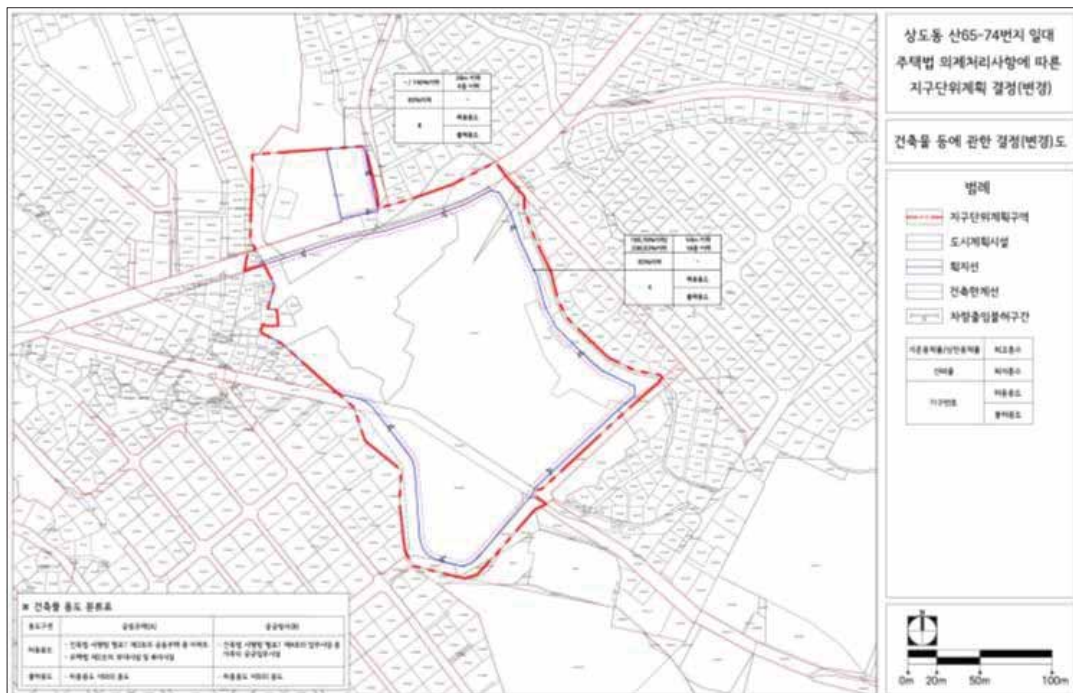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변경)도]



◆ 송파구고시 제2022-177호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47호(2018.10.25)로 결정(변경)된 「삼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제3차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삼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송 파 구 청 장

I. 결정취지

- 「삼전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삼전동 7-15 및 7-20 필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주민제안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1. 건축물의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

■ 용적률 계획 결정(변경)조서

		300%	360%	2	
					7-15, 7-20 469%

■ 용적률 계획에 관한 변경 사유서

7-15, 7-20	. - 2 → 469%	. 「 」	

② 공공기여계획

	()	
	541.2㎡	
	· : 135.49㎡ - (·) : 76.77㎡ · : 58.72㎡ · : 469.2% - $X (1 + 1.3 \times \text{가} \times \alpha + \alpha \cdot)$ $\rightarrow 360\% \times (1 + 1.3 \times 1.0 \times 0.1653 + 0.7 \times 0.1264) = 469\%$	·
(+)	· 135.49㎡ (+)	· : 25.03%
()	· 76.77㎡ - $X (/)$ $\rightarrow 541.2\text{㎡} \times (284.70\text{㎡} / 2,007.06\text{㎡}) = 76.77\text{㎡}$	·
	· 394.27㎡	· 2 · 284.69㎡
	가 · 2,853,637 /㎡ (, 500㎡ , VAT)	· 가 (2020)
	· 1,125,102,509 (X 가)	
	· 58.72㎡ - / 가 2 $\rightarrow 1,125,102,509() / 19,159,000(/\text{㎡}) = 58.72\text{㎡}$	· 2022 가 × 2 (19,159,000 /㎡)

가

③ 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조건부 가결)

■ 조건사항

- 공공시설 이용자 외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지상1층 기부채납 부속주차장에 공공시설 전용주차장 노면표시
- 지상2층에 위치한 공공시설로 직접 진입 가능한 외부계단 설치 및 공공시설의 인지성을 올릴 수 있는 시설물 설치
- 다음 사항에 대하여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보완·검토
 - 기계식 주차장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진입 회전반경 등 이용성 검토
 - 장애인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는 최소 16인승 이상 설치 검토
 - 트랜스퍼층 및 옥탑층의 적정 층고 등 전반적인 높이 검토
 - 채광·환기가 용이하도록 복도를 외벽까지 연결하여 오픈되도록 검토

■ 권고사항

- 삼전동 7-16과 접한 부분의 담장 철거 및 삼전동 7-8과 맞닿은 각각부 담장 일부 철거 협의 필요

Ⅲ. 관계도면 : 없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2147-3000)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2-122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8호(2015.12.31.)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종로구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결정되고, 종로구 고시 제2021-146호(2021.08.0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종로구 고시 제2021-208호(2021.10.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종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사항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81-23번지 외 4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부암1취락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
- 3) 사업규모 및 내용
 - 주차장 : 평면식 18대, 시설면적 444.07㎡, 주차면수 18면(이륜차 5면 포함)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30개월
 - 변경 : 실시계획(변경)고시일로부터 30개월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8)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주차관리과 비치)
- 9) 공고방법 : 서울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10)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11)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02-2148-3348)

나. 기타사항 : 본 실시계획(변경)은 열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 관련기관(부서)과의 협의과정
및 법령검토 등 내부검토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부암1취락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변경없음)

				(㎡)						
1		22-2		21		-		-		
2		24-8		52	**	1/2	* ** , *** ** (,)	-		
					**	1/2	*** (, 2 ** , **)			
3		27-8		26		-	-	-		
4		27-9		11		-	-	-		
		27-10		38						
5		81-23		427	**	13/598	**_*()	-		
					**	266/598	***_** , **			
					*	266/598	***_*, ***			
					**	53/598	() ***_*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부암1취락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추가)

		()									
1		22-2	()	1		-		-			
2		24-8	()	1	**	1/2	* * * * *** (, *)	-			
					**	1/2	* * * * *** (, * 2)				
3		27-8	()	1		-	-	-			
4		27-9	()	1		-	-	-			
		27-10	()	1							
5		81-23	()	1	**	13/598	* * . * ()	-			
					**	266/598	*** _ * * *				
					*	266/598	*** _ * , ***				
					**	53/598	*** _ * ()				
6		(91-9)	()	2m ²	**	-	*** _ * ()	-			
			()	2m ²							
			()	4m ²							
			(,)	1							

◆ 은평구공고 제2022-167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 7. 2.)로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6호(2018. 12. 7.)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23-15 일원

나. 사업명 및 사업종류

- 1) 사업명 : 증산동 삼표부지 주거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로 확·포장 공사
- 2)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내용

- 1) [구간 A] 수색로(대로 1-14) 확폭(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
- 2) [구간 B] 중로 3-1 : 기존 화단 철거 후 보도 조성(수색로 이면부 원활한 진입 유도)

		10.6m ~ 13.9m	14.1m ~ 15.0m		
A				145.0m	(3 → 4 DMC)
		2.0m ~ 5.9m	3.8m ~ 4.5m	145.0m	()
B		-	2.0m	50.0m	()

라.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1) 명 칭 : ㈜에스피에스테이트 대표 전병일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이마빌딩 6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 수 일 : 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열람도서 참조

사. 열람기간 : 2022. 10. 27. ~ 2022. 11. 10.

아.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로과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도로과(☎351-7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 ※ 1) 구간 A: 수색로(대로 1-14)에 포함
2) 구간 B: 중로 3-1에 포함

◆ 구로구공고 제2022-1871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22-156호(2022.10.13.)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합니다.
4.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253-124, 253-171, 253-175,
253-278, 253-279, 253-28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사업의 내용 : 지평식 주차장 조성

다. 사업의 면적 : 852㎡(주택 5필지-718㎡, 도로 1필지-134㎡)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23.12.31.

바. 사용·수용할 토지, 건물의 물건조서 : 따로 붙임

사.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 02)860-286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의 명칭 :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	(㎡)				()
1	253-124		116	116	○	32	○	
2	253-171		134	134	○	32	○	
3	253-175		102	102	○	293,	○	
4					○	55	○	
5					○	21가 49	○	
6					○	293,	○	
7					○	55	○	
8					○	21가 49	○	
9	253-278		143	143	○	32	○	
10	253-279		152	152	○	41	○	
11	253-281		205	205	○	119	○	

물 건 조 서

○ 사업의 명칭 :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 구로구청장

				(㎡)						()
1	253-124			1 57.84 2 57.84 57.84	○	32 ○		131-28		
2	253-175			1 49.71 2 49.71 55.26	○	293, ○				
3					○	55 ○				
4					○	217가 49 ○				
5					○	293, ○				
6					○	55 ○				
7					○	217가 49 ○				
8	253-278			1 69.6 2 69.6 69.6	○	32 ○				
9	253-279			1 74.24 2 75.8 74.24	○	41 ○				
10	253-281			1 89.78 2 89.78 70.34	○	119 ○		13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금천구공고 제2022-1729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호(1968.0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121호(2008.4.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645호(2021.12.2)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금천구 고시 제2021-199호(2021.2.15.)로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의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고자 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 토지를 갈음합니다.
4. 관련 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원녹지에 비치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기한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나.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 당초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2-3 외 1필지
 - 변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2-5 외 2필지
- 사업규모
 - 당초 : 5,587㎡ → 변경 : 5,594.8㎡
- 내 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까지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 붙임

바. 공고방법 및 열람기간 : 서울시보 게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2627-1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변경 전)

			(㎡)								
			28,809	5,587							
1	132-3		28,643	5,421	369 **_***	*		(2)	73 70		
2	204-14	166	166		462-4 ****	*** *	3 1				
					120 **** ****	* *	3 1				
					_	*	3 1				

(변경 후)

			(㎡)								
			5,693	5,594.8							
1	132-5		5,421	5,421							
2	204-14		166	166							
3	13-5	106	7.8		**	**			254-5	가	가
									4가 17-7	가	
									1162 5		
									136-74	가	
								()			
								(1)			
								()			

			(㎡)								
								(3)	450()	가	
								(1)			
								(2)			
								(1)			
								(1)			
								()	32		

◆ 영등포구공고 제2022-1821호
**도시관리계획(영등포구 대림동 993-15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21-1094호(2021.07.01.)로 열람공고한 영등포구 대림동 993-15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영등포구 당산로123, 본관 5층)
3. (재)열람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내용 반영 등
4.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영등포구 대림동 993-15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변경)(안)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				
	993-15	993-15	-	3,059.3	3,059.3	-	-

2)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			(%)	
		3,059.3	-	3,059.3	100.0	「
	3	3,059.3	) 3,059.3	-	-	
		-	) 3,059.3	3,059.3	100.0	

3)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60%	「 54 1
	() : 250% : 700%	「 」
	70m	(가)

4) 기타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사항: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른 주요 내용: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6) 관계도서: 게재 생략(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4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2-1713호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4호(1996.10.15.)로 최초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13호(2001.4.20.)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1호(2009.1.2.)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동 작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				
	405	57,025	) 6,100	63,125	1996-274 (1996.10.15.)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			(%)	
		57,025	) 6,100.0	63,125.0	100.0	
		38,938	) 5,710.7	44,648.7	70.8	
	1	23,834	) 1,317.6	22,516.4	35.7	
	2	611	) 326.6	284.4	0.5	
	3	477	) 6,916.8	7,393.8	11.7	
		14,016	) 438.1	14,454.1	22.9	
		18,087	) 389.3	18,476.3	29.2	
		18,087	) 389.3	18,476.3	29.2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도로

						(m)						
				(m)								
		3	18	25		6,490 (502)	(3 345 - 12)	(466 - 61)		-	177 (62.12.8.)	
		3	48	25		1,920 (80)	(406 - 9)	(89 408 - 5)		-	738 (63.12.24.)	
		2	1	15		1,030 (60)	(3 345 - 13)	(3 325 - 2)		-	64 (75.5.7.)	
		3	1	12~18		(136)	(2 408 - 1)	(2 355 - 21)		-		
		2	1	8		(206)	(394 - 7)	(394 - 3)		-	2008 - 501 (2009.1.2.)	
		2	2	8		(43)	(405 - 8)	(407 - 1)		-	2008 - 501 (2009.1.2.)	
		2	A	8~10		(384)	(408 - 6)	(3 320 - 22)		-		
		3	1	6~8		(134)	(3 336 - 5)	(3 324 - 72)		-	2008 - 501 (2009.1.2.)	
		3	1	6~8		(135)	(3 336 - 5)	(3 324 - 72)		-	2008 - 501 (20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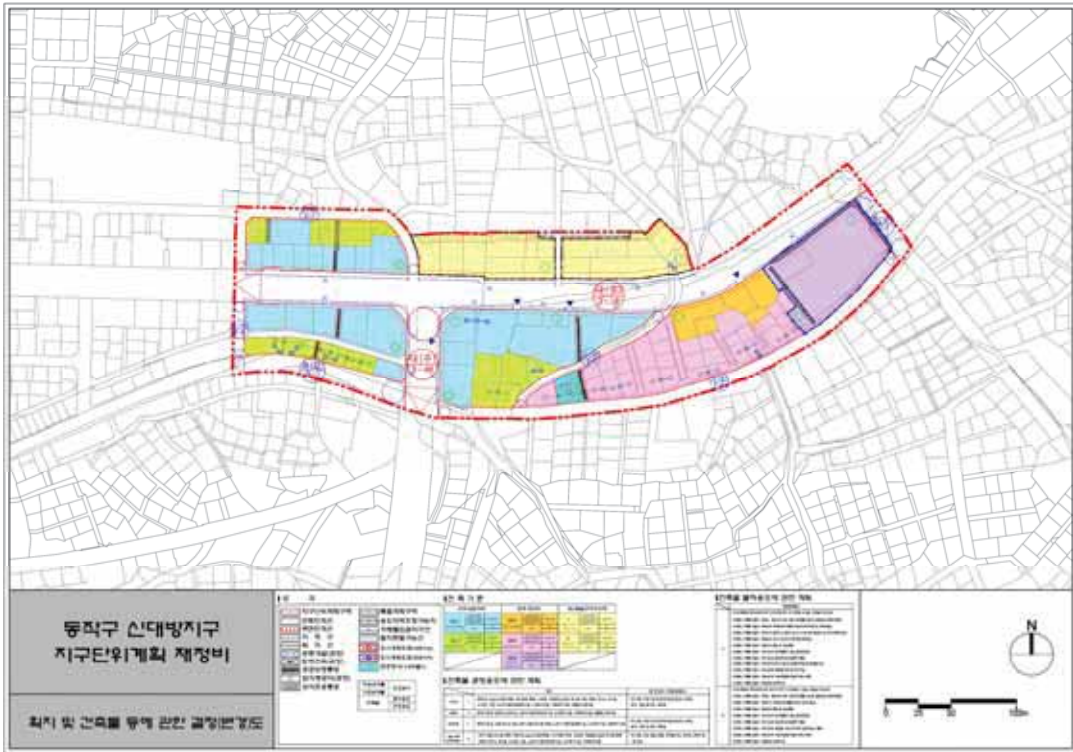
(2) 공공청사

						(㎡)				
				()	3 324 - 21,36	473	-	473	2008 - 501 (2009.1.2.)	-

라.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 홈페이지, 열람 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홈페이지, 열람 도서 참조

바.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변경)도(안)



2. 열람공고 개요

가. 열람 기간 : 2022. 10. 27. ~ 11. 10. (15일간)

나. 열람 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별관4층)

3. 문의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666)로 연락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2-203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초구 고시 제2022-166호(2022.09.15.)로 결정된 우리구 양재동 187-1번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신청이 있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				
	-		187-1	500	-	500	166 (22.09.15)	

○ 결정(변경)(안) 사유서

	()	()
()	• : 50% ~ 100%) 50%	

○ 건축범위 결정

20%	100%	5	0 (50%~100%) → 「 55 5 : 100

2.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과(☎02-2155-6672)

도시계획과(☎02-2155-6785)

4.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5.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2-2053호
**도시관리계획(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2021-136(2021.1.28.)호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 초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1342	1342	-	) 82,031.0	82,031.0	-

나.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			
	1	1,310.7	-	1,310.7	1.6	-
	2	36,511.3	) 21,649.9	14,861.4	18.1	-
	3	41,893.5	) 21,649.9	63,543.4	77.5	-
		2,315.5	-	2,315.5	2.8	-
		82,031.0	-	82,031.0	100.0	-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마.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바.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2. 재열람공고 개요

- 가. 기 간 : 2022.10.27.(목) ~ 2022.11.10.(목)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6층 도시계획과)

3. 관계도서 열람

- 열람방법 : 열람장소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cho.go.kr>) 게재
- 홈페이지 접속방법 : [분야별정보] > [도시관리] > [도시계획] > [지구단위계획] > 공고명 검색

4. 기타사항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55-6793(서초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공고 제2022-1812호
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25호(1974.1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1995-312호(1995.11.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송파나루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송 파 구 청 장

1. 공원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32번지, 잠실동 47번지 일대
2. 공원면적 : 285,757.6㎡
3. 조성계획(안)
 - 가. 연면적: (당초) 1,530.43㎡, (변경) 555.77㎡
 - 나. 층 수: (당초) 지하1층~지상3층, (변경) 지하1층~지상2층
 - 다. 시설면적: 73,153.05㎡ (변동없음)
 - 라. 녹지 및 기타 면적: 212,604.55㎡(변동없음)
 - 마. 주요시설: 휴양시설, 유흥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녹지 등 (변동없음)
4. 관련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2022.10.27. ~ 2022.11.9. (14일간)
6. 열람장소 : 송파구청 문화예술과(☎2147-2807)
7. 본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파나루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송파구 신천동 32번지, 잠실동 47번지 일대)

	(㎡)	(㎡)	()	(㎡)	()	(㎡)	(㎡)	()	(㎡)	()	(㎡)	(㎡)	()
	285,757.60	73,153.05	50	8,501.67	25,508.08 [12,882.54]	137	285,757.60	73,153.05	50	24,477.28 [12,882.54]	137		
	29,513.52	29,513.52					29,513.52	29,513.52					
	23,109.00	23,109.00					23,109.00	23,109.00					
	6,404.52	6,404.52					6,404.52	6,404.52					
	16,928.28	16,928.28				9	16,928.28	16,928.28			9		
	4,206.27	4,206.27	9	1,465.42	14,018.29 [10,488]	16	4,206.27	4,206.27	9	1,465.42	14,018.29 [10,488]	16	
	9,730.37	9,730.37				37	9,730.37	9,730.37			37		
	5,030.95	5,030.95	5	3,342.98	5,235.95 [399.3]	4	5,030.95	5,030.95	5	2,602.10	4,205.15 [399.3]	4	
	788	788				41	788	788			41		
	5,524.70	5,524.70	15	3,208.87	4,912.98 [1,102.80]	16	5,524.70	5,524.70	15	3,208.87	4,912.98 [1,102.80]	16	
	1,430.96	1,430.96	21	484.40	1,340.86	14	1,430.96	1,430.96	21	484.40	1,340.86	14	
	212,604.55						212,604.55						
(40%)	(73,153.05 / 285,757.60) × 100 = 25.60%						(73,153.05 / 285,757.60) × 100 = 25.60%						
(10%)	(8,501.67 / 285,757.60) × 100 = 2.97%						(7,760.79 / 285,757.60) × 100 = 2.72%						

2. 시설조서

		(m³)	(m³)	(m³)	()			(m³)	(m³)	(m³)	()			(m³)			()				
		285,757.60	73,153.05					285,757.60	73,153.05					7,760.79	24,477.28 [12,882.54]						
		29,513.52	29,513.52					29,513.52	29,513.52												
	47 32	23,109.00	23,109.00				47 32	23,109.00	23,109.00												
		6,404.52	6,404.52					6,404.52	6,404.52												
- 1	47 32	1,180.00	1,180.00				- 1	1,180.00	1,180.00												
- 2	"	238.00	238.00				- 2	238.00	238.00												
- 3	"	277.00	277.00				- 3	277.00	277.00												
- 4	"	3,619.92	3,619.92				- 4	3,619.92	3,619.92												
- 6	32	361.80	361.80				- 6	361.80	361.80												
- 7	47	330.54	330.54				- 7	330.54	330.54												
- 8	"	397.26	397.26				- 8	397.26	397.26												
		16,928.28	16,928.28		9			16,928.28	16,928.28						9						
	47 32	12,722.00	12,722.00					12,722.00	12,722.00												

			()	(㎡)	(㎡)	(㎡)	()	(㎡)	(㎡)	(㎡)	()	()
		47 32		3,660.00	3,660.00		1		47 32	3,660.00		1
		"		37.00	37.00	R.C	4		"	37.00	R.C	4
		32		154.12	154.12		1		32	154.12		1
							2					2
	-1	47				FRP	600		47		FRP	600
	-2	32					1		32			1
		47		355.16	355.16		1		47	355.16		1
				9,730.37	9,730.37		37			9,730.37		
		47 ()					1		47 ()			
				982.00	982.00					982.00		
	-1	47		239.00	239.00				-1	47		
	-5	32		735.00	735.00				-5	32		
				167.00	167.00					167.00		
	-1								-1			
	-2	32		167.00	167.00				-2	32		

		(m³)	(m³)	(m³)			()	(m³)			()								
		1,365.84	1,365.84	1,365.84															
-1	47	152.00	152.00	152.00		-1	47	152.00	152.00	152.00									
-2	32	53.80	53.80	53.80		-2	32	53.80	53.80	53.80									
-3	"	182.04	182.04	182.04		-3	"	182.04	182.04	182.04									
-4	47	360.00	360.00	360.00		-4	47	360.00	360.00	360.00									
-5	47	152.00	152.00	152.00		-5	47	152.00	152.00	152.00									
-6	47	343.00	343.00	343.00		-6	47	343.00	343.00	343.00									
-7	32	123.00	123.00	123.00		-7	32	123.00	123.00	123.00									
		74.50	74.50	74.50				74.50	74.50	74.50								6	
-3	32	32.00	32.00	32.00		-3	32	32.00	32.00	32.00								2	
-5	"	42.50	42.50	42.50		-5	"	42.50	42.50	42.50								4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1	
-2	32	45.00	45.00	45.00		-2	32	45.00	45.00	45.00						7M		1	
		6,646.25	6,646.25	6,646.25				6,646.25	6,646.25	6,646.25								29	
-1	47	21.00	21.00	21.00		-1	47	21.00	21.00	21.00								1	

		(m³)	(m³)		(m³)	()	(m³)			()	(m³)	(m³)	(m³)			(m³)			()												
	-2	"	16.80	16.80		1	-2	"	16.80	16.80									1												
	-3	"	14.40	14.40		1	-3	"	14.40	14.40									1												
	-4		16.80	16.80		1	-4		16.80	16.80									1												
	-5		19.20	19.20		1	-5		19.20	19.20									1												
	-6		2,172.00	2,172.00		1	-6		2,172.00	2,172.00									1												
	-7		12.60	12.60		1	-7		12.60	12.60									1												
	-8		25.40	25.40		1	-8		25.40	25.40									1												
	-9		24.00	24.00		1	-9		24.00	24.00									1												
	-10		24.00	24.00		1	-10		24.00	24.00									1												
	-11		84.00	84.00		1	-11		84.00	84.00									1												
	-12		27.03	27.03		1	-12		27.03	27.03									1												
	-13	32	973.00	973.00		1	-13	32	973.00	973.00									1												
	-14		166.00	166.00		1	-14		166.00	166.00									1												
	-15		8.02	8.02		1	-15		8.02	8.02									1												

			(㎡)	(㎡)	(㎡)			()		(㎡)	(㎡)			(㎡)	()	
- 16			143.00	143.00	143.00			1	- 16		143.00	143.00			1	
- 17			562.00	562.00	562.00			1	- 17		562.00	562.00			1	
- 18			121.00	121.00	121.00			1	- 18		121.00	121.00			1	
- 19			9.00	9.00	9.00			1	- 19		9.00	9.00			1	
- 20			348.00	348.00	348.00			1	- 20		348.00	348.00			1	
- 21			143.00	143.00	143.00			1	- 21		143.00	143.00			1	
- 22			330.00	330.00	330.00			1	- 22		330.00	330.00			1	
- 23			219.00	219.00	219.00			1	- 23		219.00	219.00			1	
- 24			350.00	350.00	350.00			1	- 24		350.00	350.00			1	
- 25			126.00	126.00	126.00			1	- 25		126.00	126.00			1	
- 26			204.00	204.00	204.00			1	- 26		204.00	204.00			1	
- 27			119.00	119.00	119.00			1	- 27		119.00	119.00			1	
- 28			189.00	189.00	189.00			1	- 28		189.00	189.00			1	
- 29			179.00	179.00	179.00			1	- 29		179.00	179.00			1	
		47	457.78	457.78	457.78					47	457.78	457.78				

		(m³)	(m³)	()	(m³)	()	(m³)	(m³)	(m³)	(m³)	(m³)	(m³)	(m³)	()	(m³)		()																
		4,206.27	4,206.27	16	1,465.42	14,018.29 [10,488]										1,465.42	14,018.29 [10,488]	16															
	47	(57) (57)	(57) (57)	1			47	(57) (57)	(57) (57)	-								1															
	1	"	-			18 28	1	1	"	-					18 28		775.00	1															
	2	"	99.00	99.00	FRP 3	40	1	2	"	99.00	99.00	FRP 3	40	99.00	99.00	99.00	99.00	1															
		"	18.00	18.00	"	15 1	1		"	18.00	18.00	"	15 1					1															
	5	"	184.00	184.00	FRP	32	1	5	"	184.00	184.00	FRP	32	7.00	7.00	7.00	7.00	1															
		"			"	600	1		"			"	600					1															
		"			FRP 2 22	2 22	1		"			FRP 2 22	2 22					1															
	8	"	2,352.00 [374]	2,352.00	RC 8 21M	8 21M	1	8	"	2,352.00 [374]	2,352.00	RC 8 21M	8 21M	1,103.41	3,404.55 [1,091]	1,103.41	3,404.55 [1,091]	1															
	11						1	11									9,397.00 [9,397]	1															
	11-1	47			RC 2	2	1	11-1	47			RC 2	2		4,800.00 [4,800]	4,800.00	4,800.00 [4,800]	1															
	11-2	"			"	"		11-2	"			"	"		4,597.00 [4,597]	4,597.00	4,597.00 [4,597]																
	12	"	360.00	360.00		40 1	1	12	"	360.00	360.00		40 1	80.00	78.00	80.00	78.00	1															
	12-1	"	357.00	357.00		68 3M	1	12-1	"	357.00	357.00		68 3M	77.00	75.00	77.00	75.00	1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m²)	(m³)	(m³)	()			()			(m³)	(m³)	(m³)				(m³)			()								
	16	32	490.51	490.51	490.51	2	16	32	2	16	32	490.51	490.51	490.51				490.51	554.28 [142.56]	2									
	16-1	47	114.53	114.53	114.53	RC	1	47	16-1	47	114.53	114.53	114.53	RC	1	1	1	114.53	110.03										
	16-2	"	94.24	94.24	94.24		1	"	16-2	"	94.24	94.24	94.24		1	1	1	94.24	94.24										
	16-5	"	79.00	79.00	79.00	"	1	"	16-5	"	79.00	79.00	79.00	"	1	1	1	79.00	79.00	1									
	16-6	"				RC	1	"	16-6	"				RC	1				[74.29]										
	16-7	"	161.58	161.58	161.58		1	"	16-7	"		161.58	161.58	161.58		1	1	161.58	161.58	1									
	16-1 0	"	41.16	41.16	41.16		1 1	"	16-1 0	"	41.16	41.16	41.16		1 1	1 1	1 1	41.16	109.43 [68.27]										
			2,109.00	2,109.00	2,109.00		83				2,109.00	2,109.00	2,109.00		83														
	-1	47	620.00	620.00	620.00	ASP	24	47	-1	47	620.00	620.00	620.00	ASP	24														
	-2	"	396.00	396.00	396.00	"	18	"	-2	"	396.00	396.00	396.00	"	18														
	-3	"	224.00	224.00	224.00	"	16	"	-3	"	224.00	224.00	224.00	"	16														
	-6	"	869.00	869.00	869.00	"	25	"	-6	"	869.00	869.00	869.00	"	25														
			50.40	50.40	50.40						50.40	50.40	50.40																
	-1	47	6.30	6.30	6.30			47	-1	47	6.30	6.30	6.30																
	-2	"	6.30	6.30	6.30	RC	"	"	-2	"	6.30	6.30	6.30	RC	"														
	-3	"	6.30	6.30	6.30	"	"	"	-3	"	6.30	6.30	6.30	"	"														

			(㎡)	(㎡)	(㎡)			()		(㎡)	(㎡)				()		(㎡)	()
-4	"	6.30	6.30	6.30	6.30	"	"	-4	"	6.30	6.30	"	"	"	"	"	"	"
-5	32	6.30	6.30	6.30	6.30	"	"	-5	32	6.30	6.30	"	"	"	"	"	"	"
-6	"	6.30	6.30	6.30	6.30	"	"	-6	"	6.30	6.30	"	"	"	"	"	"	"
-7	"	6.30	6.30	6.30	6.30	"	"	-7	"	6.30	6.30	"	"	"	"	"	"	"
-8	"	6.30	6.30	6.30	6.30	"	"	-8	"	6.30	6.30	"	"	"	"	"	"	"
17		2,548.98	2,548.98	2,548.98	2,548.98			8	17	2,469.55	3,990.89 [864.24]						2,469.55	3,990.89 [864.24]
17-1	47	326.00	326.00	326.00	326.00	1	1	1	17-1	47	326.00	517.00 [301]					326.00	517.00 [301]
17-2	"	11.00	11.00	11.00	11.00	RC	1	1	17-2	"	11.00	11.00					11.00	11.00
17-3	"	15.00	15.00	15.00	15.00	"	1	1	17-3	"	15.00	15.00					15.00	15.00
17-4	"	418.63	418.63	418.63	418.63	"	1	1	17-4	"	418.63	433.20					433.20	433.20
17-6	"	235.19	235.19	235.19	235.19	"	1	1	17-6	"	235.19	235.19					235.19	235.19
17-8	47	273.27	273.27	273.27	273.27	"			17-8	47	273.27	514.28 [109.54]					273.27	514.28 [109.54]
17-9	"	717.61	717.61	717.61	717.61				17-9	"	717.61	717.61					717.61	717.61
17-10	"	440.00	440.00	440.00	440.00				17-10	"	440.00	981.63					440.00	981.63
17-11	32	112.28	112.28	112.28	112.28		1		17-11	32	112.28	565.98 [453.70]					112.28	565.98 [453.70]

[illegible]

[illegible]

				(㎡)	(㎡)	(㎡)		()			(㎡)	(㎡)		()							
		26	"	74.00	74.00	74.00	"	26					74.00	34.00	34.00						
		26-1	"	37.00	37.00	37.00	"	26-1					37.00	17.00	17.00						
		26-2	"	37.00	37.00	37.00	"	26-2					37.00	17.00	17.00						
		27	"	10.00	10.00	10.00	"	27					10.00	10.00	10.00						
		27-1	"	5.00	5.00	5.00	"	27-1					5.00	5.00	5.00						
		27-2	"	5.00	5.00	5.00	"	27-2					5.00	5.00	5.00						
		28	"	44.00	44.00	44.00	"	28					44.00	17.00	17.00						
		29		34.00	34.00	34.00		29					34.00	34.00	34.00	2					
		29-1	47	17.00	17.00	17.00	RC	1			47		17.00	17.00	17.00	1					
		29-2	"	17.00	17.00	17.00	"					17.00	17.00	17.00	1						
		30	"	34.00	34.00	34.00	"	30					34.00	34.00	34.00	1					
		33	47					33				47			1						

[illegible]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m)	(m)	(㎡)				
					6,160	23,109				
					5,268	21,358				
		1	1-1	11	(47.3)	(511)		()		
		1	1-2	10	(82.5)	(825)		() ²	"	
		3	3-2	5	1,267	6,385				
		3	3-3	5	1,204	6,020	"			
		3	3-4	23	673	2,020			()	
		3	3-5	3	48	144	"	4	()	
		3	3-6	3	17	51	"	"	"	
		3	3-7	5	45	232	"		"	
		3	3-8	3	97	291	"	"	"	
		3	3-9	3	28	84	"		()	
		3	3-10	3	28	84	"	"	"	
		3	3-11	3	27	81	"	"	"	
		3	3-12	3	24	72	"	"	"	
		3	3-13	3	26	78	"	"	"	
		3	3-14	3	29	87	"	"	"	
		3	3-15	3	57	171	"		"	
		3	3-16	3	37	111			()	
		3	3-17	4	33	132	"		"	
		3	3-18	4	43	172			()	
		3	3-19	4	30	120	"			

				(m)	(m)	(m ²)				
		3	3-20	4	59	236	"	"	"	
		3	3-21	3	107	321	"		()	
		3	3-22	3	63	174.4	"		"	
		3	3-23	3	22	66	"		"	
		3	3-24	3	324	735	"		"	
		3	3-25	3	98	294	"		"	
		3	3-26	8	41	326				
		3	3-28	4	31	110	"	"		
		3	3-29	4	31	110	"	"		
		3	3-30	5	8	40			"	
		3	3-31	5	8	40	"	"		
		3	3-32	8	8	64	"	"		
		3	3-33	5	8	40	"	"		
		3	3-34	5	8	40	"	"		
		3	3-35	4	45	180				
		3	3-36	4	70	280	"			
		3	3-37	4	56	224	"	"	"	
		3	3-38	4	70	280	"			
		3	3-41	3	29	87	"		3-7	
		3	3-47	3	300	900	"		()	
		3	3-48	3	71	213	"			
		3	3-49	3	39	117	"		()	
		3	3-50	4	28	34			()	
		3	3-51	1.2	22	98	"		()	
		3	3-57	1.5	9	14	"		3-59	

				(m)	(m)	(m ²)				
					892	1,751				
		3	3-39	1.2	84	101				
		3	3-40	1.2	25	30				
		3	3-42	1.5	37	60				
		3	3-43	1.5	40	60		3-13	3-14	
		3	3-44	2.5	38	92				
		3	3-45	2	25	62				
		3	3-46	2	36	84				
		3	3-52	2	29	57		3-10	3-50	
		3	3-53	2	74	171	"	3-50	3-11	
		3	3-54	2	22	43	"	3-11	-7	
		3	3-55	1.5	106	223	"	-7	3-12	
		3	3-56	1.5	89	179	"	3-12	3-51	
		3	3-58	1.5	2	3	"	3-59	3-59	
		3	3-59	2	114	204	"	3-51	3-13	
		3	3-60	2.5	57	146	"	3-2	3-7	
		3	3-61	2.5	20	51	"	3-7	3-44	
		3	3-62	1.5	65	122	"	3-60	3-44	
		3	3-63	2	7	17	"	3-7	3-62	
		3	3-64	2	16	31	"	3-62	3-2	
		3	3-65	2.5	6	15	"	3-44	3-8	

◆ 강동구공고 제2022-205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2호(2020.02.06.)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5호(2022.04.21.)로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0호(2022.09.01.)로 『조성계획결정(경미한변경)』 된 ‘둔촌 제1,2호 근린공원 및 제1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안)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 도서는 강동구청 재건축과에 비치하고 열람기간 동안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2-1 일원

- 1) 제1호 근린공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2-1(17,875.8㎡)
- 2) 제2호 근린공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80-1(13,580.4㎡)
- 3) 제1호 어린이공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 (4,640.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둔촌 제1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둔촌 제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둔촌 제1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

- 1) 제1호 근린공원
 - ① 면적 : 17,875.8㎡, ② 내용 : 근린공원 조성
- 2) 제2호 근린공원
 - ① 면적 : 13,580.4㎡, ② 내용 : 근린공원 조성
- 3) 제1호 어린이공원
 - ① 면적 : 4,640.0㎡, ② 내용 : 어린이공원 조성

※ 해당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은 각 공원 별 실시계획인가 예정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사업시행자: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승환)
-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55, 오스카상가 3층 316호

-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2024.2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불 임
- 사.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불 임
- 아. 열람기간: 2022. 10. 31. ~ 2022. 11.14.
- 자. 열람장소: 강동구청(강동구 성내로 25, 주택재건축과 ☎ 02-3425-5982)
-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주택재건축과 ☎ 02-3425-59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둔촌 제1,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 번지 일대

<제1호 근린공원>

					(㎡)	(㎡)						
			1		25,455.40	17,875.8						
1			172-1		25,455.40	17,875.8		316	1355,			

<제2호 근린공원>

					(㎡)	(㎡)						
			1		125,858.4	13,580.4						
1			180-1		125,858.4	13,580.4		316	1355,			

<제1호 어린이공원>

					(㎡)	(㎡)						
			1		112,101.1	4,640.0						
1			170-1		112,101.1	4,640.0		316	1355,			

별첨-2

위치 및 계획평면도

□ 위치도



□ 계획평면도

<제1호 근린공원>



<제2호 근린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가()				가
		가				
SK	65	70-1 21	138.3㎡	6 19	2022.9.19. ~ 2022.10.11.	2022. 9.15.
	90	84 7	50.4㎡	2 8	2022.9.19. ~ 2022.10.11.	2022. 9.15.
	32	86-7 19	202.4㎡	3 24	2022.9.14. ~ 2022.10.17.	2022. 9.1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6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가()				가
		가				
	90	173-3 9	27㎡	1 9	2022.9.20. ~ 2022.10.11.	2022. 9.2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가()				가
		가				
SK	65	115-5	20.8㎡	1	2022.9.15. ~ 2022.10.30.	2022. 9.15.
	90	649-1	3㎡	1	2022.9.15. ~ 2022.10.17.	2022. 9.1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가()				가
		가				
	20	623 2가	725㎡	2	2022. 9. 8. ~ 2022. 9. 18.	2022.9.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6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가()				가
		가				
	125	572, 567	152㎡		2022.10.1. ~ 2022.12.31.	2022. 9.1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6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				가
		가				
	1416 22	386-1	100㎡		2022. 9. 21. ~ 2022. 9. 30.	2022. 9. 2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6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				가
		가				
가	257	4-9	36㎡		2022. 9. 20. ~ 2022. 9. 30. (1)	2022. 9. 2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6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가
		가				
	8	1-1, 1-1	1,113㎡	IC	2022. 9. 26. ~ 2023. 9. 18.	2022. 9. 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가
		가				
	20	2가 623	725㎡	2	2022. 10. 7. ~ 2022. 10. 31.	2022.10.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7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				가
		가				
	150		234㎡	가	2022. 10. 19. ~ 2022. 10. 20.	2022. 10. 4.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7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				가
		가				
	110	377-1	1,000㎡	() 3	2022. 10. 1. ~ 2022. 11. 10.	2022. 10. 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7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가
		가				
	540	532 - 2	10m ²		2022. 10. 19. ~ 2022. 11. 30. (2)	2022. 10. 1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가
		가				
	124	84 - 9 ()	114.84m ²		2022. 10. 19. ~ 2022. 10. 31.	2022. 10. 1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				가
		가				
	110	294-6 ()	347.2㎡	,	2022. 10. 19. ~ 2022. 11. 30.	2022. 10. 1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7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				가
		가				
	257	163-25	240㎡		2022. 10. 19. ~ 2022. 12. 31. (2)	2022. 10. 1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가()				가
		가				
	260	(,)	¹ (24.5㎡)		2022.10.20. ~ 2022.10.22.	2022.10.19.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7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가()				가
		가				
	128 24	(가)	(2) 358.64㎡	가	' 22.10.18. ~ 12.30.	' 22.10.18.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7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가		개()				가
		가				
	2 16 3	~	(3) 392.76m		' 22.10.21. ~ 11.10.	' 22.10.20.

기 타

◆ 강남소방서공고 제2022-44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강 남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	()			
()2022-0001 (2022.10.21.)	(144-81-33950)		1841 (, 280,)	02-469-333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6981-75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27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화동 1-73번지 등 13필지
 - 면 적: 영구 8,389.6㎡, 일시 19.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월드컵대교 ~ 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
 - 내 역: (당초) 직결램프 1식 설치
 - 공사구간 임시 차수시설
 - 양화교 접속램프 대체 가교 설치
 - 교각구조물 시공을 위한 가교 설치
 -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우회도로 설치
 - (변경) 직결램프 1식 설치
 - 교각구조물 시공을 위한 가교 및 가축도 설치
5. 점용기간: 2021.8.24. ~ 2024.6.30.
6. 공사기간: 2019.5.28. ~ 2024.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5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서구청장(물관리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41-94번지 일원
 - 면 적 : 859.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마곡유수지 배수펌프장 방류관거
 - 내 역 : 방류관거(3m×3m×3런×연장 71.6m)
5. 점용기간 : (당초) 2019.3.29. ~ 2022.5.20.
(변경) 2022.5.21. ~ 2027.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6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9-2번지
 - 면 적 : 7,2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축구장 및 주변안전을 위한 외곽 펜스 설치
 - 내 역 : 축구장 1식, 외곽펜스 64경관, 비구방지펜스 2개소, 사철나무 1,080주, 화살나무 3,030주
5. 점용기간 : (당초) 2017.8.17. ~ 2022.8.16.
(변경) 2022.8.17. ~ 2027.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7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시 성북구청장
 - 주 소: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삼선동5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21-1 ~ 38-1번지 일원
 - 면 적: 4,40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공원 조성
 - 내 역: 왕벚나무 140주, 진달래 4,640주, 등의자 9개소,
육각정자 2개소, 배드민턴경기장 2개소
5. 점용기간: 2022. 08. 28. ~ 2027.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7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727-106번지 등 3필지
 - 면 적: 145.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유량계 및 연결전선관로 설치
 - 내 역: 유량계함 1개소, 연결 전선관 2개소
5. 점용기간: 2020. 3. 16. ~ 2025. 6. 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7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102-3번지 등 7필지
 - 면 적: 236.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가스관 매설
 - 내 역: 가스관
5. 점용기간: 2022. 11. 27. ~ 2027. 12. 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7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IC ~ 성산대교 북단IC
 - 면 적 : 8,026.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전력구 설치
 - 내 역 : 전력구 L=1,798m, 작업구 1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17.5.16. ~ 2022.5.15.
(변경) 2022.5.16. ~ 2027.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9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60번지 등 4필지
 - 면 적 : 17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양화교 진입경사로 준치
 - 내 역 :
5. 점용기간 : (당초) 2017.10.26.~2022.10.25.
(변경) 2022.10.26.~2027.10.25.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9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136-1번지 등 18필지
 - 면 적 : 5,07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산책로 분리시설 준치
 - 내 역 :
5. 점용기간 : (당초) 2019.05.31.~2022.03.14.
(변경) 2022.03.15.~2027.03.1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0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257-2번지 일원
 - 면 적: 99,965㎡(영구 46,731㎡, 일시 53,26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올림픽대로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내 역: 올림픽대로 선형 변경(L=2.86km), 연결램프(교량)설치 3개소, 램프 신설 및 이설, 지하매설물 이설, 배수관로 공사
 - * 금회 : 배수관로 추가
5. 점용기간: (당초) 2021. 12. 21. ~ 2026. 12. 31.
(변경) 상 동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